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A stylized, grayscale illustration of a modern city skyline with various skyscrapers and buildings,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text.

## ■ 발간사

# 교민과 기업, 중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한·중 양국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역사 이래 정치·문화·경제적으로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1992년 국교 수립 이래 인적·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양국간 교역액이 중국 측 기준으로 2,000억불을 돌파하였고, 무려 600만 명에 가까운 양국 국민이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5만여 개의 기업과 60여만 명의 교민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주중대사관은 2007년 8월에 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분야별로 상담사례집을 소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주중대사관이 본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기업운영과 교민 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분쟁사례를 총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사전학습을 통하여 분쟁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전자책자 형태로 만들어 주중대사관 등 주요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라도 무료로 다운받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교민 그리고 중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건 책자의 발간을 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한 노정환 법무협력관과 김덕현 박사를 비롯한 발간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주중대한민국 대사 이규형

# Part 1 중국비즈니스법률

## Section A 투자와 경영

- A-1**      **외국인 개인사업자 / 63**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 A-2**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 64**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3**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 66**  
의류업체인 저희 회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법상 어떠한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 A-4**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절차 / 68**  
외국인이 중국에서 독자로 투자한 기업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5**      **회사설립 등록자본금 / 69**  
총출자금 5만 위안짜리 식당을 설립할 수 있나요?
- A-6**      **설립자본금 및 송금문제 / 71**  
중국에 현지인과의 합작으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과 현지인과의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A-7**      **현지공장 설립시 구비서류 / 72**  
 합작투자자로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할 때 구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A-8**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74**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 절차가 어떠한지요?
- A-9**      **아파트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 76**  
 보증금(押金) 3개월치와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5,000 위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회사주소로 등재할 수 있나요?
- A-10**     **외국인 소유 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 78**  
 얼마 전 아는 한국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주소를 등재하려고 하니 외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 A-11**     **신축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 80**  
 막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房产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 A-12**     **커피숍 창업 절차 / 81**  
 중국에서 커피숍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A-13**     **컨설팅업체의 설립 / 82**  
 중국에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A-14**     **건설시공회사의 설립 / 83**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인 설립 조건, 설립절차, 건설회사 규모별 투자금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 A-15**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 / 84**  
 중국의 외국기업 전용공단 및 주거단지 개발에 한국건설회사가 참여하거나 또는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16**     **외상기업의 임대사업 허용여부 / 87**  
 한국인 A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의 투자효과를 노리고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A-17**     **교육사업 관련 기업의 설립 / 88**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나요?
- A-18**     **한국어학원의 설립 / 89**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경영해보려고 하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 A-19**     **꽃꽂이 학원의 설립 / 90**  
 중국에서 단독으로 꽃꽂이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20**     **댄스학원의 설립 / 91**  
 중국에서 댄스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인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 A-21**     **주택관리업체의 설립 / 92**  
 한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투자하려 하는데 주택관리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없는지요?
- A-22**     **전기공사 시공업체의 설립 / 93**  
 전기공사 시공업체가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23** | **합자회사의 설립과 이익금 송금 / 94**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익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24** | **합자회사의 현물출자 / 95**  
 중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저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 A-25** | **병원의 설립 / 96**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 의사자격을 가지고 중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 A-26** |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설립 / 97**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여성의류, 액세서리, 잡화)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도 가능한지요?
- A-27**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 99**  
 타오바오(淘宝)라고 하는 중국 쇼핑몰을 통해 한국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러한 판매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28** | **공연기획사의 설립 / 100**  
 한국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사업자입니다. 중국 사업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국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A-29** |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의 설립 / 103**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P2P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서비스 회사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P2P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여부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A-30** | **온라인게임사의 설립 / 105**  
 온라인게임사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31 부동산중개업체의 설립 / 107**

중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중국 국적이어서 아내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요?

**A-32 다단계판매업체의 설립 / 108**

중국에서 암웨이(Amway)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다단계 사업이 가능한지요?

**A-33 유한회사 설립절차 / 110**

중국은 회사설립 절차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A-34 유한회사 주주의 책임범위 / 112**

친구인 중국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저는 주주로서 참여만 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35 유한회사의 외국인 법정대표 / 114**

중국인이 투자한 내자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이 법정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A-36 내자기업 설립과 경영권 보호 / 115**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자법인의 법적 소유권(지분)이 전혀 없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인데,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7 명의차용 외자기업 설립과 경영권 보호 / 117**

한국인 이모씨와 최모씨는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씨가 자금을 대고 최씨가 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

다. 쌍방은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씨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이씨는 최씨를 통하여 중국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위 의류공장에 이윤이 생겨 쌍방이 배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씨는 의류공장 및 최씨를 상대로 이윤배당 및 주주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38 중국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과 경영권 보호 / 119**

저는 중국기업과 신규로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측 지분율이 중국측에 비해 낮은 경우에 정관상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39 지분양도의 비준과 등기 / 121**

북경에 소재하는 '○○○유한회사'의 투자자인 A는 B와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법률에 따라 비준 및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비준 및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A-40 지분양도 관련 소송 종류 / 123**

김씨는 운영 중인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100%를 양모씨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쌍방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양씨는 김씨에게 지분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동시에 쌍방은 회사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계 후 양씨가 회사에 대한 주주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날인한 지분변경신청서와 회사 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A-41 지분양도 후 발견된 채무에 대한 책임 / 125**

김씨는 외자기업인 A사를 운영하다 개인 사정상 회사의 지분을 임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인 임씨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실사를 한 후, 김씨와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양도 계약서상에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채무명세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인수 후

반년이 지나서 임씨가 계약 당시에 몰랐던 채무가 발견되었으며 회사 장부상에도 상당한 결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임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42 지분매각 후 명의 미변경시의 책임 / 127**

약 10여년간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배사장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지분을 손모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수인인 손모씨가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43 대리권 위임 절차 / 128**

중국 지사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44 생산공장의 확장 / 130**

기존에 있던 생산현장이 과포화 상태여서 다른 곳에 생산공장을 확장하려 하는데 기존 영업집조상에 새로운 주소만 추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집조를 2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45 영업집조의 연검 / 131**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1년마다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요?

**A-46 영업집조의 말소 / 133**

현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영업집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영업집조를 말소할 때 직권말소와 등기말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7 상호의 보호 / 134**

A는 북경에서 ‘갑을 양복점’이란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복점 업자인 B가 A의 상호가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내어 재빨리 등기하고 인근에 같은 이름의 양복점을 내었습니다. A는 B에게 항의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48

**상표의 보호 / 136**

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다른 제3자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기업 B가 홍콩의 ‘한국크라운유한회사(홍콩법상 외국의 국가명도 상호로 등록이 가능함)’와 상표사용권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A의 한국회사 제품을 독점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49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138**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짜리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액수도 알 수 없었는데 A는 B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A-50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출조건 / 140**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투자 부동산개발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 Section B 기업세무

- B-1      세금의 종류 / 142**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B-2      세무등기제도 / 144**  
중국에서 세무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3      세금계산서의 구매와 발행 / 146**  
세금계산서의 구매, 발행,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 B-4      개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 148**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개인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느냐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5      납세신고 / 150**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B-6      납세연기제도 / 152**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요?
- B-7      세무조사 / 153**  
세무국은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느냐요?
- B-8      조세징수제도 / 154**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요?
- B-9      가산금 계산법 / 156**  
체납한 세액이 30만 위안인데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26,700 위안의 가산금(滯納金)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B-10     세금체납자 출국제한 / 157**  
 중국 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 B-11     조세우대혜택 세목 및 세율 / 159**  
 자동차 부품회사는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B-12     보조비의 개인소득세 면세 / 160**  
 한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세항목인가요?
- B-13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 161**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B-14     상호등기와 비용처리 / 162**  
 상호(企业名称) 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 B-15     로열티와 비용처리 / 164**  
 상표출원을 하고 계약을 통해 매출액의 5% 정도를 로열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 B-16     접대비와 비용처리 / 166**  
 회사 접대비로 판매수입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 B-17     기업소득세 공제 / 167**  
 한국인 행사에 50만 위안을 찬조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광고성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B-18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 168**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급여 총액의 5%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B-19 | 기업소득세 면세 / 169**  
산동에서 배추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기업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B-20 | 기업의 배당소득세 / 170**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B-21 | 기업소득세 보전 / 171**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 B-22 | 기업청산시 기업소득세 / 172**  
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B-23 | 해외파견수당과 기업소득세 / 173**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동 금액들은 세무상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가요?
- B-24 | 기업소득세의 복리후생비 공제 / 175**  
한국기업이 중국내 자회사 또는 대표처에서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나요? 반대로 중국 자회사 또는 대표처가 부담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공제가 가능한가요?
- B-25 | 증치세 비과세항목 / 177**  
대장금 영화필름원본을 CCTV8에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내야 하나요?
- B-26 |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 179**  
7%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27**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 181**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B-28**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한도 / 183**  
 중국회사에서 1,280만 위안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B-29**      **증치세 환급 신청 / 185**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받으려 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어디에다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B-30**      **소비세 계산 / 187**  
 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B-31**      **소비세 환급 / 189**  
 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과세소비품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B-32**      **영업세 원천징수 / 191**  
 한국상표 'OBBA'를 중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인 중국인으로부터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나요?
- B-33**      **인지세와 매매계약서 / 192**  
 한달에 2~3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업체인데 인지세에 해당하는 3/10,00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무슨 세금을 내나요?
- B-34**      **계세의 면세 / 194**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해도 계세(契稅)를 내야 하나요?

- B-35**     **합자기업의 계세 / 196**  
합자기업을 설립하는데 중국측이 땅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측은 계세를 내야 하므로 50만 위안을 달라고 합니다. 쥐야 하나요?
- B-36**     **지분권 확보시의 계세 / 197**  
김씨가 남경에 투자한 미싱회사를 3,000만 위안에 최씨에게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최씨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도 함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 행위도 재산권 취득행위로 보고 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B-37**     **도시토지사용세 / 198**  
북경에 2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임차하였습니다. 도시토지사용세로 매년 198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 B-38**     **건물재산세 납세의무자 / 200**  
부동산을 저당잡힌 외국기업이 건물재산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재산세(房产税)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B-39**     **부동산 임대 세금 / 201**  
공장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준 경우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하나요?
- B-40**     **제조업체의 제품판매 세금 / 203**  
화장품 생산업체입니다. 화장품 판매시 세금이 57%라고 하는데 맞나요?
- B-41**     **이전가격 / 205**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해당 조사에 대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 B-42**     **기업세무 관련 자료 / 207**  
개인소득세 세율표, 기업소득세 세율표, 증치세 세율표, 영업세 세율표, 소비세 세율표, 개인소득세 납세기한,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증치세 납세기한, 영업세 납세기한, 소비세납세기한

## Section C 무역과 관세

- C-1 Alipay 결제방식 / 217**  
 저희 회사는 중국에 수출을 진행중입니다만 현지법인이나 연락사 무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와 상담중인 중국업체 역시 수입자격이 없어 Alipay라는 결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걱정됩니다.
- C-2 완성품 수입과 관세부와 여부 / 219**  
 저희 회사는 한국 A사의 완성품을 구매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A사가 청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청도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받아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 C-3 수입금지품목 / 220**  
 저희 회사는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다양한 물품을 중국으로 판매, 수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C-4 강제인증 / 221**  
 저희 회사는 중국으로 지게차를 수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게차를 수출할 때는 별도의 차량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 C-5 QS 생산허가증 / 222**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식품류는 QS 생산허가증을 받아야 중국 내 수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QS 생산허가증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C-6 수입정정 / 224**  
 저희 회사는 얼마 전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업  
 체측에 수입정정을 요구했는데 비용도 적지 않게 들며 절차도 복잡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정정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C-7 세관신고 오류 정정 / 225**  
 저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설 연휴 전에 급하게 제품을 출하시키려고 하다보니 세관에  
 신고된 수량보다 실제로 적게 물건이 선적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  
 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 C-8 HS코드 변경 / 227**  
 지금까지 사용해 온 해관수책(手冊)상 HS코드로 제품을 수출하려  
 고 하는데요. 상대방 해관에서 HS코드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국내  
 심가공결전(结转)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관 수책상 HS코드를  
 변경해야 하나요?
- C-9 수입업자의 세금 및 관세 / 229**  
 중국에서 패션 액세서리 도소매 및 수입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수  
 입업자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관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자법인과 외상기  
 업 간에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C-10 홍삼의 수입관세 / 231**  
 저희는 홍삼을 도소매로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향후 중국으  
 로 홍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홍삼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C-11 화장품의 수입관세 / 232**  
 저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주문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후 중국시장  
 에서 화장품(립스틱, 아이췌도우, 매니큐어)을 판매하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시 절차와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 C-12 전시회 참가를 위한 임시수입 허가 / 233**  
 저희는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지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2개월 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희 제품을 중국에 들여올 수 있겠는지요?
- C-13 관세의 환급 / 234**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C-14 보세창구 이용과 자유무역 거래 / 236**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 지역간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중국 서남부에서 아세안과 중국 간의 무역을 해 보고 싶은데, 보세창구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C-15 무역분쟁 / 238**  
 저희 회사는 중국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본 후 품질이 괜찮아서 선금 5만불을 보내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을 보니 샘플과 전혀 다른 불량품이었습니다. 중국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 C-16 품질보증기간 / 240**  
 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 원단으로 제조한 가방을 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가방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바이어로부터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A사로부터 원단을 받았을 때 품질검사 없이 바로 제품생산에 들어갔는데 A사와의 계약서에는 원단 수령 후 10일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Section D 노무인사

- D-1 근로자의 범위 / 243**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회사는 고용관계인가요?
- D-2 대표처의 직원고용 / 245**  
북경에 있는 대표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공상국에서 과태료 5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납부해야 하나요?
- D-3 외지인 고용 / 246**  
중국 종업원이 임시거주증(暫住证)이 없다는 이유로 1,000 위안의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D-4 장애인 고용 / 247**  
중국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D-5 연소자 고용 / 248**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소자(童工)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D-6 외국인 고용과 비자 / 249**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 D-7 합격통지후 신체검사 / 250**  
저희 회사는 면접 후 A에게 합격통지서를 발송하고 2011년 2월 27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3월 1일부터 출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밝혀졌고 이를 이유로 저희 회사는 A와의 노동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회사의 사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

- 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 D-8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 252**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 회사가 그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 D-9 노동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 / 253**  
 노동계약서에 사회보험 관련 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 D-10 노동계약서 작성 / 254**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D-11 업무내용 변경과 계약해제 / 255**  
 2007년 B사에 판매경리로 고용된 A는 하북성 지역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부지역으로의 판로확장을 모색하던 B사는 A에게 사천성 지역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B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제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D-12 계약의 무효 / 257**  
 근로자가 학위를 위조하여 회사에 고용된 후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D-13 근로조건 변경 / 258**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工會)와 협의하여야 하나요?
- D-14 임신과 해고 / 259**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내 임신 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

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나요?

**D-15      기업규칙 위반과 해고 / 260**

B사는 ‘근무 시간 중 QQ 등 메시지의 사용은 절대 불허한다.’라는 내용을 기업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A는 근무 중 몰래 친구와 메시지로 대화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회사는 이를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보고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정당하나요?

**D-16      수습기간 / 261**

근로자와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D-17      몸 수색 / 263**

제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몸수색 하면 구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D-18      이직방지 보증금 또는 담보 / 264**

최근 근로자들의 이직이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D-19      여권압류 / 265**

A씨는 중국 친진에 있는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하기로 하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계획하고 회사 측에 보관중인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D-20      연수 후의 이직 / 266**

저희 회사는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부에서 직원 A를 선발하여 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A는 마음이 변하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B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D-21 의무복무와 경업금지 / 267**

경업(경쟁업종 취업·개업)이 제한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D-22 일급계산 / 268**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일급 계산할 때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1.75일로 나누어야 한데, 맞나요?

**D-23 주말 잔업비 지급 / 269**

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D-24 잔업비와 대체휴가 / 271**

최근 저희 회사는 주문량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매일 11시간씩 5일 연속 작업을 시켰는데, 평일 초과 잔업시간(15시간)에 대해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주문이 별로 없어 한가할 때 2일의 대체휴가를 줘도 괜찮은지요?

**D-25 잔업비의 시효 / 272**

노동자가 이직을 하면서 과거 3년간 주말에 출근한 잔업비를 소급 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잔업비의 소급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D-26 근무시간 종합계산제 / 273**

저희는 업무특성상 1주일에 4일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은 초과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잔업비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D-27**     **개수불제 임금 / 274**  
 A는 입사하면서 개수불제 임금을 채택했습니다. 회사의 호황기에는 주문량이 많아 임금을 많이 받았었지만, 불황으로 주문이 급감하자 A의 급여는 800 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A는 현지 최저임금이 1,000 위안이고, 불황으로 인한 주문 급감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D-28**     **연차휴가 / 275**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
- D-29**     **출산휴가 / 276**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2달만 주었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 D-30**     **사회보험료 / 278**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낮게 신고하였더니 신고한 임금액의 약 3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 D-31**     **생육보험 / 279**  
 저희 회사는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공들이다 보니 생육보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D-32**     **직업병 검사 / 281**  
 중국에서 약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현장 직원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왔는데, 회사에 직업병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고, 작업장 내 분위기도 걱정되기도 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D-33**     **안전사고 / 282**  
 회사내 안전사고로 공장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는데, 20만 위안과 총경리 1년 소득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 D-34**     **산업재해의 개념 / 283**  
 근로자가 산업재해(工伤)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D-35**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 / 285**  
 저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확대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D-36**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286**  
 A는 입사한 지 2주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작업 중 기계 조작 미숙으로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산업재해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A의 가족들은 이를 알고 터무니 없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D-37**     **산업재해인정 신청의 주체 / 288**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회사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 D-38**     **산업재해시 비용부담 / 289**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인 기업은 어떠한 비용 항목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 D-39**     **근로자의 계약해제 요건 / 291**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D-40      회사의 계약해제 요건 / 293**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규칙을 위반하면 징계해고시킬 수 있나요?
- D-41      인력감원 / 294**  
 근로자 가정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노인이 있는 직원은 감원(정리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 D-42      무기한 노동계약의 해제 / 295**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D-43      수습기간 중의 해고 / 296**  
 A는 저희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져 저희 회사에서는 우선 수습기간 중에 있던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 D-44      시간제근로자의 해고 / 297**  
 시간제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D-45      회사의 합병, 분리시 고용승계 / 298**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그 회사의 근로자는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노동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D-46      경제보상금의 유형 / 299**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 D-47      계약기간 만료시 경제보상금 / 300**  
 2004년 8월에 노동계약기간을 4년(2008년 7월)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4년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 D-48 | 해외직원의 경제보상금 / 301**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국노동법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 D-49 | 외국인의 경제보상금 / 302**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D-50 | 노동중재 / 303**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D-51 | 중재기관의 재결서 / 305**  
 저희 회사는 경제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기관의 재결서를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D-52 | 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 306**  
 저희 회사 직원인 A와 B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B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공안에 A를 고소하였고, A는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사직하였으며, B 역시 함께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B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해 배상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이 있나요?
- D-53 | 직원의 신분증 확인 책임 / 308**  
 A는 저희 회사 입사 후 술선수범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여 우수사원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팔 한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기관은 A가 가짜 신분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치료

- 비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요?
- D-54 노무파견업체의 위반행위와 책임 / 309**  
노무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잘못하였는데 저희 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 D-55 노무 인사 관련 자료 / 310**  
노동계약 관련 벌칙 종합, 각성 최저임금표준

## Section E 기업부동산

- E-1 토지소유권 / 313**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차 벤더업체입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  
을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E-2 획발토지 양수 / 315**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 취득한 획발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  
다. 가능한가요?
- E-3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 316**  
2년 전에 톈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  
므로 강제로 토지를 회수해 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E-4 토지출양계약의 주체 / 317**  
중국의 한 경제개발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A사는 그 경  
제개발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의 관리위원회와 토지  
출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나  
요?

- E-5 |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 319**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 E-6 | 유희토지 / 320**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회수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7 | 주택분양허가증 취득전 분양 / 321**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택분양허가증'을 미취득한 상황을 숨기고 건물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을 한 부동산개발상과 분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8 | 분양면적의 차이 / 323**  
 부동산 개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면적은 140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건축면적은 128평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9 | 토지임차기간 / 325**  
 H사는 3년 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곳의 부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가 가능한 50년 임차를 받았습다. 그런데 50년이 아닌 20년만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 E-10 |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 326**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개월째 임대료 10만 위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

- E-11 | 임차인 우선구매권 / 328**  
저는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포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팔았다면서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그 점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E-12 | 국유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29**  
국유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13 | 집체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30**  
A촌민위원회 소유의 집체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14 | 불법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32**  
A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정부로부터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임차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E-15 | 부동산 저당방법 / 333**  
A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100만 위안을 빌리면서 A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A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B가 그 집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이 집에 대해서는 아직 저당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E-16 | 미등기건물 저당권 설정 가부 / 336**  
A사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계획하고 모든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10층까지 건설한 후 자금부족으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할 수 없자 A회사는 미완성된 건축물을 저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E-17** | **기업부동산 관련 자료 / 337**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의 주택매입시 세금 및 비용, 부동산(건물) 감정평가비, 토지 감정평가비(宗地), 건물(物业)서비스 회사 자격조건, 부동산 중개기구 자격조건(북경시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회사 자격조건,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질관리 절차 안내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립과 타당성 연구 안내도,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1),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2),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1),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2),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계획 설계와 시정부 인프라시설 건설 안내도

## Section F 기업 청산

- F-1** | **청산과 해산의 구별 / 350**  
청산과 해산은 정확히 무슨 의미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F-2** | **청산의 당위성 / 351**  
주변에서는 청산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 F-3** | **청산의 사유 / 352**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 F-4** | **영업집조의 직권말소와 청산 / 353**  
영업집조가 직권말소(吊銷)되면 자동으로 청산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F-5** | **청산과 M&A / 354**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M&A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F-6      **대표처의 청산 / 355**  
대표처도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
- F-7      **청산비용 / 356**  
청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F-8      **청산절차 / 357**  
청산인은 청산절차 진행 중 어떠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나요?
- F-9      **청산의 위임 / 359**  
다른 사람(전문경영인, 변호사)에게 청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 F-10     **청산재산의 처리 / 360**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 F-11     **청산재산 변제순위 / 361**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 F-12     **청산과 세금반환 / 362**  
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받아 온 세제혜택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 F-13     **체불금의 변제와 청산종료 / 363**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꼭 갚아야 청산이 완료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F-14     **청산절차중 출국여부 / 364**  
회사의 관계자들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갈 수 없나요?
- F-15     **청산과 감금 / 365**  
채권자, 근로자가 회사관계자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F-16** | **파산, 회사정리, 화의 / 366**  
 파산, 회사정리, 화의란 무엇인가요?
- F-17** | **채무초과와 형사책임 / 367**  
 빚은 많고 갚을 돈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요?
- F-18** | **청산과 중국 정부기관의 협조 / 368**  
 중국 정부에서 청산, 파산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 F-19** | **회사정리시 퇴직금 처리 / 369**  
 회사를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Part 2 교민생활법률

### Section G 부동산과 생활

- G-1** |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 373**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영업,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등기를 안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G-2** |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차기간 / 374**  
 임차료로 55,000 위안/1개월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깎려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 G-3**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375**  
 얼마 전 베이징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G-4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 377**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G-5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 378**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G-6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 380**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G-7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 381**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G-8 저당권 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 382**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C씨로부터 200만 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G-9 아파트 전대 / 384**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 위안인 아파트를 전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와서 자기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G-10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 385**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 G-11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 387**  
 2009년 2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 G-12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 / 388**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도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 G-13 부동산 이중매매 / 390**  
 병은 A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A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을에게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 G-14 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제 / 391**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동산 개발회사가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시점이 약정한 기한보다 6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로 계획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는데, 가능한가요?
- G-15 부동산 허위광고 / 392**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애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 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G-16 부동산 등기대행 / 394**  
 김사장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본사 발령에 따라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부동산 등

기대행을 위임할 수 있나요?

G-17

### 인테리어 보수기간 / 396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 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기간인 4개월이 지났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G-18

### 아파트의 양도 / 397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G-19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 / 398

결혼 후 부부명의로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인이 한국에 들어간 사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G-20

### 압류부동산의 매매 / 399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 매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재산보전처분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나요?

G-21

### 부동산 등기사항 조사 / 400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G-22

### 저당부동산의 변제방법 / 401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 H-5      국외납부세액 공제 / 415**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국외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H-6      차량취득세 / 417**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H-7      증여세 / 419**  
 한국 거주 부모가 중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및 중국 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H-8      무상증여 / 420**  
 김모씨는 빚도 갚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기 위해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H-9      무상증여시 영업세 / 421**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영업세를 내야 한다던데 맞나요?
- H-10     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 422**  
 중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H-11     일반주택 매매시의 세금 / 424**  
 한국인 김모씨는 201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70m2 아파트를 80만 위안(세금포함, 정식 영수증 있음)에 매입하고, 5만 위안을 지출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2011년 7월 100만 위안에 최모씨에게 매도하였다면 김모씨와 최모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 H-12     영업세 과세기준 / 425**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다시 판매하면 영업세를 내야 한다는데, 2006년 6월에 아파트 구입에 따른 계세를 납부하고, 2008년 10월에 아파트권리등기증을 수령하고 2011년 7월에 다시 판매한다면 구입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 CONTENTS

- H-13 | 아파트 임대와 세금 / 427**  
북경 왕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5,000위안/ 1개월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씨는 임대료의 37%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최씨에게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나요?
- H-14 | 전대시 세금 / 428**  
김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5,000 위안에 임차한 아파트를 최모씨에게 5,000 위안에 전대하려고 하는데요. 차액수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H-15 | 도시토지사용세 / 429**  
북경(세액 10위안)의 토지를 김모씨와 최모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은 1,500m<sup>2</sup>이며, 김모씨가 사용하는 면적은 1/3, 최모씨는 2/3를 사용하는 경우, 도시토지사용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H-16 | 증치세 / 431**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당기간 내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 Section | 민법과 생활

- I-1 | 신의성실의 원칙 / 434**  
A는 B에게 식당을 120만 위안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그 지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수수료, 환율 등의 문제로 3천 위안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요?
- I-2 |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 436**  
중국에서 16세 미성년자 명의로 은행통장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

다. 가능한지요?

**I-3 강제 작성 합의서의 효력 / 437**

중국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 하니 터무니없는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2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요?

**I-4 소멸시효 / 438**

제 친구는 1년전 중국인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국인은 지금까지도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친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I-5 차량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 440**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증이 없으니 제 명의로 외제승용차를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차량을 수입하게 되면 발생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I-6 위약금 / 442**

저는 중국인 A모씨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 후 나머지 잔금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이에 A모씨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지체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의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I-7 채권자 취소권 / 444**

A씨는 B씨에게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변제일이 다가오자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400만 위안 짜리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구 C

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씨에게 변제한 후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의 저가 매각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I-8

## 변제의 방법 / 446

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개월 기간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가운데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9

## 부동산 매매의 무효여부 / 448

한국인 A는 北京에 있는 상가를 중국인 B에게 270만 위안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상가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 근처 상가와 비교하니 평당 3천 위안을 더 주고 샀다'고 하면서 당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I-10

## 불안의 항변권 / 450

A씨는 10만 위안에 B 가구공장과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당국의 현장 불시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씨는 반드시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I-11

## 화재에 대한 책임 / 452

저는 A 소유 상가를 임차,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I-12

## 가사도우미의 고용 / 453

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중국인 한족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듣기에 한족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도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해고도 함부로 못하

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I-13     **정당방위 자구행위 / 454****

돈을 빌려간 B가 공항으로 몰래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자 A는 뒤쫓아 갔습니다. B의 멱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B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I-14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456****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 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C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A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B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I-15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 458****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I-16     **혼인신고의 절차 / 460****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I-17     **이혼절차 / 463****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

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I-18

**이혼과 재산분할 / 465**

북경에 거주하는 A(한국인)는 중국인 B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중국에서 B(현 중국국적자) 명의로 사업을 하여 번듯한 집들도 장만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얼마 전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지더니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해 와 부득이 이에 응해 주었습니다. B의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I-19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 467**

김씨는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 마음먹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만에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I-20

**이혼시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 469**

한국인 김모씨는 중국인 이모씨와 결혼하여 이모씨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씨와 이모씨는 2년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김모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I-21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 471**

한국인이 중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I-22

**출국금지제도 / 473**

김모씨는 2010년 출국금지가 되어 최근까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국금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Section J 민사소송과 생활

- J-1 법원의 조직 / 476**  
중국의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가 맞나요?
- J-2 민사소송의 절차 / 478**  
북경에 살고 있는 B는 친구 A가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탁하므로 60만 위안을 빌려 주었으나 A가 좀처럼 갚지 않았습니다. B는 소송을 해서 돌려 받고 싶은데 그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J-3 소장 작성 / 484**  
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押金)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은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 J-4 변호사의 보수기준 / 485**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 J-5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487**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도중 기계 작동 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인 A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J-6 소송 대리 / 489**  
중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J-7

### 증인의 출석의무 / 490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증명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A, B 모두 C가 잘 아는 사람이라 C는 어느 쪽에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꼭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J-8

### 재심 신청 / 491

北京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B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B가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심이 가능한가요?

J-9

### 소송상 화해 / 493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A는 어느 정도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들어준다면 화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J-10

### 조정 신청 / 495

A는 북경의 안경점에 렌즈를 납품하였는데 납품개수와 재고개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금이 6만 위안에 달해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경점은 위 미납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타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J-11

### 중재 제도 / 497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거래생활에서 생긴 분쟁에서 중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 J-12 강제집행 / 499**  
 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후에 A가 생각해 보니 그때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A는 이자의 지불을 지체하였더니 갑자기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길은 없나요?
- J-13 지급명령 / 501**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 J-14 재산보전처분 / 503**  
 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일한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사촌형인 C명으로 도피시킬 수도 있다고 감안되어 B는 재산보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보전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나요?
- J-15 한국법원 판결문의 집행력 / 505**  
 김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중국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요?
- J-16 중국소송 확인방법 / 506**  
 중국회사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인데, 중국회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중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를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에 불일이 있으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Section K 형법과 생활

- K-1**      **외국인의 형사처벌 / 509**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 K-2**      **형법의 적용범위 / 511**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와 B는 여자문제로 싸우는 과정에 A의 폭행으로 B의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5개가 부러졌습니다. B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K-3**      **정당방위 / 512**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K-4**      **범행중지의 경우 형사책임 / 514**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고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꺼주어 B의 공장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A는 파출소에 자수하였는데,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K-5**      **교통사고 야기자의 책임 / 516**  
 북경에 거주하는 A는 2008년 12월 14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5명을 치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 K-6** | **음주운전 / 520**  
 북경에 거주하는 김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 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K-7** | **식중독 사고 / 522**  
 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기업 야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K-8** | **문화재 밀수 / 524**  
 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K-9** | **자금유용 / 526**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K-10** | **불법감금 / 528**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 A회사의 임직원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K-11** | **중혼 / 530**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K-12** | **절도 / 532**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한국인 A는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돈 3,000위안, 노트북 1개(시가 5,000위안), 카메라(시가 2,000위안), 만년필 1개, USB 1개 등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공안에 간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K-13

**외국의사의 의료행위 / 535**

북경 A병원의 한국부에서 한국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B가 중국에서 별도의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K-14

**태아성별감정의 위법성 / 537**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 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 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이에 응한 B의사 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K-15

**만취시 구타의 감경여부 / 538**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어느 날 만취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구 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는데,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 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중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 나요?

K-16

**위조지폐의 사용 / 539**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 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 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K-17

**공장임대인의 형사처벌 / 541**

한국인 김씨는 아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임대 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공안에 의해 중 국인 친구의 공장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러 한 경우 공장을 임대해준 김씨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 K-18 | 업무상 횡령 / 543**  
박씨는 중국에서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회계 직원이 24만 위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형사처리해야 하나요?
- K-19 | 공소시효 / 544**  
알고 지내는 중국인으로부터 밤중에 칼로 위협을 당하여 지갑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형법상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K-20 | 계약 사기죄 / 545**  
A사는 중국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B로부터 대리석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주문한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폐자재를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중국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K-21 |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 548**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 K-22 | 낙태의 처벌여부 / 550**  
한국인 A는 중국 여성 B와 경제적 상황이나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 임신을 하여 낙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낙태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 K-23 | 공범 / 551**  
한국인 A는 친구 B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B가 들어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집 안에서 갑자기 ‘도둑이야’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 B와 A는 모두 도둑으로 몰려 달려온 사람들에게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CONTENTS

- K-24 | 간통죄 / 553**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 K-25 | 집회, 시위, 행진 / 535**  
중국에 소재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회사급여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측 회사직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집회를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요?
- K-26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 557**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Section L 형사소송과 생활

- L-1 | 형사변호인의 자격 / 559**  
중국에서 공안에 폭행죄로 구속되어 인민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 L-2 | 변호인의 선임 / 560**  
한국인 김씨의 아들은 북경 소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옆방 룸메이트의 컴퓨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경찰서 간수소(看守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는 아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L-3 | 국선변호인 제도 / 561**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

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그러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

L-4 **변호사의 권리 / 562**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L-5 **강간죄의 친고죄 여부 / 564**

북경에서 갑이 부녀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요?

L-6 **형사처벌과 합의 / 565**

한국인 A가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단계에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L-7 **취保候심 석방인의 의무 / 566**

친구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L-8 **주거감시 / 567**

공안기관에서 김씨에게 주거감시를 명했는데, 주거감시가 무엇인가요?

L-9 **복역자 면회 / 568**

친구가 북경에서 중국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친구를 한번 면회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L-10 **교도소내 반입물품 종류 / 569**

남편이 현재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한국 소설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한국책도 반입이 가능한지요?

- L-11      가석방 / 570**  
 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 L-12      집행유예 / 571**  
 중국인을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행유예제도가 있는지요?
- L-13      친고죄 / 572**  
 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 L-14      불법녹음의 형사처벌 여부 / 573**  
 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내려 하는데,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지요?
- L-15      피해자의 형사소송 참여 / 574**  
 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안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L-16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진술 기회 / 575**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음주측정에 대해 혈액검사 등 방법으로 반박할 방법이 있는지요?
- L-17      한국으로의 이송 / 576**  
 한국인 A는 중국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이 확정된 후 2년째 복역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남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싶은데, 실제 수행자를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는지요?

**L-18      병보석 / 577**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A는 허리통증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일시 석방이 가능한지요?

**L-19      구속요건 / 579**

한국인 A는 중국인 B와 싸움을 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공안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염려는 없는지요? 중국법상 구속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20      불입건의 구제조치 / 580**

한국인 A는 중국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L-21      출국금지 / 581**

한국인 A는 거리의 공공물건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5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L-22      재심청구 / 582**

한국인 A는 중국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대방을 쥐고 흔들었을 뿐 절대 때린 사실이 없는데, 다시 구제받을 기회는 없는가요?

**L-23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 584**

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 습니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어 상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2 심 법원에서 더 중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관계되



- 는 규정은 없는지요?
- L-24      구류기한 / 585**  
 한국인 A는 폭행 혐의로 공안기관에 구류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나요?
- L-25      부당하게 압수당한 재산의 반환 / 587**  
 한국인 A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공안기관에 형사입건되어 조사 받고 있는데, 공안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의 일부 개인재산도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압수된 개인재산과 입건된 형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재산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L-26      회피제도 / 588**  
 한국인 A는 폭행죄로 검찰원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법원의 개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친삼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L-27      증인보호 / 590**  
 한국인 A는 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A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L-28      법정질서 파괴시의 처벌 / 592**  
 한국인 A는 자신의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의 재판에 방청하던 중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판사와 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구금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L-29      상소기간이 지난 후의 상소 가능성 / 593**  
 A는 폭행죄로 구역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차후 생각하여 보니 너무 중한 벌이라 생각되어

다시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상소기한이 하루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가 가능한지요?

L-30

**상소기간 / 594**

1심 형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얼마 동안 이내에 상소하여야 하는지요?

L-31

**이심중심제 / 595**

중국에서는 2번 재판을 받으면 끝난다고 하던데 형사재판도 2번 재판받으면 다시 재판받을 수 없나요?

L-32

**구속절차 / 596**

한국인 A는 폭행죄로 중국의 공안기관에 구속되었는데 가족에게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중국 형사소송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지요?

L-33

**외국인의 재판 방청 / 597**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유학생입니다. 중국의 재판에 대하여 좀더 깊게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 가서 일부 관심 있는 분야의 재판을 방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L-34

**유기징역 기간의 계산시점 / 598**

한국인 A는 고의상해죄 혐의로 구속된 후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재판이 지연되다가 결국 반년 후 유기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란 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게 되는가요?

L-35

**공소제기 주체 / 599**

한국인 A는 중국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원에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곧 형사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건이 취소되고 검찰에서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요?

- L-36**     **사형복의제도 / 601**  
 중국에는 사형복의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 L-37**     **재판중의 선임변호사 교체 / 603**  
 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한 바와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 L-38**     **잘못된 형사구금의 배상 / 604**  
 한국인 A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가서 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에 소문이 퍼져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기타 보상을 하여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L-39**     **형사재판법원의 확정 / 605**  
 한국인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을 맡는 법원은 어떻게 확정되는지요?
- L-40**     **감형 및 감형조건 / 606**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기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형이 절대적이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가능한지요?
- L-41**     **사형집행유예제도 / 607**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상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L-42**     **형사고소 절차 / 609**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 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L-43 한국인끼리의 형사고소 / 611**  
 북경에서 유학중인 여학생 A씨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 B씨와 사귀게 되었으나 나중에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찰의 도움을 얻고 싶는데, 한국인끼리의 사건도 중국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 L-44 재산압수의 적법성 / 612**  
 한국인 A는 북경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평소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여 왔는데, 어느날 경찰이 들어와 현장조사를 하며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찰은 영장 없이도 재산압수가 가능한지요?

## Part 3 중국법 관련 참고자료

### Section M 중국의 법제와 법문화

- M-1 법제 / 617**  
 중국 법령의 다양성과 입법의 신속성
- M-2 법문화 / 621**  
 중국의 판시와 준법

## Section N 중국법의 종류와 법률용어

- N-1    **법종류 / 626**  
중국법의 종류와 내용
- N-2    **법률용어 / 632**  
중국의 법률용어 정의

## Section O 부록(참고)

- O- 1    **자료색인 / 648**  
중국법 관련 자료 리스트
- O- 2    **법률센터 / 653**  
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 O- 3    **공관연락처 / 654**  
주중한국영사관 연락처

**집필후기 / 658**

Section-A 투자와 경영

Section-B 기업 세무

Section-C 무역과 관세

Section-D 노무 인사

Section-E 기업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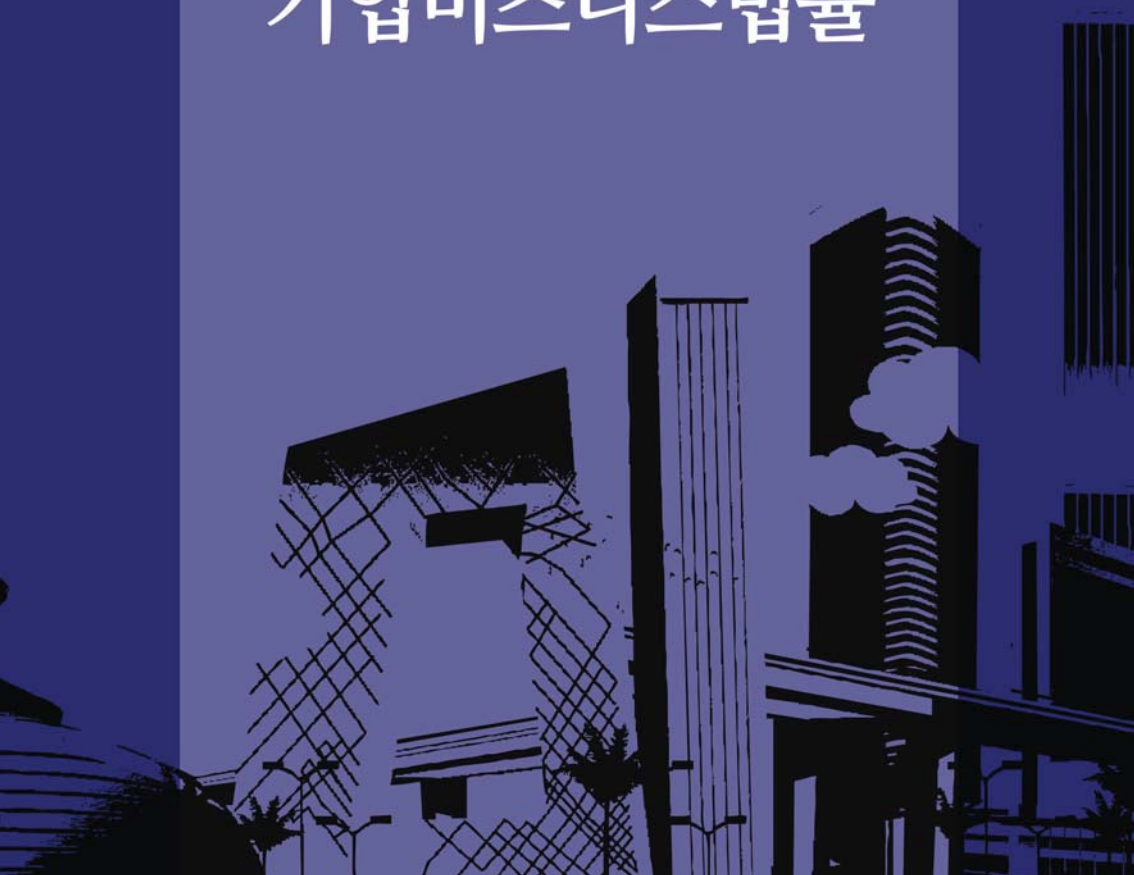
Section-F 기업 청산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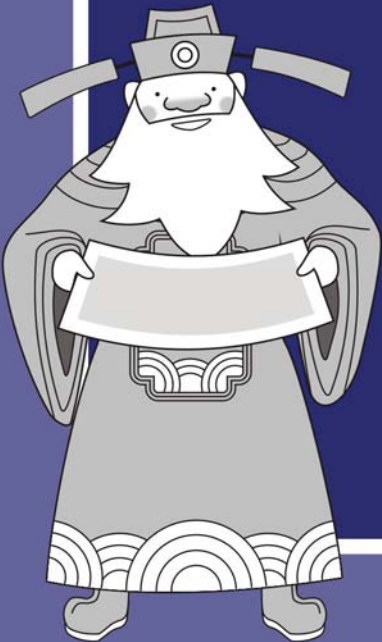
---

# 기업비즈니스법률



# Section-A

## 투자과 경영







A-1

외국인 개인사업자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호적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시 개인사업자 관리 잠정조례 실시세칙(城乡个体工商户管理暂行条例实施细则) 제2조). 즉,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법인(독자,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A-2

###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독자기업’), 외국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 등 별도의 기업형태를 인정하면서 각각 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资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주로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컬어 통상 ‘삼자기업(三资企业)’라고도 합니다.

이중 독자기업은 외국측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중국식으로는 董事会)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가 최고권력기관이 됩니다. 외상투자산업정책의 적용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관공서와의 인맥구축과 인력운용, 내수판매 등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본차입이 자유롭고 지분관계가 명쾌하여 기업을 지배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어 최근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은 외국측과 중국측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일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 배분 등이 양측의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측의 투자비율은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작기업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투자지분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중국식 표현으로는 董事)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권력기구입니다.

이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명되는데 정관의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감, 합병과 분할, 해산 등 경영권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은 이사회 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고, 양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이사회 의 장(董事长), 이사회 부의장(副董事长) 등을 상호 분점하도록 하여 일방이 우세한 지분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성행하던 투자형태로서 투자비율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 배분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국측은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측은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며, 이윤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측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합작 종료시 기계 등 고정자산을 모두 중국측이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짧고 분쟁방생의 여지가 많아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A-3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의류업체인 저희 회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법상 어떠한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중국의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을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나누고, 그외의 업종은 허용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중국 현지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의류산업이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류유통업인지 의류생산업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획과 설립조건 및 체크해야할 사항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의 여부 확인
- ② 영업장소의 합법성 여부 확인
- ③ 독자, 합자 또는 합작으로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 ④ 출자비율에 대한 검토
- ⑤ 출자방식 및 출자목적물(현물, 현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



⑥ 출자금 납입방식에 대한 검토

⑦ 이사회 의사수, 의결방법, 대표이사, 총경리(總經理) 선임문제 등에 대한 검토

⑧ 상표사용, 노무관리, 회사 해산시 재산처리, 경영기한, 합작의 경우 출자 불이행에 따른 위약책임 문제, 분쟁해결 방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가 중국 내 법인 설립시 파트너로서 모 중국업체를 선정하여야만 하는 이유 및 기타 관련 리스크에 따른 대책방안들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홍콩, 마카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홍콩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형태는 외자기업, 즉 외상합자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A-4

##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독자로 투자한 기업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상독자기업 설립시 관련 행정기관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상독자기업 설립 후의 변경등기 절차는 각 단계별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업명칭 등록(공상행정관리국)
- ② 프로젝트 건의서 및 초보적인 심사허가(정관, 이사회 구성원, 타당성 연구보고서 등), 기업코드번호증서(국가품질기술감독국)
- ③ 비준증서(성급 상무부서, 현급 상부부서)
- ④ 영업집조(营业执照,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공상행정관리국)
- ⑤ 통계등기(통계국)
- ⑥ 은행계좌 개설, 회사인감, 외국인 거류증, 비자수속
- ⑦ 외환, 세무, 세관, 노동, 재무등기 등



## A-5

## 회사설립 등록자본금

## 총출자금 5만 위안짜리 식당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법(公司法) 제26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1인 유한회사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 납입방식은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분할납입하거나 6개월 내에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내에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외상투자회사 심사등기 관리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통지 《关于外商投资的公司审批登记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的执行意见的通知 제9조》).

만약 분할납입방식(1년 내지 3년)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차 납입금으로 등록자본금 총액의 15% 이상을 납입하시고(외상기업법 실시조례(外资企业法实施细则) 제30조 제1항) 나머지 85%는 3년내에 몇 차례와는 상관없이 그 기간 내에 납입완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점(최저 500만 위안 이상), 인테리어회사(최저 50만 위안 이상) 등 특별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회사법에 따라 3만 위안 이상이면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단,



- ① 지역에 따라 법률규정 이행여부가 다르고,
- ② 식당의 규모와 자본금 규모 간에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 ③ 각 지역은행에 따라 금액이 적을 경우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을 가능성 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설립 전에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 법인간의 원만한 비용회계처리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역 상무국 외자처 및 그 지역 은행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6

설립자본금 및 송금문제

중국에선 현지인과의 합작으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과 현지인과의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에 외상합자기업의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3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등록자본금인 3만 위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대하여 각 지방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상관리부처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현지인과의 지분비율은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企业产业指导目录, 2007년 개정판)’에 따라 각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익금 송금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따라 각종 적립금과 기업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 후 채무를 상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지역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거쳐 송금하면 됩니다.



A-7

**현지공장 설립시 구비서류**

합작투자로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할 때 구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합작투자로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투자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

- ① 중국 투자자의 신분증명(회사 날인이 있는 영업집조 사본 1부),
- ② 외국투자자의 신분증명(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1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산증명(원본 1부),
- ④ 현지법인에登記되는 3인 이상 이사의 신분증명 사본 1부, 한자성명, 주소,
- ⑤ 현지법인에登記되는 대표이사의 이력사항 및 사진 2장(여권사진),

⑥ 장소사용 증명(비치된 양식에 한함),

⑦ 회사소개서

(2) 별도 작성 서류

- ① 정관 3부, ② 계약서 3부, ③ 수권위탁서(본사무소 1부), ④ 신청서 1부, ⑤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2부, ⑥ 프로젝트 건의서 2부, ⑦



위임파견서 3부, ⑧ 수권위탁서(공상행정관리국) 1부, ⑨ 기업설립  
신청서 1부, ⑩ 승낙서 1부, ⑪ 기업비서 등기표 1부  
등이 있습니다.

또 실무상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A-8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 절차가 어떠한지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자산 신용 증명, 파견대표의 여권, 장소 사용 증명 등을 갖추어 공상행정관리국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登記절차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10년 11월 10일 발표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를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연락사무소 설립등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연락사무소 설립 등기를 신청시 ① **연락사무소 설립등기 신청서(代表机构设立登记申请书)**, ② 본사의 주소증명과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증명, ③ 본사의 정관, ④ 본사의 수석대표, 대표에 대한 임명장, ⑤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⑥ 본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 신용 증명, ⑦ 연락사무소 소재지 사용 관련 적법성 입증 문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부서는 신청 수리후 15일 이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증과 대표증을 발급하게 되거나 등기거절 통



지서를 발급하고 거절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4조 제1항). 유의하실 점은 위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동 조례 제13조 제1항).

만약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소득과 영업행위에 제공된 도구, 설비, 상품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A-9

아파트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보증금(押金) 3개월치와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5,000 위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회사주소로 등재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물권법(物權法) 제77조에 따라 아파트도 회사 주소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이 식당, 노래방, PC방, 인터넷서비스업, 제조업(위탁가공도 포함), 화학약품 등일 경우에는 주소로서의 등재가 불가합니다.

두 번째, 설립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 또는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위원회의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대행업체 또는 지인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게 된다



는 점입니다.

즉,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아파트가 회사주소로 등재될 수 없다고 하여 그 돈을 그냥 날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① 회사주소로 등재 가능한 음성주소를 사서 매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② 두 장소의 임대료 비용처리가 어려워 비밀리에 가짜 영수증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경우는 행정상(등재주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무), 형사상(가짜 영수증 구매)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A-10

**외국인 소유 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얼마 전 아는 한국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주소를 등재하려고 하니 외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중국 물권법에는 소유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건물 구입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① 중국에서 거주 또는 학업을 하는 외국인인
- ②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 ③ 자가사용만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을 두어 자기가 구입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





견(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 제1조 제1항).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외국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법인주소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소유주 명의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명 의가 아닌 외국인 개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회사주소를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해당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A-11

### 신축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막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房产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权证)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오피스텔의 건물권리등기증이 없을 경우

① 기획위원회(规划委)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검수합격통지서(建设工程规划验收合格通知书),

② 건설위원회(建委)에서 발급하는 준공검수기록표(竣工验收备案表)

를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면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건설공사 검수합격통지서에는 권리귀속관계(权属), 용도(房屋用途), 현재 건물권리등기증이 발급과정 중에 있다는 증명(产权证正在办理当中的证明)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용도는 반드시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오피스텔을 회사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커피숍 창업 절차



중국에서 커피숍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가능하고, 통상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자연인 1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법의 1인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59조에서는 '1인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만 위안이며 동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커피숍과 같은 음식/음료수 가공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실 경우 위생허가증 및 환경평가등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방마다 이러한 허가증에 대한 서류요구 및 검사 표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당해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보신 후 창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A-13

### 컨설팅업체의 설립

중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중국에 자문회사가 많이 개방되어 독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등록자본금도 지역에 따라 다르나 자문업종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이 되면 비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자인 경우에는 외국측이 전체 자본금의 25% 이상을 투자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기업소득세로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되며 25%이고 영업세는 판매액의 5%입니다.

중국측의 합작 대상자는 자연인은 해당되지 않고 법인이나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외국측은 자연인, 법인 등 제한이 없습니다.



A-14

건설시공회사의 설립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인 설립 조건, 설립절차, 건설회사 규모별 투자금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중국의 현행법상 외국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모두 가능합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는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여야 하며, 외국측도 건설회사여야 합니다. 최저 등록 자본금으로는 1급 건설회사는 1천만 달러 이상, 2급 건설회사는 500만 달러 이상, 3급 건설회사는 16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이 1, 2, 3급에 따라 200만 달러, 150만 달러, 60만 달러 이상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건축법(建筑法), 외상투자 건축기업 설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실시 의견(关于设立外商投资建筑业企业的若干规定实施意见), 건축기업 자격관리 실시의견(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实施意见), 외상투자 건축업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외상투자 건축업 기업 자질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做好外商投资建筑业企业资质管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 건축업 기업 자격관리 규정(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등 법규와 기타 관련 실무 정책이 있습니다.



## A-15

###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

중국의 외국기업 전용공단 및 주거단지 개발에 한국건설 회사가 참여하거나 또는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국의 건설회사가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관리부서, 토지개발회사(부동산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권리등 기권 예비분양출양계약(구매협약)을 체결하고(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业审批和监管的通知 제2조 제1항),

- ② 상호와 조직기구를 구비하고(城市房地产管理法 제30조 제1호),
- ③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고(동법 동조 제2호),
- ④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만 위안 이상,
- ⑤ 5명 이상의 부동산, 건축공정 자격증을 갖춘 전문기술자 보유,
- ⑥ 2명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 회계사 보유(房地产开发企业资质管理规定 제5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건설사가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 개발회사의 조건 및 건축시공회사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과 같습니다.



## [A 자료1]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조건

(단위: 만 위안)

구분	1급	2급	3급	4급	잠정급
자본금	5,000 이상	2,000 이상	8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개발경력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준공량	최근 3년간 30만m <sup>2</sup>	최근 3년간 15만m <sup>2</sup>	누계 5만m <sup>2</sup>	-	-
공사품질 (합격률)	5년 연속 100%	3년 연속 100%	2년 연속 100%	준공부분 100%	-
전년도 시공면적	15만m <sup>2</sup>	10만m <sup>2</sup>	-	-	-
전문직	4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그중 중급 직함 소지자	2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	-
자격증 소지 회계담당자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기술책임자 재무담당자 통계책임자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초급직함	중급직함 초급직함 -	중급직함 초급직함 -
품질보증 체계	"주택품질 보증서, 주택 사용설명서" 제도시행	좌동	좌동	좌동	
영업범위	전국 범위의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건축면적 25m <sup>2</sup> 이하 개발사업. 단,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이 확정			
사고	중대한 공사품질사고 미발생				

\* 참고: 地产开发企业资质管理规定



## [A 자료2] 건축시공회사 자격조건

(단위: 위안)

구분	특급	1급	2급	3급
자본금 순자산 연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억 이상</li> <li>• 3.6억 이상</li> <li>• 15억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만 이상</li> <li>• 6,000만 이상</li> <li>• 2억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만 이상</li> <li>• 2,500만 이상</li> <li>• 8,000만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만 이상</li> <li>• 700만 이상</li> <li>• 2,400만 이상</li> </ul>
기업경력	<p>&lt;최근 5년간 공사 규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층 이하 건축 높이 100m 이하</li> <li>• 단일건축 3만㎡ 이상</li> <li>• 10만㎡ 이상 주거단지 또는 건축군</li> <li>• 건설공사수주액 1억 이상</li> </ul>	좌동	<p>&lt;최근 5년간 공사 규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층 이하 건축 높이 50m 이하</li> <li>• 단일건축 1만㎡ 이상</li> <li>• 5만㎡ 이상 주거단지 또는 건축군</li> <li>• 건설공사수주액 3천만 이상</li> </ul>	<p>최근 5년간 공사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층 이하 건축 높이 25m 이하</li> <li>• 건설공사수주액 1,500만 이상</li> </ul>
전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00명 이상</li> <li>• 기술자 200명 이상</li> <li>• 고급직함 10명 이상</li> <li>• 중급직함 60명 이상</li> <li>• 1급 PM 12명 이상</li> </ul>	좌동		
기업책임자 기술책임자 재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 10년 이상 고급직함</li> <li>• 경력 10년 이상 고급 총공정사</li> <li>• 고급 총회계사</li> <li>• 고급 총경제사</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경력</li> <li>• 경력 5년 이상 중급 총공정사</li> <li>• 초급회계사</li> </ul>
영업범위	각종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수주액 &lt; 자본금×5</li> <li>• 40층 이하</li> <li>• 높이 250m 이하</li> <li>• 20만㎡ 이하 주거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수주액 &lt; 자본금×5</li> <li>• 28층 이하</li> <li>• 높이 120m 이하</li> <li>• 12만㎡ 이하 주거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수주액 &lt; 자본금×5</li> <li>• 14층 이하</li> <li>• 높이 70m 이하</li> <li>• 6만㎡ 이하 주거단지</li> </ul>

\* 참고: 关于印发《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实施意见》的通知





A-16

외상기업의 임대사업 허용여부

한국인 A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의 투자효과를 노리고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외국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회사주소로 등기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 1조 제1항).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집조상의 영업범위 안에 사전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의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상기업은 영업집조상의 영업범위 안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통지의 규정에 따라 A가 자신이 구입한 오피스텔에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고 주소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17

교육사업 관련 기업의 설립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단독으로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와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실시판법(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어학이나 인문사회 계통의 교육사업은 지역 교육국의 비준을 받아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하여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 미용 등의 기능교육은 외국인도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중국 법인과 역할분담을 하고 관련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교육기관 명의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어학원의 설립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경영해보려고 하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이하 ‘조례’)와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실시판별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 한국어학원 등 외상투자 교육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및 실시판별의 규정에 따라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하여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의로 외상투자 한국어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실 경우 상술한 외상투자 교육기구 설립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바, 상무부서 등 인허가부서에서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당해 규정에 대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담당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A-19

### 꽃꽂이 학원의 설립

중국에서 단독으로 꽃꽂이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국의 현행법상 꽃꽂이 학원(직업, 기술, 기능교육)의 교육관련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화원을 겸하는 학원을 하려면 우선 화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해당 지역의 공상국에 학교(직업, 기술, 기능교육) 설립을 신청하여 학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기술 관련 학원을 설립하고 화원은 부대시설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 댄스학원의 설립



중국에서 댄스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인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댄스학원이라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체육교육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100% 외국인 지분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설립조건은 지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장소, 시설과 기기가 국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영범위와 규모에 해당하는 기술인원이 있어야 하고 상응하는 안전, 위생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투자하실 경우 상무부서의 기업설립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영하고자 하시는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등록자본금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립신청시 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신용증명(예금잔액증명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비용은 대략 1,000 위안에서 2,000 위안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이러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현지의 관련업무 대리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A-21

### 주택관리업체의 설립

한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투자하려 하는데 주택관리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없는지요?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7)에 근거하여 설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상투자산업을 장려류·제한류·금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주택관리업은 위에서 언급한 장려류·제한류 및 금지류 중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에 투자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법규정상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각 지역마다 실무상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정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공사 시공업체의 설립



전기공사 시공업체가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공사 시공업체로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건설시공업체가 되면 공사발주에도 제한이 따르므로 전기시설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진출하여 시공은 건축시공권을 가진 중국 업체의 명의로 시공하고 전기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기시설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최소 등록자본금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전기시공업체라면 자질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0만 위안 정도의 등록자본금을 출자하여야만 시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A-23

## 합자회사의 설립과 이익금 송금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익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한국기업이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명칭 사전허가
2. 인허가
3. 기업코드번호 신청
4. 외상투자기업 비준서류 신청
5. 영업집조 신청
6. 후속등기

외국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송금시에는 외환관리국에서 지정한 은행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 ① 세금완납증명 및 세무신고서
- ② 당해 연도 이익에 대한 회계 보고서
- ③ 이윤분배에 대한 이사회 결의
- ④ 외상투자기업 외환 등기증
- ⑤ **험자보고서(验资报告)**, 출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합자회사의 현물출자



중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저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회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股东)는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를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을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위 회사법 규정에서는 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은 출자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차권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차권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비준기관인 상무국과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비준기관 및 법인등기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25

**병원의 설립**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 의사자격을 가지고 중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독자로는 설립이 불가능하고 중외합자와 중외합작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중외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판법(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제2조).

설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외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는 모두 병원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 ② 신설병원 역시 법인이어야 하며,
- ③ 투자총액은 2천만 위안(한화 약 3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 ④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 ⑤ 합자, 합작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 위생부에서 진료허가를 받아 중국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설립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여성의류, 액세서리, 잡화)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도 가능한지요?

우선 단독형 쇼핑몰은 한국의 인터파크, CJ Mall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고, 입점형 쇼핑몰은 G마켓과 같은 형태의 쇼핑몰을 지칭합니다. 이중 단독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전선업무 경영허가증(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书, ICP)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을 추진하려면 전술한 규정에 따라 ICP증을 취득하여야만 동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에서는 외상투자의 ICP 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외합자의 형식(외자비율은 50%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무부서에서 중외합자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설립허가를 거의 안 해주고 있으므로 중외합자의 형식으로 는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국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한 후 외



국회사가 동 중국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으로(예를 들면 기술서비스 제공, 자금대여 등의 합의를 체결) 동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타오바오(淘宝)**와 같은 입점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단독형 쇼핑몰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타오바오의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도 중국의 은행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인 1인의 보증이 있으면 입점하여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역시 입점하여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타오바오(淘宝)라고 하는 중국 쇼핑몰을 통해 한국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러한 판매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원성명, 인터넷 쇼핑몰 입점점포의 명칭 등을 입력).

동 절차 완료 후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신분증(중국국민의 신분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타오바오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과 이익분배, 손실부담, 분쟁해결방식 등에 있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외국인 개인도 중국의 은행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인 1인의 보증이 있으면 타오바오에 입점할 수 있게 되어 예전과 같은 법적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연기획사의 설립

한국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사업자입니다. 중국 사업자로 부터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국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 내에서 공연관련 회사의 설립제한 및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국인투자 제한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공연중개기구(演出经纪机构) 또는 공연장소경영업체(演出场所经营单位)를 설립할 수 있으나, 문예공연단체(文艺表演团体)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중개기구라 함은 공연경영활동 및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를 말하며, 공연장소경영업체라 함은 경영성 공연활동에 전문적인 공연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업체를 말합니다. 또 문예공연단체라 함은 각종 문예공연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를 지칭합니다.



## 2. 설립형식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공연중개기구 또는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없고, 반드시 중국 투자자(자연인은 원칙상 제외)와 합자 또는 합작의 형식으로만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자의 경우 중국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51% 이상 되어야 하고, 합작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3. 설립절차

### (1) 명칭사전허가

회사의 예비명칭을 회사 설립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동 통지서는 발급 당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2) 경영성 공연허가증 신청

공연중개기구 또는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 시 회사 설립 지역 문화주관부처(성급 문화주관부처에서 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부에서 20일 내에 최종심사)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경영성 공연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기업명칭 예비허가통지서, ③ 경영장소 증명, ④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 ⑤ 공연중개인원의 자격증명, ⑥ 투자자 자금증명 및 등록증명, ⑦ 타당성연구보고, ⑧ 합자계약, ⑨ 정관

### (3) 기업코드번호 신청

회사설립지역 품질감독관리부서에 기업코드번호를 신청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경영성 공연허가증을 취득한 후 회사설립지역의 상무 주관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영업집조(营业执照)**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후속 절차

영업집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인감, 외환, 세무, 재정, 통계 등 후속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의 설립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P2P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서비스 회사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P2P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여부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영업범위에 유료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부가전신업무(增值电信业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 개정판)의 규정에 따르면 전신업은 투자제한류에 속하며 부가전신영업을 할 경우 외자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독자기업 형태의 외상전신기업 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측과 공동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전신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외상합자의 형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외자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동 규정 제11조는 외상전신기업을 전국 규모의 기업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규모별로 중국측 주요투자자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 제5조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전국 규모 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기업은 1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전신업무 경영허가증(ICP)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위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비준부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법률규정상 외상합자 전신기업의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관련 비준부처에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온라인게임사의 설립



온라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국의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전신조례(电信条例)’ 분류목록상의 부가통신업(增值电信业务)이고(제8조 제2항, 제3항), WTO가입에 따른 중국 통신사업의 개방 일정에 따르면 경쟁시장체제로 진입한 오픈된 사업입니다.

또한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온라인게임 운영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중국측을 파트너로 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도 중국기업과 함께 합자기업을 설립해서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2007) 금지업종 (10) 문화, 교육, 오락업 7항에 따르면 ‘인터넷문화경영’은 금지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중국에서 부가통신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온라인게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은 온라인게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지 창업비(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만 지출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중국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등록자본금까지 출자한 기업들을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와 조사 및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적용, 해석하지 못하여 엄청나게 손해를 본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업초기에 반드시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중국 국적이어서 아내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요?

부동산 중개업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인 아내분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시 부동산중개기구관리규정(北京市房地产经纪机构管理规定)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A 자료3] 부동산 중개기구 자격요건

구분	1급	2급	3급
자본금	10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상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소지자	전체 직원의 70% 이상	전체 직원의 60% 이상	전체 직원의 50% 이상
부동산 경제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고급경제사 5명 이상	중, 고급경제사 3명 이상	중, 고급경제사 2명 이상
준수 규칙	- 기장, 재무제표, 계약 규범화 -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수취 - 불법행위 없음	좌동	좌동



A-32

## 다단계판매업체의 설립

중국에서 암웨이(Amway)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다단계 사업이 가능한지요?

중국의 현행 법률은 다단계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지방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단계 영업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역시 기존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무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국가국내무역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외상투자 다단계기업의 판매방식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外商投资传销企业转变销售方式有关问题的通知)’가 발표되면서 암웨이를 포함한 기존의 10개 다단계 기업이 동시에 점포를 설치하고 판매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방문 판매의 방식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 금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단계 판매 관리판법(传销管理办法)에서는 다단계 판매의 정의와 인가 등을 규정하면서, 외국기업과 개인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

② 2005년 공포된 다단계 판매 관리판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Organizor(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판매촉인)들을 발전시



키고 그 Distributor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계산,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발전 대상들로 하여금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다단계 판매로 볼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Organize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타인을 발전시켜 가입하도록 하여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수에 따라 보수(물질적 장려와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를 계산, 지급함으로써 불법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Organize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비용 납부 또는 상품의 구입 신청 등 방식의 변상적 비용 납부를 요구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기타 인원의 가입자격을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불법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③ Organize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타인을 발전시키도록 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위급 Distributor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급 Distributor의 보수를 계산 지급하고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만일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단계 판매를 조직, 계획한 자는 다단계 판매에 사용된 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당하고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동 조례 24조).



A-33

**유한회사 설립절차**

**중국은 회사설립 절차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외국인’이라 약칭함)이 설립하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유한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잠정 규정(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问题的暂行规定) 제7조)에 따라 ①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 이상,

② 외국자본 25% 이상,

③ 중국기업과 합작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주무부처인 상무부의 비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주식회사 설립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A 자료4] 한중 양국의 회사설립절차 비교

구분	비교		문 제 점
	한국	중국	
① 출자 시기	출자이행 후 설립등기	설립등기 후 출자이행	중국은 회사설립신고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호등록, 비준증서, 기업코드증 신청, 위생허가, 환경허가, 소방허가, 제조허가, 사업자등록증, 회사도장, 공안국 비치등기, 외환허가, 은행 자본금계좌 개설 등 위 업무에 소요되는 약 2.5개월 ~ 4개월 동안 지출되는 비용 (창업비)의 처리가 문제가 됨. (위 내용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
② 비준		상무국 등	중국은 설립등기 전에 업종에 따라 다른 소관부처의 인허가와 상무국의 비준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③ 설립 등기	관할법원 등기소	공상행정	중국은 설립등기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음
④ 사업자 등록증	관할 세무서장	관리국	중국은 임시사업자등록증(유효기간 3개월)을 수령하고, 출자금이 이행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증명보고서를 발급 받아 정식사업자등록증 신청. 이로 인해 회사설립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직원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귀국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
⑤ 각종 등기 등록		각 소관부처	외환관리국, 세무국(국세,지방세), 통계국, 재정국, 기술감독국, 공안국 등에서 등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⑥ 세관 등기		세 관	약 2.5~4개월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출자금계좌를 개설하고 출자금이 이행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증명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정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에야 세관등기를 할 수 있음. 세관등기를 하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함. 회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수출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큼. 소요기간은 약 2.5~4개월 + 한국에서 출자금 송금일자 + 출자증명 보고서 발급 1주일 + 정식사업자등록증 수령 1주일 정도를 예상하여야 함. (북경기준임)



A-34

**유한회사 주주의 책임범위**

친구인 중국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저는 주주로서 참여만 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법 제3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액 및 납부기한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미납한 출자금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출자한 기타 주주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28조). 이와 같은 위약책임은 주주 합의서에서 약정하거나 기타 내부규정을 통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가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최저 등록자본금에 미달하거나 등록자본금을 은닉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저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법 제206조, 제208조 및 제209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하여 회사등기절차를 진행하거나 허위출자 또는 출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기한부 시정명령을 내리며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당해 주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투  
자  
와  
경  
영



A-35

**유한회사의 외국인 법정대표**

중국인이 투자한 내자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이 법정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한회사의 법정대표(法定代表) 또는 대표이사(總經理)는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고용하여 위 직책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대표 또는 대표이사로 고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 고용된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약간의 지분이라도 투자하였다면 그 회사형태는 내자기업이 아닌 외상투자기업(합자 또는 합작)이 됩니다. 중국의 내자기업 중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 증서상의 법정대표를 외국인으로 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인허가증서상에 법정대표를 외국인 명의로 해 놓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 회사가 외국인 회사라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자법인의 법적 소유권(지분)이 전혀 없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인데,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다만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투자자가 주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14조). 그러나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합의는 비교적 손쉽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인과 중국인 대표 사이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 ① 투자에 대한 계약(이른바 투자협의를) 체결하고
- ② 신설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을 질권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질권설정 계약 체결 및 질권설정 등기를 진행하며
- ③ 투자협의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출자 및 비용에 대한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 ④ 투자자가 신설법인 이사/총경리 직무를 담당하고 주주총회로부터 가능한 넓은 범위의 직권을 위임받아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등의 방안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중국인 명의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게 되면 행정법상 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적지 않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모씨와 최모씨는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씨가 자금을 대고 최씨가 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쌍방은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씨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씨는 최씨를 통하여 중국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위 의류공장에 이윤이 생겨 쌍방이 배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씨는 의류공장 및 최씨를 상대로 이윤배당 및 주주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외상투자기업의 정관에 날인 및 기타 투자자와의 투자협약서(또는 중외합자/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상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법적으로 주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윤배당에 관한 청구는 주주만의 권리로서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에 기재된 투자자만이 기업에 이윤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모씨는 실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았으며 또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배당이나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一) 제17조).

단 최씨가 투자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투자 계약에 근거하여 최모씨가 의류공장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중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동 규정 제15조).



## 중국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과 경영권 보호



저는 중국기업과 신규로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측 지분율이 중국측에 비해 낮은 경우에 정관상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 의하면

- ① 이사회는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이고
- ② 이사회의 기존 이사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유효하며
- ③ 합자기업 정관의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합병과 분할, 경영 중단과 해산 등 사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야 하며
- ④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 중 일방이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면 다른 일방이 부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지분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중국투자자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전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 ① 이사회 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② 이사회 결의 통과기준을 만장일치 또는 비교적 높은 비율(4/5, 3/4)로 규정하여, 한국측 이사의 동의 없이 결의가 통과하기 어렵도



록 규제하며

③ 중국 투자자가 이사회 의장을 파견하면 한국측이 부의장과 총경리를 임명하는 동시에 부의장과 총경리의 권한을 명확하고 넓게 규정하고

④ 교착상태의 경우 및 그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39

지분양도의 비준과 동기

북경에 소재하는 ‘○○○유한회사’의 투자자인 A는 B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법률에 따라 비준 및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비준 및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 제20조에 따르면 ‘지분양도 계약은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가 변경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는 ‘지분양도의 비준기관은 법인 설립시의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이고, 등기기관은 원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양도의 비준은

- ① 신청서
- ② 원계약서, 정관 및 수정안
- ③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
- ④ 이사회 결의서
- ⑤ 새로운 이사회 구성명단
- ⑥ 지분양도 협의서
- ⑦ 기타 자료



등을 비준기관에 제출하면 30일내에 비준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분양도의 등기는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5조에 따라 지분을 양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시

- ① 신청서
- ② 변경결의서 또는 결정서
- ③ 법정대표인이 체결한 정관수정안
- ④ 비준증서
- ⑤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때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관에서 기한부 등기를 명하고 기한이 지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동 조례 제73조).

위 사안의 경우 지분양도에 따른 비준절차를 거쳐 법인등기 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양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분양도에 따른 계약서만 작성하고 비준,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씨는 운영 중인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100%를 양모씨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쌍방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양씨는 김씨에게 지분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동시에 쌍방은 회사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계 후 양씨가 회사에 대한 주주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날인한 지분변경신청서와 회사 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경우 우선 상무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공상관리국에 투자자 지분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무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지분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날인 즉시 계약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법적 효력은 상무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유동적 무효(效力等待)’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8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동적 무효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효력의 발생을 위해 해당 인허가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해당 인허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1) 제6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관련 지분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인허가수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 및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원을 제소하여 기한 내 인허가수속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양씨는 김씨가 날인한 지분변경신청서와 이 사회의 결의서가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여 주주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A-41

### 지분양도후 발견된 채무에 대한 책임

김씨는 외자기업인 A사를 운영하다 개인 사정상 회사의 지분을 임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인 임씨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실사를 한 후, 김씨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양도계약서상에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채무명세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인수 후 반년이 지나서 임씨가 계약 당시에 몰랐던 채무가 발견되었으며 회사장부상에도 상당한 결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임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지분양도시에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에 근거하여 지분양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직접 연관되므로 대상 회사의 채무금액에 따라서 지분의 가치 즉 지분양도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지분양도계약 체결시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실사 확인 및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 지분인수 후 채무명세표상에 없는 채무(지분인수전의 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양수인은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인에게 양도대금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쌍방이 지분양도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아, 향후 우발채무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양수인인 임씨는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분양도시 우발채무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계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채무기준일을 정함: 채무기준일은 지분양도 전후 대상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관한 분계선이며 채무기준일까지 대상회사의 재무상황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인수시점은 채무기준일과 가까운 것이 적절하며, 만약 채무기준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전 양도인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해당 제한사항을 지분양도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② 채무기준일 당시의 대상 회사의 채무명세표를 작성하여 지분양도계약서에 첨부하고, 별도로 '지분양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명세표 이외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분양도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인이 별도로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매각 후 명의 미변경시의 책임



약 10여년간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배사장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지분을 손모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수인인 손모씨가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법통칙 및 기업법인등기조례(企業法人登記條例)에 의하면 법인이 어떤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대표는 벌금, 행정처분, 출입국 금지 등 일정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고 소유자 명의변경 및 법인대표 명의변경을 즉시 하여야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 위임절차

중국 지사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 대리권 관련 위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는 우선 한국에서 중국지사에 대한 위임장(수권위탁서)을 작성하여 공증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직접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국문으로 작성 후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한국외교통상부 영사과에 당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외교통상부 확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당해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본사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인증 후 당해 위임장 원본을 중국지사에 송부하면 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시 제출서류는 1)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3)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및 사본 1부 등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시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에 중문 또는 영문본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위임장 작성과 공증 및 한국외교통상부의 인증 관련 사항은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44

## 생산공장의 확장

기존에 있던 생산현장이 과포화 상태여서 다른 곳에 생산공장을 확장하려 하는데 기존 영업집조상에 새로운 주소만 추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집조를 2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자회사란 회사 주소지 외에 설립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하는 바, 생산현장(경영장소)를 증설하여 생산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자회사를 설립하여 별도의 영업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회사의 영업집조상에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시의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업집조의 연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1년마다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든 회사에 대하여 연도검사(年度檢驗)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회사등기관리조례 제59조), 연검은 바로 연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연검이 시작되면 모든 기업은 회사의 재무보고서 및 영업집조 부분과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연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 60조).

공상행정관리국은

- ① 기업명칭 사용
- ② 주소지
- ③ 법정대표의 변경
- ④ 자본납입
- ⑤ 기업의 형태 변경
- ⑥ 경영범위 준수
- ⑦ 영업집조의 위조, 변경, 임대
- ⑧ 8개월 이상 휴업 여부



⑨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연검을 통과한 기업은 A급(공상행정관리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한 기업)과 B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A, B급의 등급을 영업집조에 부착하게 됩니다.

만일 연검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검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업집조를 직권말소시키게 됩니다(동 조례 제76조).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된 기업은 3년간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제21조) 동 회사의 법정대표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기업법인 법정대표자 등기관리규정(企业法人法定代表人登记管理规定) 제4조 제6호).



A-46

영업집조의 말소

현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영업집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영업집조를 말소할 때 직권말소와 등기말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권말소(吊銷)는 회사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이 법규에 따라 회사의 법인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처벌에 해당하며, 한국의 취소, 철회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등기말소(注冊)는 법률의 말소조건 또는 회사의 특수한 상황 등의 이유로 회사가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채권, 채무 정리 및 관련 행정기관의 말소절차를 거쳐 청산의 절차로 영업집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되면 동일한 기업명칭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제21조) 동 회사의 법정대표는 3년 동안 타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기업법인 법정대표자 등기관리규정 제4조 제6호).



## A-47

### 상호의 보호

A는 북경에서 ‘갑을 양복점’이란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복점 업자인 B가 A의 상호가 아직登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내어 재빨리登記하고 인근에 같은 이름의 양복점을 내었습니다. A는 B에게 항의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의 미登記 상호의 사용권과 B의登記상호의 전용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A는 지금부터라도登記하려고 하지만 ‘갑을 양복점’이란 상호는 B에 의해 이미登記되어 있습니다. 기업명칭登記관리규정 제6조는 ‘기업은 1개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고,登記기관 관할 내에 이미登記한 유사 또는 동종 영업을의 기업명칭은登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같은 이름의 상호를登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A는 B가 상호를登記하기 전부터 이미 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제23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음을 증명하여 B의 상





호사용 폐지와 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하여 B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면 ‘갑을 양복점’의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기업공시제도의 일환으로 상인의 기업내부사정이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A-48

상표의 보호

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다른 제 3자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기업 B가 홍콩의 ‘한국크라운유한회사(홍콩법상 외국의 국가명도 상호로 등록이 가능함)’와 상표사용권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A의 한국회사 제품을 독점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각국의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중국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고 등록이 되면 법률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상표법(商標法) 제51조).

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여러 해 동안 사용하여 유명하게 된 상표도 이와 같이 보호를 받습니다(동법 제13조,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 제4조 제2항).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출원등록한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기, 등록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그 상호나 상표를 중국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국기업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홍콩의 특수한 법률(국가명, 지명 등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계약관계를 통해 ‘크라운’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위 사안은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등록하지 않았고 또한 상호를登記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21조나 부당경쟁법(不正當競爭法) 제9조를 적용하여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하자를 이용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A-49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책임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짜리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실령 위와 같은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액수도 알 수 없었는데 A는 B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한국의 경우 목욕탕, 미용실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에는 많은 손님이 출입하기 때문에 손님 소지품의 안전과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위하여 경영자인 공중접객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판례를 보면 ‘목욕탕에서 무료로 손님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유상보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중접객업소는 손님의 재산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合同法) 제374조에 따라 보관자가 보관기간 내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 무상보관인 경우에는 보관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중접객업소에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을 수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A-50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출조건**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투자 부동산개발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부동산 개발회사(외상투자기업)가 국내외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즉

- ① 등록자본금 완납,
- ② 국유토지사용증 취득,
- ③ 개발항목 자본금이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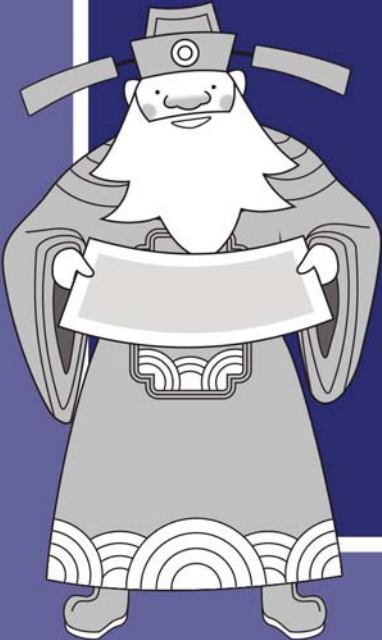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2조 제7항).

따라서 부동산 개발회사(외상투자기업)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증 취득뿐만 아니라 위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각 은행별, 지역별로 대출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그 지역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Section-B

## 기업 세무





## B- 1

## 세금의 종류

##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국세, 지방세)를 한 후, 총수입에서 생산원가, 비용, 손실 등을 뺀 후 이익이 있으면 모든 사업자는 기업소득세(20%, 25%)를 내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 제4조). 주요 사업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B 자료1] 사업형태에 따른 세금유형

사업형태	세 목	세 율
물건 판매 또는 수입자	증치세(增值税)	0%, 13%, 17%
소비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	소비세(消费税)	1%~45%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	3%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자	영업세(营业税)	3%, 5%, 5~20%
사업자가 건물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	방산세(房产税)	12% (건물재산 평가가액) 12% (임대료수입)
사업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권 취득자	계세(契稅)	3~5%
수출입자	관세	수출입 품목에 따라 다름





위 표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B-2

## 세무등기제도

## 중국에서 세무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등기제도란 세법에 따라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설립(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30일 이내)·변경·종료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기를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은 상호(企业名称)를 등록한 날로부터 약 1.5개월이 되면 비준증서, 사업자등록증, 도장, 기업코드번호증서(组织机构代码证)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 문건들을 수령한 후

- ① 지방섭외세무국에 가서 세무등기증을 신청 발급 받고,
- ② 3일 내에 지방섭외세무국과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여 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지방세: 매월)를 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 ③ 그리고 출자금이 납입된 후에 국가세무국과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여 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국세:분기별)를 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

세무등기 신청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무관리등기판법(税务管理登记办法) 제13조).



- ①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복사본
- ② 기업코드번호증서(组织机构代码证) 복사본
- ③ 비준증서 복사본
- ④ 회사 정관(章程) 복사본(합자, 합작일 경우 계약서 사본요함)
- ⑤ 임대계약서(계약서상의 임대기간에 매월 임대료를 합한 총액의 0.1%의 인지세 납부), 임대영수증(건물주가 납부한 방산세 5%, 12% 영수증)
- ⑥ 법인대표 여권사본
- ⑦ 세무등기표(비치양식에 한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때에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때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및 거래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클레임 또는 비용손실을 입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업종에 따라 그 소요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 제때에 세무신고를 하지 못해 영수증 발행이나 거래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절차 및 소요일자 등은 베이징시 기준입니다.



B-3

## 세금계산서의 구매와 발행

### 세금계산서의 구매, 발행,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세무등기증 및 신분증명과 국무원 세무관련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전용인장의 인영을 가지고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영업범위와 규모 등에 따라 구매할 세금계산서의 종류, 수량 및 구매방식을 확정하고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구매부를 발급하게 됩니다(세금계산서 관리관법(发票管理办法) 제15조).

일반적인 지방세 세금계산서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무기관이 지정한 **세공상(稅控商)**에게 **세공기(稅控器)**를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거쳐 세금계산서 장비를 설치해주고, IC카드를 줍니다.

② 지방세무국에 구매카드를 신청하면 비준 후 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매번 세금계산서를 구매할 경우에는 법인도장, 재무도장, 세무등기증 부분, 구매카드를 지참하고 등기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에 해당하는 세목의 세금계산서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세금계산서(소규모납세자)

① 세무등기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국에서 세금계산서 구매신청표를 제출합니다.

② 비준서, 신청인 신분증, 세무등기증 부분, 재무도장, 법인도장 등을 지참하고 세금계산서 구매부를 수령합니다.

③ 재무도장, 세무등기증 부분, 신청인 신분증, 세금계산서 구매부 등을 지참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구매합니다.

-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일반납세자)

① 세무등기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국에서 세금계산서 구매신청표와 세무등기증 부분(일반납세자 도장날인)을 제출합니다.

② 비준서, 신청인 신분증, 세무등기증 부분, 재무도장, 법인도장 등을 지참하고 세금계산서 구매부를 수령합니다.

③ 회계원이 일반납세자 교육을 받고, 지정된 세공상에게 세공기를 신청한 후 세금계산서 장비를 설치합니다. 장비 설치시 IC 카드를 주는데 이는 영수증 발급데이터를 내장한 카드로 매월 세무기관에 동 카드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 재무도장, 세무등기증 부분, 신청인 신분증, 세무계산서 구매부에 정한 표면금액, 수량, 구입방식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전용 세금계산서를 구매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에 소요되는 일자는 각 관할 세무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세무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B-4

## 개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개인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느냐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절차를 두어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베이징인 경우에는 개인이 세무기관에 5%의 세금(방산세 4.5%, 개인소득세 0.5%)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서, 건물권리등기증, 신분증 복사본 등을 제시하면 세무기관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사업장은 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초기에 세금계산서 문제를 언급하고 발급

해 줄 수 없다면 임대료 인하 또는 임대계약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  
세  
무



## B-5

## 납세신고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납세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원천징수납세신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稅收徵收管理法) 제25조).

납세신고(지방세, 국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IC카드(국세), CA증서(지방세)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사항의 내용과 IC카드, CA증서를 지참하여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 또는 신고사항이 극히 적은 기업인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중대형 기업은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국에서도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위의 납세신고방법에 따라 반드시



납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稅收徵收管理法實施細則) 제32조).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2,000 위안 ~ 10,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2조)를 물게 됩니다.





B- 6

납세연기제도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滯納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繳納稅款制度)**를 활용하여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으나(세금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딱 2가지입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41조).

그 사유는

①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② 지급하여야 할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를 낸 후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7

세무조사

세무국은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혐의자인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은 **현급(县级)**이상의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조세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구(区)가 있는 시·자치주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사건혐의자의 저축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세무기관은 세무검사(세금징수관리법 제54조)를 할 때, 관련자에 대하여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납세 또는 원천징수액과 관련한 정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고, 관련자는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관련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동법 제57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세무 기관에 협조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B-8

조세징수제도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 또는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임시로 사업을 한 경우 정항별·시간별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세무기관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 후 세금납부를 명합니다.

② 만약 그 명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상품·화물을 압류합니다.

③ 세무기관이 상품·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화물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④ 압류 후 납세자가 세금을 낸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화물을 반환합니다.

⑤ 압류 후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급(县级)**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압류물품을 **경매(拍賣)** 또는 임



의매각(變賣)하고 그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37조,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8조).

이처럼 미등기 또는 임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위와 같은 특별 규정에 의해 행정적인 처벌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B-9

가산금 계산법

체납한 세액이 30만 위안인데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26,700 위안의 가산금(滯納金)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text{가산금 계산공식} = \text{체납세액} \times \text{체납일수} \times 0.05\%$$

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납기일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위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 ① 조세채무가 이미 발생하였고,
- ② 조세채무의 납세기한이 이미 경과(178일)하였으며,
- ③ 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위의 조건에 부합되므로 세금체납일로부터 1일당 0.05%의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32조).

$$\text{가산금} = 30\text{만 위안} \times 178\text{일} \times 0.05\%$$

$$\text{가산금} = 26,700\text{ 위안}$$

## 세금채납자 출국제한



중국 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채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세금채납이란 납세자가 세법으로 정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세금채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법률제도(출국제한, 채납상황공고, 거액채납자의 재산처분보고제도, 세무기관의 대위권과 취소권 등)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출국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채납한 납세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44조).

따라서 세금을 채납한 법인의 법정대표자와 책임자는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B-11

조세우대혜택 세목 및 세율

자동차 부품회사는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자동차 부품회사가 세금 우대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 회사가 설립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15%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받게 되고(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정 관리관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제2조 및 제9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② 위 회사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상의 장려산업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은 수입관세, 수입증치세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③ 또 위 회사가 기술양도 또는 기술개발 수입을 한다면 영업세 면세의 조세우대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B 자료2] 조세우대 혜택 세목 및 세율, 조건

세목	우대혜택세율	조건
기업소득세	15%	첨단기술산업
영업세	0	기술양도, 기술개발 수입 산업
수입관세	0	장려항목산업





다만 현행 세법은 기업소득세 및 영업세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진출하신 분들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첨단기술기업 또는 장려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세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B-12

**보조비의 개인소득세 면세**

한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세 항목인가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의 임금이 책정되면 그 임금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친척방문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액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보조비는 세무처리상 급여로 처리하고, 개인소득세에서는 비과세 급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14%의 한도적용을 받지만 위 보조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므로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제항목들을 체크하신 후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비교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 지방 세무당국의 상황에 따라 징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市维护建设税)와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税)가 있습니다.

전자인 도시건설유지보호세는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정목적세로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위 세금들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후자인 교육비부가세는 지방교육을 신속히 발전시키고, 지방교육 경비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부가세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0년 10월 내외자 기업 및 개인의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부가세 통일에 대한 통지(关于统一内外资企业和个人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制度的通知)를 발표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위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 개인의 면세혜택을 철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도 내국인 또는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B-14

## 상호등기와 비용처리

## 상호(企业名称) 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호등기(企业名称登记)란 상호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판법(企业名称登记管理实施办法) 제1조, 제3조).

상호등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즉, 상호예비비준신청서(名称预先核准申请书) 공란에 기재한 후 외국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는 약 2일 정도 소요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동 판법 제28조).

상호등기부터 자본금 계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출장비, 숙식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사무기기 등)은 그 상호명으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비용(창업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하여 중국에서는 창업비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한국본사에서는 중국법인 등록자본금으로 처리하지 못해 곤란에 빠지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상호등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비용을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예비비준을 받아 임시자본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하는 것이 향후 자본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 창업비는 개업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생산경영을 시작한 날(시험생산 포함)까지 발생한 비용을 말함(国税发 제165호).



B-15

로열티와 비용처리

상표출원을 하고 계약을 통해 매출액의 5% 정도를 로열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상표출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 ① 중국에서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하려면 중국에 살아야 한다거나(주소),
- ② 회사나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 ③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했으면 됐지, 중국에서 왜 또 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상표출원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 타인이 해당 상표를 선점하여 중국 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상표출원을 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표대리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표법 제18조).

상표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선 지정 상표대리기관에 가서,
- ② 신청인(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성명·주소, 상표도안 및 보호받고자 하는 업종 및 서비스 분야만을 제출하시면



③ 약 3년후에 상표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 후 3년 후에나 한국본사(또는 개인)와 중국 법인간에 로열티 계약을 하여 매출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으로 과실송금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출원자(한국본사)와 상표이용자(중국 자회사)가 관계회사인 경우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가 매출액의 5%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로열티 및 로열티 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국에서 세무조사시 증점조사를 통해 비용을 부인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기 이전이나 중국에 진출하는 그 시점에 즉시 상표를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 비용처리 방법이 외에도

① 상표세관등기를 통해 중국의 총 130여개의 세관에서 그 상표의 소유권자(사용권자 포함)가 아닌 제3자가 수출입하는 것을 통제 해주거나,

② 무형자산의 이전,

③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 B-16

## 접대비와 비용처리

회사 판매수입의 약 20%를 접대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접대비(业务招待费)란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교제, 응대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접대비의 경우 그 발생액의 6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당해연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접대비로 지출한 판매수입의 20%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8%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제대상인 나머지 12% 중에서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가 1만 위안이고, 당해연도 매출액이 100만 위안 일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공제비용} = 1\text{만 위안} \times 60\% = 6,000 \text{ 위안}$$

$$1\text{만 위안} \times 0.5\% = 5,000 \text{ 위안}$$

여기서 공제대상인 6,000 위안 중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1,000 위안은 접대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가능한 금액은 5,000 위안입니다.





한국인 행사에 50만 위안을 찬조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광고성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모든 기업은 원가, 비용, 세금,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고 아울러 그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은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8조).

기업이 지급하고 조건에 부합한 광고비와 선전비는 판매수입의 15%까지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영수증이나 일정한 매체를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찬조비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각종 비광고성 지출에 해당되는 바(기업소득세법 제54조), 벌금, 과태료 등과 함께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찬조비가 외견상 공익성을 갖는 찬조라고 하더라도 중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찬조지출로 할 것인지, 일반적인 비광고성 지출인 찬조비 형태로 지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비용공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비와 선전비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증빙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B-18

##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급여 총액의 5%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2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한 직원교육비는 임금급여 총액의 2.5%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직원교육비로 지출한 임금급여 총액의 5% 중에서 2.5%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는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과 회계제도가 일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법과 회계제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회계처리를 할 때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세무를 신고납부할 때는 세법규정과 회계제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상 과세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규정을 찾아보거나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동에서 배추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기업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론상으로 기업의 모든 소득은 과세를 하여야 하나, 법률은 종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두 가지 형식이 바로 면세와 감면입니다.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6조에 따르면 기업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중

- ① 채소, 곡물, 과일, 견과의 재배,
- ② 농작물 신품종의 재배,
- ③ 중국 약재의 재배,
- ④ 임목의 재배,
- ⑤ 목축, 가금의 사육,
- ⑥ 임산품의 채집,
- ⑦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서비스 항목, 즉 수의사, 농기계작업, 수리 등
- ⑧ 원양어로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이므로 기업소득세가 면세된다 할 것입니다.



B-20

## 기업의 배당소득세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지 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현지 법인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윤을 분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법인이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 있어 동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동 협정에 따라 협지 법인에 대하여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은 이익금을 송금받을 때 최고 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외의 법인 및 개인 투자자는 최고 1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최장 5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결손이 된 경우 동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다음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18조).

최근 중국의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외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점이 결손을 하는 경우 중국의 국내기업은 중국외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결손의 이월보전은 과세소득액의 공제계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는 결손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B-22

## 기업청산시 기업소득세

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기업은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고 소관부처인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세무등기말소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 또는 거래한 가격에서 자산의 순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금과 수수료비용 등을 뺀 후의 잔액을 가리킵니다.

기업은 말소등기 전에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z 제11조).

따라서 외국의 투자회사가 청산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잉여자산 중 청산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이나 적립금으로부터 배당된 것이 있다면 주식배당금수입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청산기업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동 금액들은 세무상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가요?

중국에서 개인이 임직, 고용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 보너스, 보조금 등은 급여항목이 맞지만,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급하는 파견수당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따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4조에서는 ‘합리적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급여’란 기업이 주주총회, 이사회, 급여위원회 또는 관련 관리기구가 제정한 급여제도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를 말합니다.

세무기관은 급여에 대한 합리성 유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기업 임금 및 직원 복지비용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工资薪金及职工福利费扣除问题的通知)).

- ① 기업이 비교적 규범적인 직원급여제도를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기업이 제정한 급여제도가 해당 업종 및 지역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③ 기업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우, 급



기업  
세  
무

여 조정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④ 기업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⑤ 급여와 관련된 조치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한국기업이 중국내 자회사 또는 대표처에서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나요? 반대로 중국 자회사 또는 대표처가 부담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공제가 가능한가요?

한국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근로자의 한국법인이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업무연관성)에 따라 비용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또한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도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동 시행령 제3조) 한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파견 근로자가 183일 이상을 중국에 체류하였다면 과세되며, 183일 미만이라면 국외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기업소득세법**상 중국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대납한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은 중국기업의 복리후생비의 항목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매출액의 14%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중국 세법상의 보충양로보험비 및 보충의료보험비 등으로 승인받는 경우에는 국무원, 재정·세무 주무부처가 규정하는 공제 한도내에서 비용 산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5조**), 소재지 관할 성 및 세무국의 규정에 따라 보충양로보험비 및 보충의료보험비 한도 내에서만 복리비로 인정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장금 영화필름원본을 CCTV8에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내야 하나요

증치세의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增值税若干具体问题的规定) 제1조 제6호에 의하면 저작권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 ① 영화필름원본,
- ② 비디오테이프 원본,
- ③ 음향테이프원본의 판매인 경우

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기술과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판매인 경우에도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 영화사가 필름원본을 임대하는 형태로 영화필름 방영권을 일정기간 영화사에 양도하는 행위는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하므로 영업세(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关于营业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 제2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 ① 건설사가 건축현장에서 제조한 조립식 부품을 직접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② 관개를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업  
세  
무

③ 제조를 위해 공장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등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17%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은 증치세 납세자를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소재지의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인정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납세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증치세잠정조례 제12조).

일반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팔다 보면 상대방이 17%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업체나 판매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립초기부터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정여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설립시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① 등록자본금 기준(제조업: 100만 위안 이상, 유통업: 500만 위안 이상)

② 직원수(판매업: 8명 이상),

③ 사무실 규모(판매업: 100m<sup>2</sup> 이상)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설립 후 매출액을 올려서 일반납세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① 생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 혹은 용역제공을 주로 하며 도, 소매를 동시에 겸업하는 자가 연간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자

② 위 납세자 이외의 연간매출액이 80만 위안 이상인 자 이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납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규모를 가진 자는 일반납세자를 신청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중국은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납세의무자(부가가치증가액의 17%)와 소규모 납세의무자(매출총액의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여부입니다. 즉, 일반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소규모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이 나올 것이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일반납세자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잔여액이 일반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증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초기에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소규모 납세자는 회사설립 후에 매출액을 올려서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는 조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일반납세의무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생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 혹은 용역제공을 주



기  
업  
세  
무

로 하며, 도·소매를 동시에 겸업하는 자가 연간 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자

② 위 납세자 이외의 연간 매출액이 80만 위안 이상인 자입니다.





##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한도

중국회사에서 1,280만 위안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증치세 세금계산서 최고발행한도액이란 세금계산서 1장에 기입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가리킵니다. 세금계산서 최고발행한도액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심사비준합니다. 세금계산서 최고발행한도액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해당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합니다(증치세 세금계산서 사용 규정(增値稅專用發票使用規定) 제5조).

### [B 자료3] 증치세 세금계산서 최고발행한도

최고발행한도액	소관부처(심사 비준)
10만 위안 이하	区, 县级세무기관 현장실사 후 심사비준
10만 위안~100만 위안 이하	地, 市级 세무기관 현장실사 후 심사비준
100만 위안~1,000만 위안,	地, 市级 세무기관이 현장 실사 후
1,000만 위안 이상	省级 세무기관 심사비준

\*지급시(地级市)란 성과 현 중간위치의 규모를 가진 市를 말합니다. 지급시는 현을 관할하는 것(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됨)도 있고, 현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로 나뉘는데 区를 설치하고 있는 곳(하문시, 심천시, 주해시, 무한시, 불산시 등)과 区를 설치하지 아니한 곳(동관시, 중산시, 해남도에 있는 삼아시, 가곡관시 등 4곳)이 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00만 위안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급 세무기관이 현장에 실사를 나온 후 그 실사 자료를 근거로 성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납세자가 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으면 최고발행한도액을 1,000만 위안 이상인 1억 위안(최고발행한도액 신청표에 선택사양으로 나와 있는 액수임)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세금계산서가 믿음이 안 가시면 그 신청이 비준이 되면 그 신청서상에 각 세무기관의 의견과 서명을 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치세 환급 신청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받으려 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환급신청은 90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출물에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증치세 환급제도는 각국에서 고용하는 조세원칙입니다. 중국은 증치세 징수관리수준은 낮으나 비교적 많은 조세우대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하여 탈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2002년에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에 관한 엄격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关于进一步推进出口货物实行免抵退税办法的通知).

이에 따르면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 ① 반드시 부가가치세(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속할 것,
  - ②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것,
  - ③ 회계처리상 판매로 처리된 것,
  - ④ 반드시 외환으로 받고 아울러 수출심사를 받은 것
- 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화물수출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환급세 신청 시,

- ① 수출화물 환급(면세) 정식 신청 전자데이터
- ② 수출화물 구입 증치세 영수증 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할 신청서
- ③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세관 도장 날인)
- ④ 수출검사서(核销书)(외환관리국 날인, 180일 내에 동 서류의 제출을 비준한 경우, 규정한 시점에 제출 가능함) 또는 장기 외화수금증명서

⑤ 소비세 납세증명서 또는 수출화물 세금완납분할서

등 자료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특수 원인으로 규정 기한 내에 관련 수출환급세 서류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연기신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수출일로부터 90일 내에 위 서류들을 준비 완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출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거나, 90일내에 위 서류들을 준비 완료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여 수출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관할 세무기관과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한 화장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30%의 소비세를 납부하고(소비세 잠정조례(消費稅暫行條例) 소비세 세목세율표(消費稅稅目稅率表)<sup>3)</sup>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세관에 신고 납부합니다. 수입한 화장품의 소비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 납세자가 화장품을 수입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금납부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언더벨류(Under value) 등의 형태로 물품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수입국의 세관에서 관세 등의 제세납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세관은 이미 결정된 관세계산을 위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세관이 결정한 관세계산을 위한 가격이 100만 위안이고 10만 위안의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화장품의 소비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세무

$$\textcircled{1} \text{ 세금계산 구성가격} = (100\text{만} + 10\text{만}) \div (1 - 30\%) = 157\text{만 위안}$$

$$\textcircled{2} \text{ 소비세 납부세액} = 157.14285 \times 30\% = 47\text{만 위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언더벨류(Under value)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자금회수의 어려움, 탈세죄, 외환관리법, 이전가격 등의 많은 법적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과세소비품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출경영권이 있는 수출기업이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다른 수출기업의 위탁을 받아 대리 수출한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은 수출신고를 할 때 이미 생산단계 또는 위탁단계에서 징수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한 상품이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일 때 증치세의 환급은 증치세 세율(0%, 13%, 17%)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을 각 품목별 환급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나, 소비세의 환급은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 5%)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비세 세율(3~45%, 0.1 위안~240 위안/매 징수단위당)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비세 환급세액(종가에 속하는 젓가락 등) =

수출제품공장의 판매액 × 각 소비품의 세율

○소비세 환급세액(종량에 속하는 술 등) =

수출수량 × 매 징수 단위당 세액



기업  
세  
무

따라서 수출환급절차를 하는 기업은 다른 세율 또는 세액기준을 적용하는 소비품을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세무기관은 낮은 세율 또는 세액부터 적용하여 환급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한국 상표 'OBBA'를 중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인 중국인으로부터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나요?

원천징수됩니다.

무형자산(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경영기구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무형자산을 중국 내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영업세 5%에 해당하는 업종은

- ① 서비스업(식당, 커피점, 미용실 등)
- ② 금융보험업
- ③ 불링장
- ④ 당구장 그리고 무형자산

의 양도와 부동산의 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영업세의 몇 가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营业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 제2조 제1항).



B-33

인지세와 매매계약서

한달에 2~3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업체인데 인지세에 해당하는 3/10,00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무슨 세금을 내나요?

매매금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작성, 사용, 수취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징수합니다. 이 문건의 종류는

- ① 매매계약서(3/10,000)
- ② 가공도급계약서(5/10,000)
- ③ 건설공사탐사설계계약서(5/10,000)
- ④ 건축설비공사도급계약서(3/10,000)
- ⑤ 재산임대계약서(1/1,000)
- ⑥ 화물운수계약서(5/10,000)
- ⑦ 창고보관계약서(1/10,000)
- ⑧ 대여계약서(0.5/10,000)
- ⑨ 재산보험계약서(0.3/10,000)
- ⑩ 기술계약서(3/10,000)⑪재산권이전문서(5/10,000)
- ⑫ 영업장부(자금이 기재된 장부: 5/10,000 / 기타 장부 5 위안/건당)
- ⑬ 권리, 허가증서(5 위안/건당) 등



13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5 위안/건당을 납부하고, 세무등기를 할 때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지세의 계산방식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10년이고 1년 임대료가 20만 위안인 경우,

$10년 \times 20만 위안 \times 0.1\%(세율) = 2,000 위안$ 의 인지를 은행 또는 관할 세무국에서 구입하여 계약서 첫 페이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세무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관부처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위 13가지 문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적게 붙인 경우 또는 이미 인지가 첨부된 문서상의 인지를 말소하지 않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 가산금을 추징하고 아울러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과세액은 적으나 간단한 세무조사시 인지세 미납이 쉽게 적발되어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및 가산세를 감안한다면 법에 따라서 인지세를 성실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34

계세의 면세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해도 계세(契稅)를 내야 하나요?

중국의 계세는 재산권취득자 즉

① 토지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② 건물을 사는 경우, ③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④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등 부동산의 이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이 계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은 변동(기업합병, 기업분할, 기업매각, 파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업의 변동사항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기업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특별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변동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기업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企业改制重组若干契稅政策的通知)).

① 기업합병의 경우, 합병 후의 기업이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

② 기업분할의 경우, 분리되거나 새로 신설된 기업이 원래 기업의 토지, 주택권리를 인수한 경우



③ 국유, 집단기업의 매각으로 매각된 회사가 말소되고, 매수인이 원래 기업의 30%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그가 매입한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50% 감면해 주고, 원래 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 승계한 경우에는 100% 면세

④ 파산 후 채권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여 채무에 충당한 경우 등입니다.



B-35

## 합자기업의 계세

합자기업을 설립하는데 중국측이 땅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측은 계세를 내야 하므로 50만 위안을 달라고 합니다. 쥐야 하나요?

주주는 현금,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양도가 가능한 비현금 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측이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방이 토지를 평가하여 주주로 투자하거나 공동경영할 기업을 양도할 때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세해 줍니다. 그리고 주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명의를 합자기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측이 토지의 권리로 투자 또는 주주가 되는 경우 재산권의 이전에 속하고, 국가의 부동산관리규정에 따라 회사명의로 재산권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토지사용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계세(契稅)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측에게 계세 명목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지분권 확보시의 계세



김씨가 남경에 투자한 미성회사를 3,000만 위안에 최씨에게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최씨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도 함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 행위도 재산권취득행위로 보고 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통상 계세의 세율은 3%~5%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각 지방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양도 행위로 인해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지분권이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분양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더라도 주주로서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씨는 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위 회사로부터 별도로 상기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B-37

## 도시토지사용세

북경에 2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임차하였습니다. 도시 토지사용세로 매년 198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도시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대상인 토지는 도시(城市), 현 소재지(县城), 건제진(建制镇), 공업광산구(工矿区) 범위 내의 국가소유 및 집단소유의 토지가 포함됩니다(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제2조).

## [B 자료4] 도시토지사용세 세율

지역별	세율	비고
대도시	15~30 위안/m <sup>2</sup>	인구 50만명 이상
중도시	12~24 위안/m <sup>2</sup>	인구 20만명 ~ 50만명
소도시	09~18 위안/m <sup>2</sup>	인구 20만명 이하
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06~12 위안/m <sup>2</sup>	

\* 건제진(建制镇): 중국의 행정단위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구획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 ① 지역은 북경(대도시)이고,





② 공장부지가 2만평( $66,116\text{m}^2$ )이며,

③ 도시토지사용료가 198만 위안인 것으로 추정하였을 때,  $\text{m}^2$  당 최고 30 위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66,116\text{m}^2 \times 30$  위안 = 1,983,480 위안).

위 조례에 의하면 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원칙이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의 소재지에 없을 경우 토지의 실제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에 공장부지를 임차할 경우 도시토지사용세 지급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엄청난 세금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계약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방안에 대한 적절성은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B-38

## 건물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저당잡힌 외국기업이 건물재산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재산세(房产税)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물재산세란 건물자산을 과세대상으로 건물재산의 평가가치 또는 건물재산의 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1년 단위로 징수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건물재산세의 세율은 건물재산의 평가가액<취득가액×(1-공제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1.2%이고, 건물재산의 임대료 수입에 따라 건물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12%(개인일 경우, 종합징수율 적용)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재산권을 저당잡힌 경우에는 **저당권자(承典人)**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저당권자란 보증금 형식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재산권을 저당잡히는 것은 재산권의 소유자(出典人, **저당권 설정자**)가 재산권을 일정기간 저당권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건물재산 소재지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재산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자가 대리 납세하게 됩니다(건물재산세 잠정조례(房产税暂行条例) 제2조).



## 공장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준 경우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하나요?

법인이 불필요한 공장부지 중 일부를 임대하면 기업소득세, 영업세, 방산세, 인지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면세시켜 주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취소되었습니다.

위 기업소득세는 일부를 임대해 주고 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수입에서 생산원가, 비용, 손실 등을 뺀 후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B 자료] 공장부지 임대관련 세금

세목	세율	세액 계산공식	비고
기업소득세	25%	(수입 - 지출) × 25%	이익발생 시에만 적용됨
영업세	5%	임대료 × 5%	
방산세	12%	임대료 × 12%	
인지세	1% <sup>o</sup>	총 임대금액* × 1% <sup>o</sup>	
도시건설유지보호세	7%	영업세 세액을 과세표준	
교육비부가세	3%	상동	

\* 총임대금액이라 함은 임대계약서상 나타난 금액, 즉 년임대료 × 임대 연수금액입니다.



위 표와 같이 사업 초기에 공장부지를 여유있게 임차하였다가 최근에 그 짜투리땅을 재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분들이 원 계약서상의 전대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부지를 재임대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등의 문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의 제품판매 세금



화장품 생산업체입니다. 화장품 판매시 세금이 57%라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화장품 생산회사가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기업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가 면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외상투자기업도 위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소득세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 [B 자료6] 제조업체의 판매세율

세목	세율	계산공식
증치세	17%(일반납세자) 3%(소규모납세자)	매출액×세율-매입액×세율 매출액×세율
소비세	30%	증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세율
기업소득세	25%	(수입-지출)×세율
도시건설유지보호세	7%, 5%, 1%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세액을 과세표준
교육비부가세	3%	상동



기업  
세  
무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장품 생산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잔액이 남는지의 여부(기업소득세 납세여부),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그 잔여액수(증치세액), 일반납세자인지 소규모 납세자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세목에 따른 세율의 구체적인 총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해당 조사에 대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2009년 1월 8일 반포된 특별납세실시판법(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에 이어 국가세무총국은 2010년 7월 12일 동기자료 검사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同期资料检查的通知)를 반포하여 이전가격 조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요구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여 이전 연도에 이미 입안된 이전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새롭게 제출된 이전가격 동기자료에 대해 검토한 후 이전가격 위험이 큰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여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이미 이전가격 동기자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동기자료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대상 기한은 2008년과 2009년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 10년간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기업은 사전에 10년간의 이윤 수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이전



가격 위험을 평가, 이윤에 영향을 준 특수요소들에 대해 사전 정리를 진행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산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이용하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세무 관련 자료

개인소득세 세율표, 기업소득세 세율표, 증치세 세율표, 영업세 세율표, 소비세 세율표, 개인소득세 납세기한,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증치세 납세기한, 영업세 납세기한, 소비세납세기한

### [B 자료기] 개인소득세 세율표

과세소득액 = 개인이 취득한 수입 - 세법이 제정한 비용공제기준

급수	월 과세소득액	세율(%)
1	0-1,500	3%
2	1,500-4,500	10%
3	4,500-9,000	20%
4	9,000-35,000	25%
5	35,000-55,000	30%
6	55,000-80,000	35%
7	80,000이상	45%



## [B 자료8] 기업소득세 세율표

계산공식: 과세소득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稅收調整) 항목금액

과세대상	세율(%)
거주기업의 중국내의 원천소득	25
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중국내 원천소득	
중국외에서 발생했으나 중국내에 비거주기업이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소득	
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거주기업	10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원천소득	
<b>면세수입</b>	
과세대상	세율(%)
국채이자수입	0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기업간의 주식배당, 이익배당 등 수익성 투자수익	
중국 내의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기업이 거주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해당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주식배당, 이익배당 등 수익성 투자수익	
<b>면세</b>	
과세대상	세율(%)
채소, 곡물, 감자류, 기름류, 콩류, 면화, 마류, 당료, 과일, 견과의 재배	0
농작물 신품종의 선별재배 / 임목의 재배 / 목축, 가금의 사육 / 원양어로	
중국의약재의 재배 / 임산품의 채집 / 관개, 농산품기초가공, 수의사, 농기계작업과 수리 등 농, 임, 목축, 어업서비스 항목	



## [B 자료] 증치세 세율표

계산공식: 납부세액(应纳税額) = 당기 매출세액(销项税額) - 당기 매입세액(进项税額)

일반납세자	
과세대상	세율(%)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아래 열거한 재화 제외)	17
동물류	13
식물류	
곡류 양식, 식용식물기름	
상수도, 스팀, 냉방, 온수, 일산화탄소,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석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 농업용 비닐 파막	
그 외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가공, 수리, 정비를 제공하는 과세 용역	17
소규모납세자	
과세대상	세율(%)
동물류	3
식물류	
곡류 양식, 식용식물기름	
상수도, 스팀, 냉방, 온수, 일산화탄소,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석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 농업용 비닐 파막	
가공, 수리, 정비를 제공하는 과세 용역	
그 외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수출상품 (국무원 특별규정은 예외)	0



### [B 자료10] 영업세 세율표

계산공식: 납부세액 = 영업세 x 세율		
과세대상		세율(%)
교통운송업		3
문화체육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무형자산 양도		5
부동산의 판매 및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오락업	나이트클럽, 노래방, 무도장, 사격장, 수렵장, 경마장, 게임장, 골프장, 오락실, 전자오락실 등의 오락행위	20
	볼링장, 당구장	5



### [B자료11] 소비세 세율표

<b>1. 담배</b>	
갑류 쉐련	45%+0.003원/대
을류 쉐련	30%+0.003원/대
시가	25%
각연초	30%
<b>2. 주류와 알콜</b>	
백주	20%+0.5원/500그램
황주	240원/톤
갑류 맥주	250원/톤
을류 맥주	220원/톤
기타 주류	10%
알코올	5%
<b>3. 화장품</b>	30%
<b>4. 귀중장신구 및 보석</b>	
금은장신구, 비금은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5%
기타 귀중한 장신구와 보석, 옥장신구	10%
<b>5. 폭죽, 화염</b>	15%
<b>6. 완제품석유</b>	
휘발유(유연)	0.28위안/ml
휘발유(무연)	0.20위안/ml
중유	0.10위안/ml
항공석유	0.10위안/ml
시너	0.20위안/ml
용제유	0.20위안/ml
윤활유	0.20위안/ml
연료유	0.10위안/ml
<b>7. 자동차 타이어</b>	3%
<b>8. 오토바이</b>	
실린더 용량이 250ML이하인 경우	3%
실린더 용량이 250ML이상인 경우	10%
<b>9. 승용차</b>	
승용차 실린더 용량, 배기량이 1.0ML, 4.0ML이상인 경우	1~40%
중형상업용 승용차	5%
<b>10. 골프용품</b>	10%
<b>11. 고급수목시계</b>	20%
<b>12. 유람선</b>	10%
<b>13.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b>	5%
<b>14. 나무마루</b>	5%



[B 자료12] 개인소득세 납세기한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자진신고 납세	개인소득세법 제9조	[일반] ★연도별 예납: 매월 종료후 15일 이내 ★분기별예납: 매분기 종료후 7일 이내	★납세자가 두 곳 또는 그 이상에서 취득한 소득: 그 중 한 곳	지방 세무기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자진신고 납세판법	[특수]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 납세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연말에 1회적으로 회사에 대한 ★임차소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1납세연도에 분할하여 임차 경영소득 취득: 매회 취득한 다음달 15일 내 ★중국 외에서 소득 취득: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기타 항목의 소득 취득: 취득한 다음달 15일 이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국 내 호적 소재지 또는 일상 거주지	
원천징수	개인소득세법 제9조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5일 이내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	



### [B 자료13]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매월 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li> <li>★특수: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중결·실제 경영 중결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기업: 기업등기등록지</li> <li>★비거주기업: 기업장소 소재지</li> </ul>	지방세무기관
법령	기업소득세법 제 54조 제55조,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기업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 [B 자료14] 증치세 납세기한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다소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로 정한 경우: 만료일부터 5일 이내</li> <li>★1개월로 정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li> <li>★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액납부 증서를 발급 받은 후 7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li> <li>★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판매 활동이 발생한 곳</li> </ul>	국가세무기관 (수입재화는 세관)
법령	증치세조례 제23조	증치세조례 제22조	증치세조례 제20조



### [B 자료15] 영업세 납세기한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p>[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일, 10일, 15일이 된 경우 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li> <li>★1개월로 된 경우 납세기한은 납세기한이 만료 후 15일 이내</li> </ul> <p>[특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업: 1분기</li> <li>★보험업: 1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관할</li> <li>★세무기관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li> <li>★토지사용권 양도: 토지가 소재한 관할 세무기관</li> <li>★기타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영업시설이 소재한 관할 세무기관</li> <li>★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기관</li> <li>★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토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li> <li>★단위와 개인이 물품, 설비 등 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단위기구 소지지 또는 개인거주지</li> <li>★중국 내에 있는 전신단위가 전신 업무를 제공한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전신 단위기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li> <li>★중국 내의 단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훈련, 정보 및 원거리시험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li> <li>★다른 현(또는 시)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li> <li>★납세자가 도급한 공정이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경계를 넘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li> <li>★각 항공회사 소속 자회사는 자회사 소재관할 세무기관</li> <li>★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구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li> <li>★건축설비공사의 총수급인은 하도급 또는 도급 양도하는 노무발생지 관할 세무기관</li> </ul>	지방 세무기관
법령	영업세조례 제13조	영업세실시세칙 제12조, 영업세의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3])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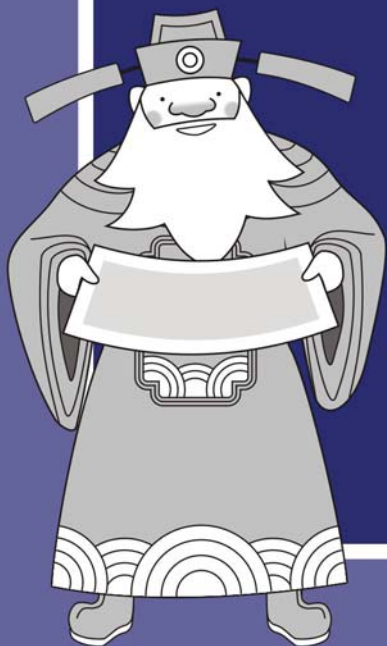


### [B 자료16] 소비세 납세기한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기한이 1일, 3일, 5일, 10일, 15일이 된 경우 :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 납세기한이 1개월, 1계도가 된 경우 :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li> <li>★ 과세소비품을 수입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액납부 증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생산, 자가사용하는 과세 소비품 : 납세자 정산지 관할 세무기관</li> <li>★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 : 수탁자가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li> <li>★ 수입한 과세소비품 :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지 세관</li> <li>★ 과세소비품을 다른 현(시)에서 판매 또는 위탁판매 : 회계처리를 한 곳 또는 소재지</li> <li>★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현(시)에 있지 않을 경우 : 각자의 소재지</li> </ul>	세무기관
법령	소비세조례 14조	소비세조례실시 세칙 25조	소비세조례 12조

# Section-C

## 무역과 관세





저희 회사는 중국에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만 현지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와 상담 중인 중국업체 역시 수입자격이 없어 Alipay라는 결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걱정됩니다.

현재 한중 기업간 무역결제는 대부분 안전한 신용장 거래(L/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업체가 수입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신용장 개설대신 중국 내국법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Alipay라는 결제방식을 제안하는 중국업체도 종종 있습니다. Alipay(支付宝) 결제는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Alipay라는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귀사가 중국에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도 없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중국기업들은 상당수가 수입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있는 회사를 통해 무역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업체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회사는 실거래 당사자는 아니기 때



무  
역  
과  
관  
세

문에 결제대금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거래 당사자인 상대방 회사의 신용도와 지불능력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완성품 수입과 관세부과 여부



저희 회사는 한국 A사의 완성품을 구매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A사가 청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청도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받아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A사의 청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면세혜택을 받아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중국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A사의 제품이 가공무역으로 생산되지 않고 부분품이나 원자재 구입단계에서 수입관세를 모두 납입했다면 완성품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C-3

수입금지품목

저희 회사는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다양한 물품을 중국으로 판매, 수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중국은 2001년 수출금지물품목록(禁止出口货物目录(第一批))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6종의 수입금지물품목록과 5종의 수출금지물품목록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물품 목록에 대한 정보는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나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홈페이지(<http://wms.mofcom.gov.cn/index.s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KOTRA나 무역협회 중국사무소를 통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거나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수출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으로 지게차를 수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게차를 수출할 때에는 별도의 차량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중국은 WTO협정을 준수, 이행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5월 1일부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년 7월 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2조와 제10조에서는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목록(实施强制性产品认证的产品目录)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구의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기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인증표기를 한 후에만 비로소 판매 혹은 수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목록에서는 지게차 역시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시 세관의 검사와는 별도로 사전에 강제인증(CCC)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C- 5

## QS 생산허가증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식품류는 QS 생산허가증을 받아야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QS 생산허가증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식품가공기업(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한 품질안전 관련규정으로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관리감독 실시세칙(食品生产加工企业质量安全监督管理实施细则(试行)), 식품첨가제新品种 관리판법(食品添加剂新品种管理办法) 등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들에 의하면 식품생산 가공기업은 반드시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시설, 가공설비 및 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원료처리 및 가공, 보관 등의 작업장 또는 해당 장소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품의 생산, 유통,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식품품질안정인증(QS(Quality Safety) 인증)이라고 합니다(식품안전법 제29조).

QS 생산허가증 취득절차는

- ① 소재지(성, 시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 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심사를 완료합니다.

③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해 4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단은 현장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합니다.

④ 이후 샘플검사와 추가심의, 국가질검총국 검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식품생산허가증 취득 대상기업으로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재지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6

수입정정

저희 회사는 얼마 전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업체측에 수입정정을 요구했는데 비용도 적지 않게 들며 절차도 복잡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정정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정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정정 및 취소 관리판법(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동 판법 제7조에서는 수출입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① 수출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장, 선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② 외환관리, 국세, 검사검역, 은행 등 관련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③ 과세화물의 세관 전용 납세증명, 외환지불과 수출세금 환급을 위한 수출입 화물 통관신고서의 증명 등 세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다음으로 수입정정시 소요되는 비용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7

세관신고 오류 정정

저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설연휴 전에 급하게 제품을 출하시키려고 하다보니 세관에 신고된 수량보다 실제로 적게 물건이 선적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원칙적으로 포워더와 관세사(報稅員)는 수출물품을 확인하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귀사에서 제시한 장부만 믿고 실물과 대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사에서 원천적인 실수를 하였으므로 포워더나 관세사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포워더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상황에서 세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B/L을 고쳐서 발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관 역시 수출신고서를 수정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이는 한국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사에서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세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일 세관에서 정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회사등급의 하락조정과 향후 세관의 관심집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는 금번 신고를 실수가 아닌 허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귀



무역  
과  
관  
세

사의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거나 회사로 현장조사를 나오는 등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B/L이나 기타 서류를 수정하게 되면 수출입 당사자끼리는 서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수입국 세관이나 양국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 등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해관수책(手冊)상 HS코드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해관에서 HS코드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국내 심가공결전(結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관 수책상 HS코드를 변경해야 하나요?

해관 수책상의 HS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 ① 상대방 세관에서 요구하는 HS코드가 정확한지(귀사에서 틀리게 사용해 왔는지) 확인하고, 정확하다면
- ② 귀사의 관할 세관에 상대방 세관이 제시한 HS 코드로 변경해도 되는지를 문의(관할세관이 예속세관일 경우 직속세관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 ③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S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그 동안 정확하게 사용해 왔고, 상대방 해관이 요구하는 HS코드가 틀렸다면 절대 수책의 HS코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HS코드 변경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S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수출입 실적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동안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세금추징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불량기업으로 등록되어 이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현재 세관 담당자가 세금추징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뀐 후 탄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귀사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수출품의 수입업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패션 액세서리 도소매 및 수입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관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자법인과 외상기업 간에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중국 내 기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액세서리는 일반 주얼리 제품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C 자료1] 모조신변장식품 수입관세율

HS코드	품목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계산단위
		우대	기본		
71171100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35%	130%	17%	Kg
71171900	목걸이, 팔찌, 귀걸이, 브로우치, 반지, 신변장식품 체인, 기타	17%	130%	17%	Kg
71179000	기타	35%	130%	17%	kg



## 무역과 관세

만일 해당 제품을 중국과 협정을 맺지 않은 수입지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홍콩과 같이 중국과 관세 우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덧붙여 관세율에 있어서는 내자기업과 외상기업 간에 차이가 없으며 중국의 수입관세 현황은 중국 해관 홈페이지(<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940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홍삼을 도소매로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향후 중국으로 홍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홍삼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에서는 홍삼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인삼의 ‘기타’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세관에서는 인삼을 서양삼, 야생삼, 기타 생인삼, 기타 건조인삼 등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C자료2] 인삼의 수입관세율

HS코드	품목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계산단위
		우대	기본		
12112010	생 또는 건조 서양삼	7.5%	70%	13%	kg
12112020	생 또는 건조 야생삼	20%	90%	13%	kg
12112091	기타 생인삼	20%	50%	13%	kg
12112099	기타 건조인삼	20%	50%	13%	kg

또한 홍삼제품이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 ① 수입화물통관서(入境貨物通關單)(질량검사총국 발급)
- ② 수입약품통관서(輸入藥品通關單)(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발급)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C-11

## 화장품의 수입관세

저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주문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입 후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립스틱, 아이섀도우, 매니큐어)을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시 절차와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판매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물의 수출입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의 수출입 허가를 담당하는 곳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며, 화장품의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에 신고를 하고 사전에 수출입허가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C 자료3] 화장품의 수입관세율

HS코드	품목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계산단위
		우대	기본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	10%	150%	17%	kg
33042000	눈화장용 제품	10%	150%	17%	kg
330430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15%	150%	17%	kg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임시수입 허가



저희는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지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2개월 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희 제품을 중국에 들여올 수 있겠는지요?

영업집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생산법인의 명의를 이용할 경우 경영범위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해관에서 판단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임시수입(暂时进口)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관세, 증치세의 납세를 보류한 상태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해관에서 임시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시회 참가가 목적이라면 위 임시수입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면 믿을만한 수출입회사를 통하여 일반무역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C-13

관세의 환급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관세의 환급이란 관세 납세자가 세관이 산정한 세액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 세관의 실제 징수액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은 과다 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관법(海關法) 제63조).

환급신청 시, 그 제출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상황설명,
- ② 납세증명서 원본 및 그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세관은 운송하지 않은 화물의 관세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 ④ 상황 조사한 후
- ⑤ 납세자에게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합니다.
- ⑥ 납세자는 환급수속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원인, 즉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은 3가지입니다.

- ① 세관의 잘못된 징수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② 세관의 검사면제로 수입한 화물의 세액을 완납한 후 화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
- ③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이유로 수출 운송이 되지 못하고, 수출철회를 신청한 후 세관이 심사한 결과 사실에 속한 경우 등입니다.



## C-14

### 보세창구이용과 자유무역거래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 지역 간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중국 서남부에서 아세안과 중국 간의 무역을 해 보고 싶은데, 보세항구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보세항구에 대해서

- ① 외국상품은 보세항구 내에서 관세, 증치세를 유보하고
- ② 보세항구 내 반입되는 국내상품은 수출상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 ③ 보세항구 내 기업간 상품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서남부 유일의 보세항구인 **친저우(钦州)** 보세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 ①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해외수출의 중계무역기지로 활용
- ② 친저우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수입배송기지로 활용
- ③ 조달물류기지로서 활용
- ④ 중국산 원부자재 조달의 내료가공무역 형태의 활용
- ⑤ 중국산 자재조달을 이용한 진료가공무역 형태의 활용



⑥ 1차 가공 후 보세항구 내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2차 가공하는 방안

⑦ 가공기업의 불량품, 잉여자재 등을 보세물류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

⑧ 중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보세물류항구 내 물류원구로 수출하여 다시 가공 후 수출하는 방안



C-15

무역분쟁

저희 회사는 중국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본 후 품질이 괜찮아서 선금 5만불을 보내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을 보니 샘플과 전혀 다른 불량품이었습니다. 중국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중국에서는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의 관여 없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쟁처리 관련 조항에 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접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고 주중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중한국대사관 교민지원법률센터(<http://chn.mofat>).



go.kr/korean/as/chn/civil\_appeal/law/index.jsp)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된 서류에 대하여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  
역  
과  
관  
세



## C-16

### 품질보증기간

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 원단으로 제조한 가방을 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가방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바이어로부터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A사로부터 원단을 받았을 때 품질검사 없이 바로 제품생산에 들어갔는데 A사와의 계약서에는 원단 수령 후 10일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계약법 제158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약정한 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품질 이의제기 기간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한은 품질 하자를 발견하거나 마땅히 발견하여야 할 합리적인 기한을 말하는데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품질보증기한이 있다면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자신이 납품한 물건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는 위 2년의 기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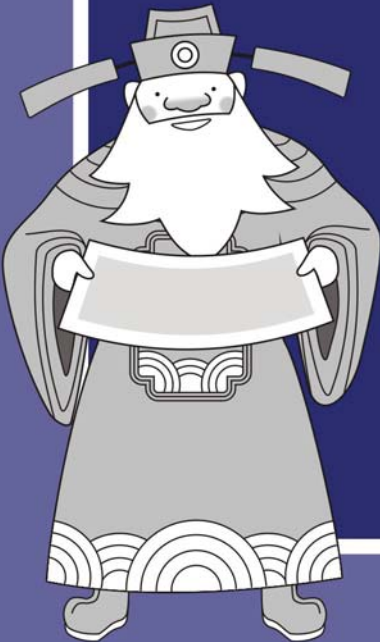


한 및 품질보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10일이라는 품질이의제기기간이 이미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A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Section-D

# 노무 인사





D- 1

**근로자의 범위**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회사는 고용관계인가요?**

중국은 법률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노동관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 질의처럼 ①운전기사가 자기차량까지 공급하는 경우 ② 운전기사는 회사가 고용하고 지입차주는 차량만 공급하는 형태로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등 각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관계에 의한 노동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관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어떤 관계 하에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지, 그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항과 그 이행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 ① 회사를 위해 운전을 하는가?
- ②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가?
- ③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가?
- ④ 보수가 노동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가?
-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⑥ 노동제공이 계속성을 갖는가?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노동 관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대표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공상국에서 과태료 5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연락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处)’, ‘판사처(办事处)’ 또는 ‘상주대표기구(常驻代表机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국 대표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은 반드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대표처가 이러한 노무파견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북경시 인민정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인 직원 고용 관리 규정(北京市人民政府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聘用中国雇员的管理规定) 제11조) 과태료 금액은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대표처 직원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D-3

외지인 고용

중국 종업원이 임시거주증(暫住证)이 없다는 이유로 1,000 위안의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의 대부분 도시들에서는 외지 유입인구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거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지인은 해당지역 파출소에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임시거주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천진에서 이를 위반하였다면 공안기관으로부터 회사가 경고조치를 받거나 1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천진시 임시거주인구 호구관리 규정(天津市暫住人口戶政管理規定) 제19조). 반면 북경에서 임시거주증이 없는 외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임시거주증이 없는 때 1명당 1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북경시 외지인 호적관리 규정(北京市外地來京人員戶籍管理規定) 제17조 제3호).

이처럼 중국은 각 지방마다 외지인(취업, 자녀교육,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  
히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총 직원수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북경의 경우 1.7%)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취업조례(殘廢人就業條例) 제8조).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부담금(就業保障金)을 해당지역 관련기관(각 지역 장애인연합회에서 결정)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동 조례 제9조).

만약 부담금을 납부기한 만료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금액 이외에 지체 1일당 5%의 체납금을 내셔야 합니다(동 조례 제27조).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해당지역 주무부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 5

연소자 고용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소자(童工)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중국 노동법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만 16세 미만인 자를 가리킵니다(연소자고용금지규정(禁止使用童工规定) 제2조).

중국에서 사용자가 불법으로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선 노동 관련 행정부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고용한 때 1인당 5,000 위안/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연소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도 5,000위안/1인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동 규정 제6조, 제7조).

따라서 직원 고용시 신분증 확인과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연소자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 관리 규정(外國人在中國就業管理規定) 제8조). 위 질의처럼 한국 직원이 F비자라면 그 직원은 1천 위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 한국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그 직원의 출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實施細則) 제44조).

따라서 회사 내의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D-7

## 합격통지후신체검사

저희 회사는 면접 후 A에게 합격통지서를 발송하고 2011년 2월 27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3월 1일부터 출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밝혀졌고 이를 이유로 저희 회사는 A와의 노동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회사의 사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면접시험 후 고용자를 확정하여 합격통지서를 발송하고 나중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고용 취소시 취업차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제19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위생행정 주무부처가 종사를 금지한 업무 이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신체검사표준으로 강행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규정 제68조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지표를 신체검사 표준으로 삼은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A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

우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면접을 함께 시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  
무  
인  
사



D- 8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제91조).

이때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해당 기업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가 입은 손해의 최소 7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판법(违反《劳动法》有关劳动合同规定的赔偿办法) 제6조 제1항).

따라서 중국에서 직원 고용시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D-9

## 노동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

노동계약서에 사회보험 관련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17조).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에는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증(居民身份證)등 유효한 신분증번호, 계약기간, 근로내용 및 근무지, 근무시간 및 휴가, 임금, 사회보험,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및 산업재해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위 법정 기재사항 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체결한 노동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선 노동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81조).



D-10

**노동계약서 작성**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또는 직원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고용한 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은 민법상의 고용관계이므로 노동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 자료1] 노동계약과 관련한 사용자의 벌칙**

사용자 위반행위	요건	벌칙	조항
계약서 미작성	1개월 이상 ~ 만 1년 이내 미작성	미작성 기간 동안 임금 2배 지급	제82조
	1년 이상 미작성	무고정 기간 계약으로 간주	제82조
무고정 기간 계약서 미작성	10년 이상 근무,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노동계약 체결시	미작성 기간 동안 임금 2배 지급	제82조
위법한 해고 또는 계약종료	-	경제보상금 2배 지급	제87조

참고 : 劳动合同法



## 업무내용 변경과 계약해제



2007년 B사에 판매경리로 고용된 A는 하북성 지역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부지역으로의 판로확장을 모색하던 B사는 A에게 사천성 지역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B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제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노동계약법 제17조에서는 노동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5조).

따라서 업무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와 하나하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의 업무내용을 변경한 B사의 조치는 회사의 경영필요에 따라 행하여진 내부관리행위로 노동계약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큼니다.

만일 노동계약서에 ‘판매경리’가 아닌 ‘하북성 담당’ 판매경리로



## 노 무 인 사

기재되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 변경은 노동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노동계약 체결시 업무내용을 가능한 한 넓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D-12

## 계약의 무효

근로자가 학위를 위조하여 회사에 고용된 후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제18조 및 노동계약법 제26조에는 기망, 헐박 혹은 상대방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는 상황 하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중재기구 혹은 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학위나 학력을 위조하여 입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고용시 반드시 학위관련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고용한 직원들의 학위 진위여부도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www.chsi.com.cn](http://www.chsi.com.cn))’에서 확인(학사, 석사, 박사)하실 수 있습니다.



D-13

##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대표  
나 노조(工會)와 협의하여야 하나요?

노동계약법은 근로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임금, 근무 시간, 휴가, 안전, 위생, 보험, 복리후생, 연수, 근무규칙 등에 대한 사항이나 기타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 결정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대표회의나 근로자 전체회의를 거쳐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하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4조 제2조).

따라서 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정, 수정, 결정할 때에는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시고, 반드시 협의관련 증명문건을 보관하여 후일에 있을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D-14

## 임신과 해고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내 임신 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제27조 제3항에서는 노동계약에 여직원의 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노동분쟁사건 심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9조에서는 ‘회사가 제정하는 기업규칙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정책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와 같이 여직원의 사내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회사 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D-15

기업규칙 위반과 해고

B사는 ‘근무 시간 중 QQ 등 메신저의 사용은 절대 불허한다.’라는 내용을 기업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A는 근무 중 몰래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회사는 이를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보고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규칙에 ‘어떠 어떠한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규정만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만 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효과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부분은 규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기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메신저의 사용은 절대 불허한다’라는 금지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할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 또는 제소를 할 경우 회사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습기간



근로자와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이는 협의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계약법**에는 법정수습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만큼 임금(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3조), 또한 일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조).

참고로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 내 동일직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많아야 합니다. 단,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는 회사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는 높아야 합니다(동법 제20조).



## [D 자료2] 노동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의 상한
3개월 미만	설정불가
3개월 이상 ~ 만 1년 이하	1개월 이하
1년 이상 ~ 만 3년 이하	2개월 이하
3년 이상이나 확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참고 : 노동계약법 제19조>

\* 동일사용자와 동일근로자는 1회의 수습기간만 약정할 수 있음.

\*\*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3개월 미만의 계약은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제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몸수색 하면 구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중국에서 사용자가 폭행, 위협 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불법수색, 체벌, 구타, 모욕, 구금 등을 근로자에게 행한 경우에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과태료를 병과 받거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96조).

또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제88조).

만약 위 행위들이 고의상해죄(형법 제234조: 구류 또는 3년 이하 유기징역(일반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중상해),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 사형(특수상해)), 불법감금죄(형법 제238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중감금), 10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사)), 강제노동죄(형법 제244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 병과, 또는 벌금만 부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구타나 몸수색은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에 대해 민족감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몸수색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D-18

**이직방지 보증금 또는 담보**

최근 근로자들의 이직이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만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노동계약법 제9조).

일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증(居民身份证)을 압류하면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居民身份证法 제16조 제3호에 따라 2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보 혹은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수취한 경우,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 명령과 함께 근로자 1인당 5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에게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배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4조 제2항).



한국인 A씨는 다니던 B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귀국하기 위해 회사 측에 보관중인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노동계약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명목으로 근로자의 재물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84조는 ‘사용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분증 등 증명서를 압류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에서 A의 여권을 압류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위 노동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A는 현지 노동행정부서 또는 공안당국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 후의 이직

저희 회사는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부에서 직원 A를 선발하여 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A는 마음이 변하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B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훈련을 받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서 체결을 통해 근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위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위약금은 회사가 지급한 전문교육비용의 범위 내에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교육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항).

따라서 귀사는 해당 직원을 교육하는데 투자한 비용 중에서 그 직원이 이행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합법적인 위약책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법〉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판법 제4조 제2호).



D-21

## 의무복무와 경업금지

경업(경쟁업종 취업·개업)이 제한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은 연수 후의 의무복무와 경업금지입니다(노동계약법 제25조).

경업금지는 고급관리자, 고급기술자, 기타 영업비밀 준수 의무자 등에만 한정되며(동법 제24조 제1항), 경업금지 기간 동안 상기 대상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그러나 경업금지 기간은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제24조 제2항), 영업비밀 준수 의무자에게 회사는 경업금지 기간 동안 매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만일 경업금지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회사는 약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기술 및 비밀 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약정할 때에는 지원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22

일급계산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일급 계산할 때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1.75일로 나누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중국의 연휴 및 기념일은 2008년부터 11일로 기존에 비해 1일 늘어났습니다. 이에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근로자의 연간 월 평균 근무시간과 임금환산에 관한 부문규장(关于职工全年月均工作时间和工资折算问题的通知)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장에 따르면 근무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연 근무일수 : 365일 - 104일(토, 일) 11일(법정공휴일) = 250일
- ② 분기별 근무일수 : 250일 ÷ 4분기 = 62.5일/분기
- ③ 월 근무일수 : 250일 ÷ 12개월 = 20.83일/월

또한 1일 임금, 시간임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일 임금 : 월 임금 ÷ 월 임금계산일 수(21.75일)
- ② 시간임금 : 월 임금 ÷ (월 임금계산일 수(21.75일) × 8시간)
- ③ 월 임금계산일 수 = (365일 - 104일) ÷ 12개월 = 21.75일(법정 공휴일을 계산일에 포함)

이처럼 법정휴일이 1일 더 추가되었고, 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환산하면서 월 임금계산일 수는 2007년의 20.92일에서 2008년부터는 21.75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말 잔업비 지급



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국무원에서 발표한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제3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동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동 규정 제3조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식일로 하는 통일적인 근무시간제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업과 전항에서 규정한 통일적인 근무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휴식일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  
무  
인  
사

단,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은 보장되어야만 위와 같은 잔업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38조).



## 잔업비와 대체휴가



최근 저희 회사는 주문량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매일 11시간씩 5일 연속 작업을 시켰는데, 평일 초과 잔업시간(15시간)에 대해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주문이 별로 없어 한가할 때 2일의 대체휴가를 줘도 괜찮은지요?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는 주문량이 많을 때 추가 잔업비의 지급 없이 잔업을 시키고 일감이 줄어 한가할 때에는 대체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잔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200%의 잔업비 지급 대신에 평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체휴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휴일에 잔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평일에 잔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잔업을 시킨 후 150%의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주문량이 없을 때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위장 종합계산노동제로 간주되어 잔업비를 소급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D-25

잔업비의 시효

노동자가 이직을 하면서 과거 3년간 주말에 출근한 잔업비를 소급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잔업비의 소급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2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잔업비 등 임금관련 소송심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급청구한 잔업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업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1주일에 4일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은 초과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잔업비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요?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4일×2시간×15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국의 허가 하에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탄력근무시간제와 종합계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심사비준 판법(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제3조).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는 비록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동 판법 제5조).

이러한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통해 기업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잔업비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수불제 임금

A는 입사하면서 개수불제 임금을 채택했습니다. 회사의 호황기에는 주문량이 많아 임금을 많이 받았었지만, 불황으로 주문이 급감하자 A의 급여는 800 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A는 현지 최저임금이 1,000 위안이고, 불황으로 인한 주문 급감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선 개수불제 임금이란 노동자가 생산한 합격품의 수량이나 일정 개수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에 규정한 생산개수 단가를 계산 지급하는 임금방식입니다.

중국의 상당수 공장들은 이러한 임금모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성과와 임금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수불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 제12조 제2항에서는 ‘개수불제 또는 인센티브제 임금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기준량의 전제하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현지 최저임금인 1,000 위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

2008년 1월 1일부로 중국의 근로자는 근무연수 1년 이상인 경우 유급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근로자 유급연차휴가 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 제2조).

근로자가 회사 때문에 연차휴가를 못 간 경우, 그에 대한 수당 및 배상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업무가 많아 직원의 동의를 얻고 연차휴가를 보내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1일 임금의 300%를 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5조 제2항).

② 회사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선 노동관서는 사용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발하게 되는데,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1일 임금의 60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7항).

### [D 자료3]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근무연수	연차휴가	예외사항(연차휴가 없음)
1년 ~ 10년	5일	- 여름, 겨울휴가일수가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 유급 청원 휴가 20일 이상
10년 ~ 20년	10일	- 근무연수 10년 이하: 병가 2개월 이상 - 근무연수 10년~ 20년 이하: 병가 3개월 이상
20년 이상	15일	- 근무연수 20년 이상: 병가 4개월 이상



## 출산휴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2달만 주었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중국 노동관련법에서는

① 여성근로자에게 갱내 노동,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4급) 또는 금지된 노동을 시키는 경우,

② 생리기간에 고공, 저온 작업장에서의 노동 또는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3급)을 시키는 경우,

③ 임신 7개월 이상인 자에게 야근 혹은 연장근무를 시키는 경우,

④ 출산휴가를 90일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⑤ 수유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3급) 또는 수유기에 금지된 노동, 연장근무 또는 야근을 시키는 경우,

⑥ 미성년자에게 갱내노동, 유해하거나 유독성이 있는 노동,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4급) 또는 금지된 노동을 시키는 경우,

⑦ 미성년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선 노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해 근로자 1인당 1,000 위안 이상 ~ 5,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는 여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

런 법규 및 지방정부의 특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노무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  
무  
인  
사



D-30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낮게 신고하였더니 신고한 임금액의 약 3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회사와 상호 협의 하에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는 일선 노동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허위로 신고한 임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보장감찰조례(劳动保障监察条例) 제27조 제1항).

주의할 것은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D-31

## 생육보험

저희 회사는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공들이다 보니 생육보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근로자 생육보험 시행판법(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은 생육보험의 법률적 근거로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육보험의 실시판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 개인은 생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회사가 임금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사회보험기구에 생육보험료로 납부하여 생육보험기금을 적립합니다.

(1) 생육보험료의 액수 비례는 인민정부에서 생육인수와 생육보조금, 생육의료비 등 항목의 비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비용지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납부한 생육보험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업관리비용에 산입합니다.

(2) 위 판법에 의하면 여직원은 아래의 경우에 생육보험 보조금을 받거나 생육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여직원의 출산 휴가시, 출산휴가 기간의 생육보조금은 그 기업의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생육보험기금에



서 지불합니다.

② 여직원 출산의 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와 약값은 생육보험기금으로 지불합니다. 위 판법에서 규정한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값(약품과 영양품을 포함한 약값)을 초과한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③ 여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경우,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는 생육보험기금으로 지불합니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여직원이 출산 혹은 유산한 경우, 본인 혹은 기업이 현지 계획생육부문이 발급한 계획생육증명서, 유아출생, 사망 또는 유산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기구에서 수속을 밟아 출생보조금을 수령하고, 출산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기업은 제때에 생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육보조금, 생육의료비를 미납하거나 지불을 거절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에서 기한 내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기업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중국에서 약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현장 직원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왔는데, 회사에 직업병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고, 작업장 내 분위기도 걱정되기도 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업병예방치료법(职业病防治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직업병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현지 위생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기업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적시에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진단 및 관찰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관찰기간 내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진단을 거쳐 직업병으로 확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비용을 처리합니다.

또 동법 제65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병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내지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직업병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D-33

## 안전사고

회사내 안전사고로 공장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는데, 20만 위안과 총경리 1년 소득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중국에서의 산업안전사고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그 기준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상해, 사망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경우는 일반사고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제3조 제4호). 즉, 3인 이하의 사망 또는 10인 이하의 중상 또는 1,000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10만 위안 이상 ~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동 조례 제37조 제1호).

또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야기시킨 책임자는 1년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동 조례 제38조 제1호).

덧붙여 산업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보고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처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의 개념



근로자가 산업재해(工傷)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다음의 상황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 제14조).

① 근무시간 중 작업장소 내에서 근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② 근무시간을 전후하여 작업장소 내에서 근무와 관련한 준비작업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③ 근무시간 중 작업장소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 예상 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④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⑤ 업무로 인한 출장기간 중 업무로 인하여 입은 상해 또는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⑥ 출퇴근 중 본인에게 주요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운송선, 기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⑦ 기타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공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동 조례 제15조).



① 근무시간 중 작업장소 내에서 돌연사 하거나 48시간 내에 응급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② 응급조치, 재난구조 등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상해를 당한 경우

③ 과거 군복무 중 전쟁, 공무로 장애가 발생하여 **혁명장애 군인증(革命傷殘軍人證)**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 사업장 근무 중 과거 상해가 재발한 경우

그러나 위 두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① 고의에 의한 범죄이거나

② 음주 또는 마약을 복용한 경우

③ 자해 또는 자살로 인한 경우

④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제37조, 동 조례 제16조)

##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



저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확대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개정 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각종 기업, 피용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 근로자 또는 피용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외에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이 설립한 비(非)기업단위,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아닌 민간단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A는 입사한 지 2주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작업 중 기계 조작 미숙으로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산업재해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A의 가족들은 이를 알고 터무니 없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험조례 제14조 제1호). A의 경우에는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산재사고가 직원의 조작규칙 미준수 등 업무상 과실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공상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A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산재이라도 귀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재인증 절차 및 필요시 노동능력감정





을 받아 산업재해보험대우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가족들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37

## 산업재해인정 신청의 주체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회사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산재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험조례 제17조 제1항 제1문). 만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항 제2문).

그러나 사용자인 회사가 산재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친족, 소속 노동조합 등도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산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만일 사용자인 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재인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대우에 부합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산업재해시 비용부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인 기업은 어떠한 비용 항목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사회보험법(社会保險法)과 개정 산업재해보험조례에서는 근로자가 공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였던 일부 비용을 공상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동법 제38조 및 제39조, 동 조례 제30조 및 제34조).

사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라 사용자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각각 부담하는 비용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D 자료4] 노동계약의 해제와 보상금 지급

비용부담 주체	비용항목
<b>사용자</b> (사회보험법 제39조) <b>공상보험기금</b>	① 산재 치료기간 중 급여 및 복지 관련 비용 (조례 제33조 제1항) ② 산재 5, 6급 근로자가 수령하는 장애보조금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 ③ 노동계약 해제, 종료시의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조례 제36조 제2항)
<b>산업재해보험기금</b> (사회보험법 제38조)	① 산재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및 건강회복 비용 (조례 제30조 제6항) ② 입원 식대 보조비(조례 제30조 제4항) ③ 총괄지역 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교통비 및 숙박비(조례 제30조 제4항) ④ 장애보조기구 비용(조례 제32조) ⑤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노동능력 검증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생활보호비(조례 제34조 제1항) ⑥ 일회성 장애보조금과 1급 ~ 4급 장애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장애보조금(조례 제35조) ⑦ 노동계약 해제 또는 종료시 향유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조례 제36조 제2항) ⑧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하는 장례보조금, 부양친족에 대한 위로금 및 사망보조금(조례 제39조 제1항) ⑨ 노동능력검증비(조례 제12조)

## 근로자의 계약해제 요건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 ① 계약에 약정한 노동보호 혹은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 ②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 ③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제하거나
- ④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안전에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38조). 이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D 자료5] 노동계약의 해제와 보상금지급

	해제유형	조항	비고
합의해제	사용자 제기	제36조	경제보상금 지급
	근로자 제기	제36조	경제보상금 지급 불요
근로자의 일방적 해제	자의적 퇴직	제37조	30일전 통지 필요 * 수습: 3일전 통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제	사용자 귀책사유	제38조	사전통지(×) + 경제보상금 지급(○)
	징계처분 해고	제39조	사전통지(○) + 경제보상금 지급(×)
	근로자 비과실성 해고	제40조	사전통지(○) + 경제보상금 지급(○)
	인력감원	제41조	사전협의(○) + 경제보상금 지급(○)

## 회사의 계약해제 요건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규칙을 위반하면 징계해고시킬 수 있나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 ①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② 수습기간에 고용조건에 맞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③ 중대한 직무태만,
- ④ 사리추구로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 ⑤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에 있어 그 회사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 ⑥ 노동계약의 무효,
- ⑦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39조).

그러나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도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해야 합니다. 또 해고 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D-41

## 인력감원

근로자 가정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노인이 있는 직원은 감원(정리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위 질문과 같이 알고 계시지만, 위 규정의 의미는 이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원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 감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원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20인 이상 혹은 20인 이하이더라도 총 근로자수의 10% 이상을 감원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노조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일선 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인력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41조 제1항).

장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정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노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근로자는 위 절차를 거쳐 감원을 하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감원을 해야 할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를 감원한 후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도 감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기한 노동계약의 해제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하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10년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계약 연속 2회 후 제3회째에는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속 2회 고정기간 노동계약 체결시 무기한 계약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 노동계약 즉, 종신고용적인 성격을 지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은 “계약의 종료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기는 하나, 기업규칙 등의 중대한 위반, 업무불능 또는 불감당,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 과실, 무능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징계사항, 업무평가 등 회사의 관련규정을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 중의 해고

A는 저희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져 저희 회사에서는 우선 수습기간 중에 있던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한 것이며 그 결과 경제보상금 지급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미부합함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① 고용조건의 작성 및 노동자와 약정서 체결,

②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 확보,

③ 노동자 본인에 대한 노동계약 해제통지서 송달 및 해고이유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해고로 경제보상금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근로자의 해고



시간제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제 근로자(非全日制用工)는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동계약법 제68조).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약정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9조, 제70조).

노동계약의 종료는 쌍방 당사자가 수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임금은 15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71조).

즉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종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D-45

## 회사의 합병, 분리시 고용승계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그 회사의 근로자는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노동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노동계약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의 합병과 분리에 따른 고용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과 분리는 기업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때 근로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A사와 한국의 B사가 공동 출자하여 청도에 합자회사 J를 설립하는 경우, J사의 근로자로는 반드시 A사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합병은 기존에 있던 것을 안고 가는 것이고, 법인 신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B사와 공동으로 J사를 설립할 때 그 직원을 출자(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것이 아닌 이상 A사의 직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원처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경제 보상을 주어야 한데, 맞나요?

이는 고정기간 계약 만료시에 누가 재계약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조건 또는 그 이상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계약 종료 및 해제와 이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급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 자료6] 경제보상금의 유형 및 지급여부

유형	구체적 요건	법적 근거	지급
계약종료 (기간만료)	사용자 재계약 거부	노동계약법 제46조	필요
	근로자 재계약 거부	노동계약법 제46조	불요
합의해제	사용자 제기	노동계약법 제36조	필요
	근로자 제기	노동계약법 제36조	불요
근로자의 일방적 해제	자의적 퇴직	노동계약법 제37조	불요
	사용자 귀책사유	노동계약법 제38조	필요
사용자의 일방적 해제	징계처분 해고	노동계약법 제39조	불요
	근로자 비과실성 해고	노동계약법 제40조	필요
	인력감원	노동계약법 제41조	필요
의료기간 만료 후 해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노동법>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판법	필요



D-47

## 계약기간 만료시 경제보상금

2004년 8월에 노동계약기간을 4년(2008년 7월)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4년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정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4년분 모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계약법 부칙에 따라 고정기간 만료시 경제보상금은 법 시행(200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08년 근무 8개월분만 경제보상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해고직원의 경제보상금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국노동법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严重失职)’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직원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켜 회사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1달 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실이라 하여 반드시 엄중한 해고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근거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배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제보상금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인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就业证)’을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근로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이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적법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근무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결과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무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회사로부터 해임당하더라도 노동계약법에 근거한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규에 따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 ①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 ② 중재신청사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③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노동중재는 상담인께서 상담인 이익이 손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에는 부당해고통보를 받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비용에 관하여 노동계약검증과 노동쟁의 중재비용 수취 관리관법(劳动合同鉴证和劳动争议仲裁收费管理办法) 제3조에 의하면 노동중재 비용은 접수비와 처리비로 나뉘며 접수비는 신청인이 3인 이하의 경우 20 위안이고, 처리비는 출장비 등 실비로서 실제 발



생된 비용에 따라 수취합니다.

중재시일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재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를 종료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D-51

## 중재기관의 재결서

저희 회사는 경제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기관의 재결서를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보상금,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혹은 배상금이 해당 소재지 월 최저임금의 12개월치 액수보다 적은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재결서는 최종적이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재종국 : 一裁終局).

또한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국가의 노동 기준집행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소송가액이 월최저임금의 12개월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일재종국이 적용됩니다.

단,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국적인 법률효과를 갖는 그 재결서에 법률적용의 문제, 관할권의 문제, 법정절차의 위반, 증거자료의 위조사실 등이 있을 경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47조, 제49조).

따라서 경제보상금 등이 소재지 최저임금 12개월분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저희 회사 직원인 A와 B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B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공안에 A를 고소하였고, A는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사직하였으며, B 역시 함께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B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해 배상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이 있나요?

위 사례는 직원 사이에 사적인 싸움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상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례에서 B는 사적인 일로 A와 다투다 상처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B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직원들 간의 다툼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건 처리과정을 파악하여 해당 증거자료(예를 들면 공안의 사건기록, 조사기록, 배상관련 합의서 등)를 미리 확보해 향후 위와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원 간에 사적인 일로 싸우는 경우는 기업규칙을 명백히 위반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  
무  
인  
사



## 직원의 신분증 확인 책임

A는 저희 회사 입사 후 출근수범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여 우수사원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팔 한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기관은 A가 가짜 신분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거대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시 허위 신분증, 가짜 학력증명서 제출 등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고용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회보험 기관이 A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만일 A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비 및 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신분확인 및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노무파견업체의 위반행위와 책임



노무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잘못하였는데 저희 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해 노무파견업체만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약법에는 노무파견업체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노무파견업체와 사용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92조)을 두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연대책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파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D-55

## 노무 인사 관련 자료

각성 최저임금표준, 노동계약 관련 벌칙 종합

### [D 자료] 각 성 최저임금표준 (위안/월)

지역	시행일	최저임금	지역	시행일	최저임금
길 림 성	2011.5.1	1000	운남성	2011.9.1	950
호 북 성	2010.5.1	900	강서성	2010.7.1	720
요 녕 성	2011.7.1	1100	안휘성	2011.7.1	1010
감 숙 성	2010.10.1	760	녕 하	2011.4.1	900
북 경 시	2011.1.1	1160	섬서성	2011.1.1	860
중 경 시	2011.1.1	870	산서성	2011.4.1	980
흑룡강성	2010.7.1	880	산둥성	2011.3.1	1100
하 북 성	2011.7.1	1100	상해시	2011.4.1	1280
광 서 성	2010.9.7	820	천진시	2011.4.1	1160
신 강	2011.6.1	1160	복건성	2011.3.1	1100
남 경 시	2010.2.1	960	절강성	2011.4.1	1310
광 동 성	2011.4.1	1300	청해성	2010.9.1	770
강 소 성	2011.2.1	1140	귀주성	2011.9.1	930
사 천 성	2010.8.1	850	내몽골	2010.7.1	900
호 남 성	2010.7.1	850	서 장	2010.7.1	950
하 남 성	2011.10.1	1080	심 천	2011.4.1	1320
해 남 성	2010.7.1	830	(2011년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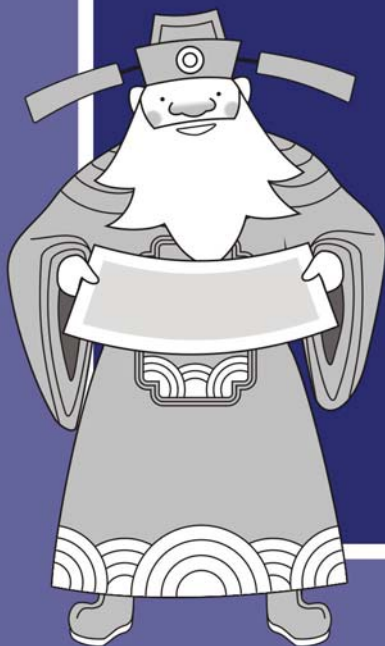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 [D 자료8] 노동계약 관련 벌칙 종합

구분	내용	벌칙
노 동 계 약 법	위법한 기업규칙을 규정함	시정 및 손해배상
	노동계약서에 필수조항을 기재하지 않음	시정 및 손해배상
	노동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시정 및 손해배상
	서면으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음	매월 2배의 임금 *미체결 1월 ~ 만 1년
	법에 따라 근로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매월 2배의 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수습기간을 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음	시정 및 손해배상
	신분증 등 증명서류 강제 보관	시정 및 200 위안 이하 과태료
	담보 또는 기타 명목으로 재물 수취	시정 및 500 ~ 200 위안/1인 과태료 및 손해배상
	계약약정에 따른 근로보수 미지급	시정, 불이행시 지불의무금액의 50~100% 이하의 배상금 추가 지급
	임금을 소재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게 책정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계약종료, 해제시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 미지급	
	계약상 무효조항 포함	과실책임자 손해배상
	근로자를 위법하게 해고	경제보상금 기준의 2배 배상 * 기준 : 만 1년마다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6월 ~ 1년 미만 : 1년 -6월 미만 : 0.5월
	폭력, 협박 또는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	손해배상, 행정, 형사처벌
	위험작업을 지시 또는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험하게 함	
근로자를 모욕, 체벌, 구타, 불법조사 및 구금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근로자의 심신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힘		
이직 근로자에게 서면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시정 및 손해배상	

# Section-E

## 기업부동산





## E-1

## 토지소유권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차 벤더업체입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중국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공유제는 중국 사회주의 공유제의 중요한 내용이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국가(全民所有)와 집체(集体所有)뿐입니다. 즉 중국에서 국가와 집체를 제외한 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은 취득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합니다(헌법 제10조, 물권법 제3조, 제45조~제63조,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제2조).

위 제도는 다른 나라의 토지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집체에 있으므로 귀사는 토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자료1] 중국의 토지소유권 관련 법규정

분류	법규	내용
국유토지 소유권	헌법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물권법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 법률에서 정한 국가 소유의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토지관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인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체소유제를 실시함
	토지관리법 제8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하는 약간 규정 제3조~ 제8조	
집체토지 소유권	헌법 제10조	○법률로 정한 국가 소유 이외의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임
	물권법 제58조~제63조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규정
	토지관리법 제8조	○법률로 정한 국가 소유 이외의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임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하는 약간 규정	



E-2

획발토지 양수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 취득한 획발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중국에서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출양(出讓), 획발(划拨)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획발은 무상취득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획발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기관용지, 군사용지, 도시 인프라시설 용지, 공익사업용지, 국가중점지원사업인 자원·교통·수리(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产管理法) 제24조) 등의 용도에 한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 획발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위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획발토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실사 위와 같은 용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외국인 포함)이 획발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선례를 찾기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 E-3

##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2년 전에 ㄹ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강제로 토지를 회수해 간다는 데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은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건설용지를 거주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오락용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2개 이상의 토지사용 의향자가 있으면 반드시 입찰(招标), 경매(拍卖), 가격공개입찰(挂牌) 등의 경쟁방식으로 출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물권법 제137조 제2항).

따라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상업용지를 출양받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용도로 토지를 출양받을 경우,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가격공개입찰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4

토지출양계약의 주체

중국의 한 경제개발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A사는 그 경제개발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경제개발구의 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우선 중국의 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 성급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변방합작구, 기타 개발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수도 1,600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발구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개발구의 토지가 국유토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체토지는 개발구 용도로는 이용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토지관리법 제63조) 적지 않은 기업들이 개발구와 인접해 있는 집체토지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개발구의 국유토지는 반드시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계약은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아닌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처와 체결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2005.8.1 이전에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한해서는 유효합니다(최고인민법원, 국유토지사용권계약 관련 분쟁 사건에 있어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国有土地使用权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 제2조 제2항).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토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5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기간 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 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4조).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미개발하고 건설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20조).



## E- 6

## 유휴토지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회수해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유휴토지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를 비준한 原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건설용지를 유휴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유휴토지처리판법(闲置土地处置办法) 제2조 제1항). 따라서 토지를 출양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용도 및 착공기일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양계약에 약정한 착공기일을 만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에 상당한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고,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26조, 동 판법 제4조). 따라서 토지를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E-7

## 주택분양허가증의 취득 전 분양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택분양허가증’을 미취득한 상황을 숨기고 건물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을 한 부동산개발상과 분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관리부문에 예매허가를 받고 주택분양허가증(商品房预售许可证)을 취득한 후에 주택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도시주택분양관리관법(城市商品房预售管理办法) 제6조).

만일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예매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개발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불법행위의 중지와 불법소득의 몰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급받은 선불금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 판법 제13조,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城市房地产开发经营管理条例) 제39조). 또 제소 전까지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택매매계약서의 무효를 인정하게 됩니다(최고인민법원, 주택매매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주택분양허



가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를 취득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하여 주택매매계약의 무효확인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8

분양면적의 차이

부동산 개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면적은 140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건축면적은 128평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면적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건축면적, 설계면적, 실제사용면적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의 면적이 어느 면적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으며 면적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적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약정면적과 실제면적 간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① 면적의 오차비례·절대치가 3% 이내일 경우 실제·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결산하도록 하며 ,

② 면적의 오차비례 절대치가 3% 이상일 경우 매수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판매관리판법(商品房销售管理办法) 제 20조 제2항 제2호).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개발회사는 해제 후 30



일 이내에 매수인이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증상 기재된 면적이 약정면적보다 크면 그 면적의 오차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담하고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부동산등기증상 면적이 약정면적보다 작을 경우 그 오차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절대치가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2배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E-9

## 토지임차기간

H사는 3년 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곳의 부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가 가능한 50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아닌 20년만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데 농업용지의 경우에는 최장 출양기간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제12조).

따라서 H사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H사가 취득한 것은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입니다.

계약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사가 50년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더라도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고, 그 결과 해당 부지에 공장을 짓더라도 20여 년밖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10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개월째 임대료 10만 위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

중국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후 임대건물에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허가 없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고 철거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허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한 경우, 인테리어 부분의 보상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게 됩니다(도시 건물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1조).

①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의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 제기하면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용을 허가한 경우 이용가치 범위 내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쌍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 내의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은 쌍방이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쌍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의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합니다. 단,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의 책임이 A모씨에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무효,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인테리어 비용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인테리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도 서면으로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11

임차인 우선구매권

저는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포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팔았다면서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그 점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우선 계약법 제230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부동산의 매매를 합리적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우선구매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의 관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제118조에서는 ‘임대인은 임대부동산을 매매하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매매통지를 하여야 하고 우선구매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소유자가 위 점포를 매매하기 3개월 전에 의뢰인께 매매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는 인민법원에 매매계약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 의견 제118조). 또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점포를 매입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유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국유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11년 1월 20일 국유토지상 건물의 수용 및 보상조례(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대상은 소유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는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시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정부 관련부처에 임차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13

**집체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A촌민위원회 소유의 집체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보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당할 경우, 임차인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철거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건물철거 관리부서에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협상하여 보상을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체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임대인과 정부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집체토지상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국유토지상 건물 임차인



에 대한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 작성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문제에 대한 약정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14

**불법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A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정부로부터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임차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우선 불법 건축물이란 이미 건축된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이 관련 도시규획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허가에 따라 건축되지 않은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당하는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 역시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건물 임대시 임대 건축물의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조화사회건설을 위해 불법건축물이라도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률로 명확히 보상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15

## 부동산 저당방법

A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100만 위안을 빌리면서 A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A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B가 그 집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이 집에 대해서는 아직 저당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저당은 저당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은 등기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권법 제180조, 제187조). 그러므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저당이란 저당권설정자인 A는 합법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B(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B는 법에 따라 그 아파트를 경매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48조).

참고로 중국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한 서류는

- ① 신청서,
- ② 신청인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 여권 중



문번역 공증서),

- ③ 건물권리등기증,
- ④ 국유토지사용증,
- ⑤ 채권채무계약서,
- ⑥ 저당권 설정계약서,
- ⑦ 혼인관계증명(부부공동재산일 경우)

등을 부동산관리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지역마다 다름. 북경시 기준임).

따라서 B가 A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절차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중 건물권리등기증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기타 인허가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2] 부동산 관련 인허가 서류

명칭	취득주체	발급부서	내용
건설용지계획허가증 (建设用地规划许可证)	건설단위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	동 프로젝트에 관한 위치와 범위가 도시계획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증서
건설공사계획허가증 (建设工程规划许可证)	건설단위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	동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증서
국유토지사용증 (国有土地许可证)	부동산 개발회사	국토자원행정 주관부문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증서
건물권리등기증 (房屋所有权证)	부동산 구입자	부동산등기기관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귀속의 증명서
건설공사시공증 (建设工程开工证)	건설단위	건설행정주관부문	공사를 시작하도록 허가하는 증서
주택예매허가증 (商品房预售证)	부동산 개발회사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 관리부문	주택을 분양하도록 허가하는 증서
주택품질보증서 (商品房质量保证书)	-	부동산 개발회사	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품질 책임을 보증하는 증서
주택사용설명서 (商品房使用说明书)	-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작성하는 주택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메뉴얼



## E-16

## 미등기건물 저당권 설정 가부

A사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계획하고 모든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10층까지 건설한 후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할 수 없자 A 회사는 미완성된 건축물을 저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미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물권법 제180조 제5호).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건축물 점용 범위 내의 건설용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이 함께 설정됩니다(동법 제182조 제1항). 만약 건설용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건물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건설용지사용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도 동시에 처분되게 됩니다(동법 제200조 제2문 전단).

물론 저당권자는 신축건물의 처분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동조 제2문 후단), 자신의 건축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시기별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 자료3]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의 주택매입시 세금 및 비용

(단위: 만 위안)

구분	세목	세율/기준	비고
비용	재산권등기비	85원, 555원	□ 인지세 10원/건 □ 등기비: - 주 택: 80원 - 비주택: 550원
	공공보수기금	2~3%	□ 매입대금 기준
대출시	저당등기비	□ 주 택: 80원	□ 비주택: 550원

\* 참조: &lt;주택전용수리기금관리판법(住宅专项维修基金管理办法)&gt;

\* 참조: &lt;부동산등기비용계산방식과비용수취기준등관련문제에관한통지(國家發展改革委, 財政部關於規範房屋登記費計費方式和收費標準等有關題的通知08.415).&gt;

## [E 자료4] 부동산(건물) 감정평가비

(단위: 만 위안)

	부동산 가격의 총액	누계 계산율(%)
1	100 이하 (100 포함)	0.5
2	101 ~ 1,000	0.25
3	1,001 ~ 2,000	0.15
4	2,001 ~ 5,000	0.08
5	5,001 ~ 8,000	0.04
6	8,001 ~ 10,000	0.02
7	10,000 이상	0.01

\* 참조: &lt;부동산중개서비스 비용수취에 관한 국가 기획위원회, 건설부의 통지(國家計划委, 建設部關於房地產中介服務收費的通知, '95.7.17)&gt;

**[E 자료] 토지 감정평가비****(1) 토지 감정평가비(宗地)**

(단위: 만 위안)

	부동산 가격의 총액	누계계산율(%)
1	100 이하 (100 포함)	0.5
2	101 ~ 1,000	0.25
3	1,001 ~ 2,000	0.15
4	2,001 ~ 5,000	0.08
5	5,001 ~ 8,000	0.04
6	8,001 ~ 10,000	0.02
7	10,000 이상	0.01

**(2) 토지 감정평가비(其准)**

(단위: 만 위안)

	도시면적(km <sup>2</sup> )	비용
1	5이하 ( 5포함 )	4 - 8
2	5~20 ( 20포함 )	8 - 12
3	20~50 ( 50포함 )	12 - 20
4	50 이상	20 - 40

\* 참조 : <토지가격평가비용 수취에 관한 통지(国家计划委, 土地管理局关于土地价格评估收费的通知 '94.12.12)>



## [E 자료6] 건물(物業)서비스 회사 자격조건

(단위: 만 위안)

구분	1급	2급	3급
자본금	500만 이상	300만 이상	50만 이상
전문직 그중 중급직함	3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공정책임자 재무담당자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중급직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가 다른 두 건물 이상의 관리</li> <li>□ 관리하는 건물면적의 합이 아래 비율의 100% 이상</li> <li>① 다층아파트 200만m<sup>2</sup></li> <li>② 고층아파트 100만m<sup>2</sup></li> <li>③ 독립아파트(별장) 15만m<sup>2</sup></li> <li>④ 오피스텔, 공장(공업) 및 기타 건물 50만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가 다른 두 건물 이상의 관리</li> <li>□ 관리하는 건물면적의 합이 아래 비율의 100% 이상</li> <li>① 다층아파트 100만m<sup>2</sup></li> <li>② 고층아파트 50만m<sup>2</sup></li> <li>③ 독립아파트(별장) 8만m<sup>2</sup></li> <li>④ 오피스텔, 공장(공업) 및 기타 건물 20만m<sup>2</sup></li> </ul>	위임받은 건물(物業) 관리 프로젝트 있음
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품질, 서비스 비용 수취 등 기업관리제도와 기준 마련</li> <li>□ 기업신용 비치등록 시스템 구축</li> <li>□ 양호한 경영관리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품질, 서비스 비용 수취 등 기업관리제도와 기준 마련</li> <li>□ 기업신용 비치등록 시스템 구축</li> <li>□ 양호한 경영관리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품질, 서비스비용 수취 등 기업관리제도와 기준 마련</li> <li>□ 기업신용 비치등록 시스템 구축</li> </ul>
영업범위	모든 건물관리프로젝트	주택 30만m <sup>2</sup> 이하 비주택 8만m <sup>2</sup> 이하	주택 20만m <sup>2</sup> 이하 비주택 5만m <sup>2</sup> 이하

\* 참조: <건물서비스기업자질관리판법(物業服务企业资质管理办法 '07.11.26 개정)>



## [E 자료기] 부동산 중개기구 자격조건(북경시 기준)

(단위: 위안)

구분	1급	2급	3급
자본금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만 이상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소지자	전체 직원의 70% 이상	전체 직원의 60% 이상	전체 직원의 50% 이상
부동산경제사 자격증소지자	중, 고급경제사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준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장(台帳), 재무제표, 계약 규범화</li> <li>□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수취</li> <li>□ 불법행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장(台帳), 재무제표, 계약 규범화</li> <li>□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수취</li> <li>□ 불법행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장(台帳), 재무제표, 계약 규범화</li> <li>□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수취</li> <li>□ 불법행위 없음</li> </ul>

\* 참조: <북경시부동산중개기구관리규정(北京市房地产经纪机构管理规定 '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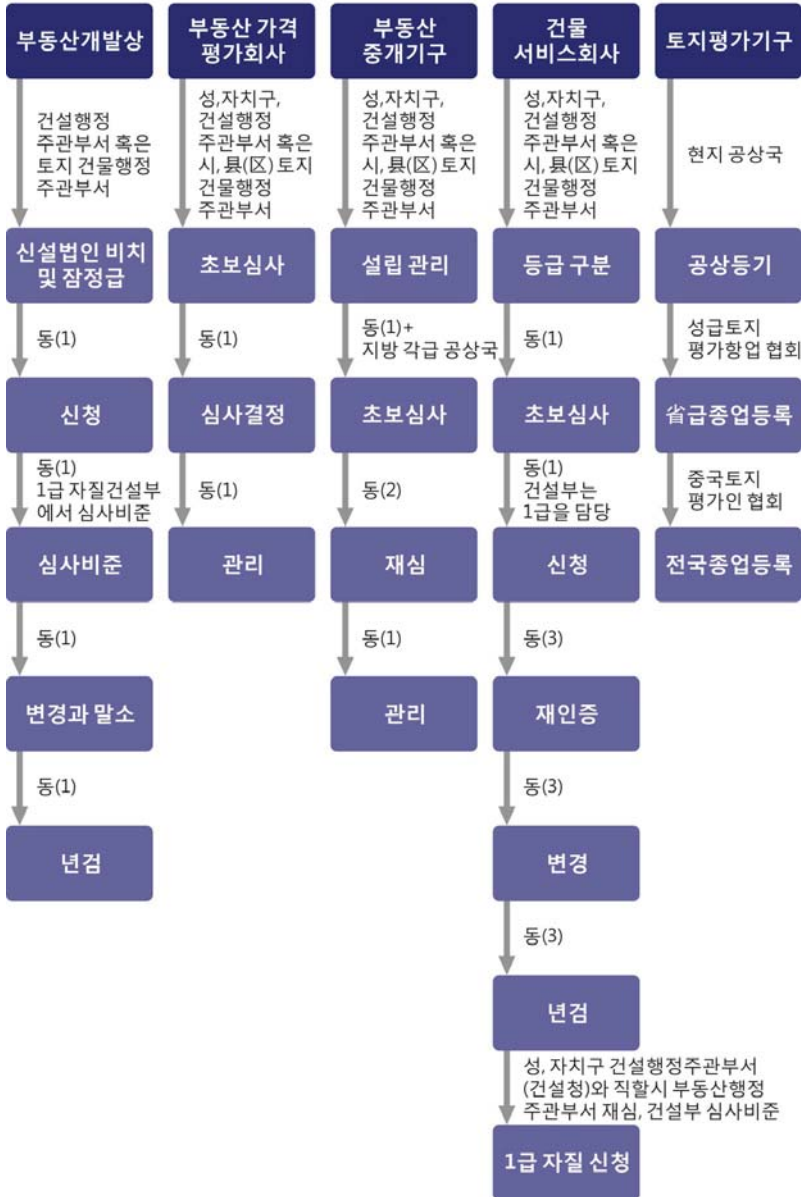
## [E 자료8] 부동산 감정평가회사 자격조건

구분	1급		2급		3급	
자본금	유한책임회사	200만 위안 이상	유한책임회사	100만 위안 이상	유한책임회사	50만 위안 이상
	공동출자 경영기업 (合伙企業)	120만 위안 이상	공동출자 경영기업	60만 위안 이상	공동출자 경영기업	30만 위안 이상
전문직	15명 이상		8명 이상		3명 이상	
투자자 (주주 또는 공동출자자) 중 전문직의 비율	유한 책임 회사	□ 3명 이상 □ 전체 주주 중 50% 이상이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좌동		유한 책임 회사	□ 2명 이상 □ 전체 주주 중 50% 이상이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동 출자 경영 기업	□ 2명 이상 □ 전체 주주 중 50% 이상이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좌동		좌동	
전 3년간 연 평균실적	토지면적 25만㎡ 이상 건축면적 50만㎡ 이상		토지면적 15만㎡ 이상 건축면적 30만㎡ 이상		토지면적 3만㎡ 이상 건축면적 8만㎡ 이상	
경력	□ 감정평가영업 6년 이상 □ 2급 자격조건 취득 3년 이상		□ 3급 자격조건 취득 후 감정평가 영업 4년 이상			
대표자자격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투자비율	전문직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60%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품질관리, 감정당안관리, 재무관리 등 기업내부관리제도가 건전함</li> <li>□ 부동산감정평가보고가 부동산감정평가규범의 요구에 부합함</li> <li>□ 3년 내에 다음의 행위 없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질증서를 수정, 매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li> <li>② 자질등급업무범위를 초월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업무 접수</li> <li>③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고, 불법청탁을 받고 약의로 비용을 낮추는 등 방식의 부당경쟁</li> <li>④ 부동산감정평가 규범과 표준 위반</li> <li>⑤ 허위기재, 오인성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감정평가보고서 제출</li> <li>⑥ 무단으로 자사설립</li> <li>⑦ 위임인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양도</li> <li>⑧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 행위</li> </ol> </li> </ul>					

\* 참조: <부동산가격평가기구관리방법(房地產估价机构管理办法'05.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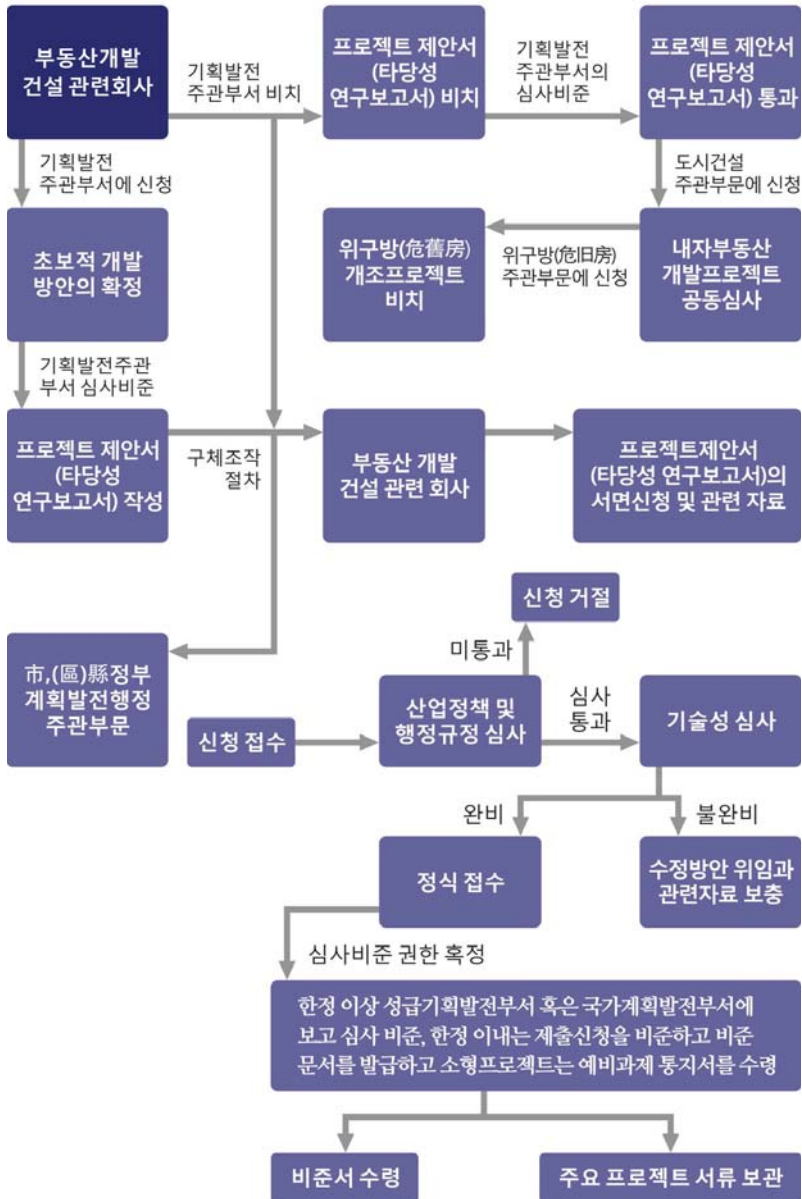
### [E 자료]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질관리 절차 안내도







### [자료10]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수립과 타당성 연구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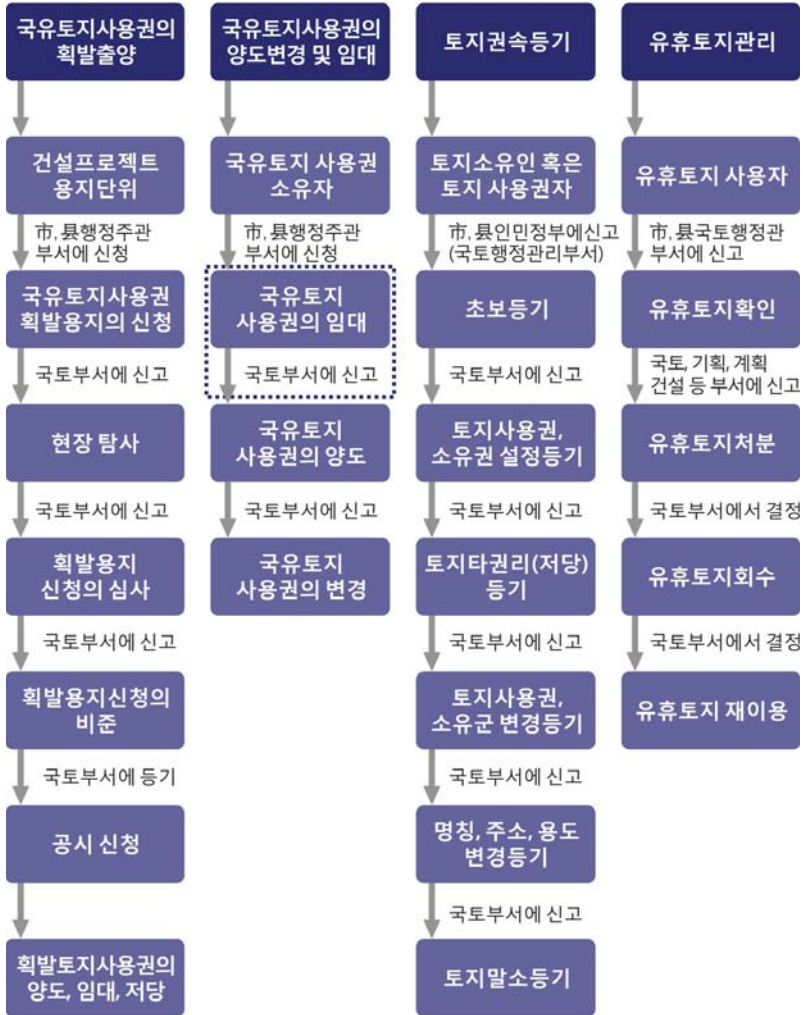


### [E 자료11]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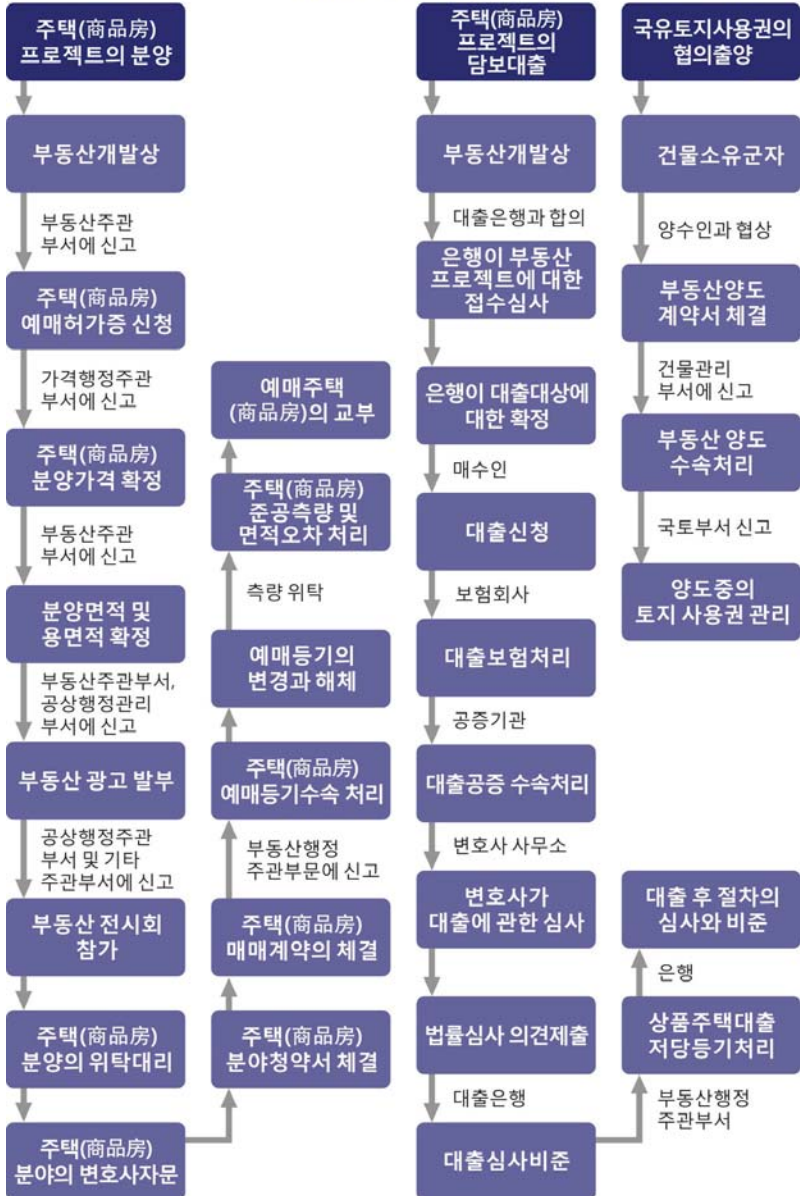
### [E 자료12]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2)



**주의:** (1) 국토부서, 토지부서는 市, 縣급 국토행정주관부서를 지칭  
 (2) 市, 縣 국토행정주관부서는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 地급도시 및  
 현급(현급시, 자치현 등 포함) 국토행정주관부서를 지칭  
 (3) □은 필수 절차가 아님



### [E 자료13]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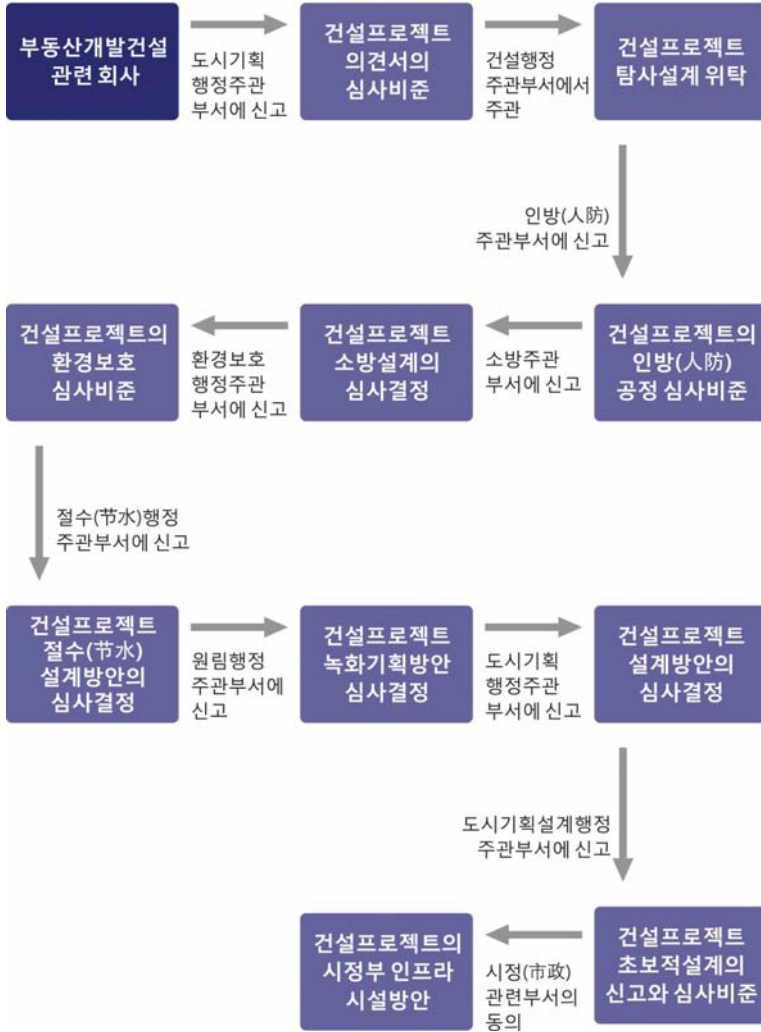


### [자료14]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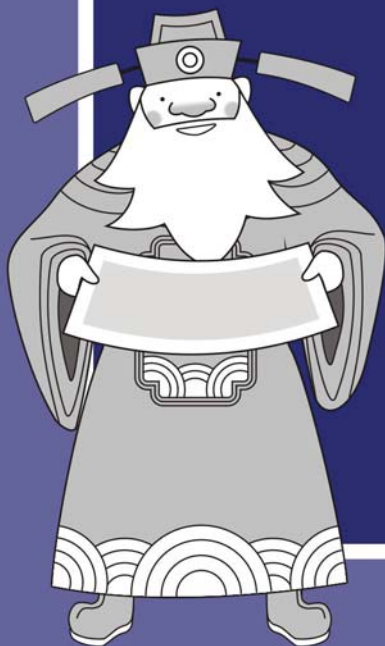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 [자료15]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계획 설계와 시정부 인프라시설건설 안내도





# Section-F

## 기업 청산





F- 1

## 청산과 해산의 구별

청산과 해산은 정확히 무슨 의미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산과 해산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을 하다가 사업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해산은 위에서 언급한 ‘회사가 사업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해산에 의한 것이라면 ‘해산에 의한 청산’이 되는 것이고, 파산에 의한 것이라면 ‘파산에 의한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산을 통해 회사를 완전하게 소멸시켜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청산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만약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있을 것 같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익은 불법행위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민, 형사책임을 한국 또는 중국에 청구할 가능성이나, 세금, 노동 문제 등의 행정책임, 그리고 장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적법하게 경영해 온 사업자는 청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3

## 청산의 사유

###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1조, 제183조에서는

- ① 회사 정관상의 영업기한이 만료가 된 경우,
  - ② 회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경우,
  - ④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⑤ 회사의 영업집조가 취소, 직권말소되고 **폐업(关闭)** 명령을 받는 경우,
  - ⑥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출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 에 한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청산에 직면한 경우,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청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F- 4

## 영업집조의 직권말소와 청산

영업집조가 직권말소(吊銷)되면 자동으로 청산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집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것과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말소(注銷)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회사가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영업할 수는 없는 상태이나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말소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회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집조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 5

## 청산과 M&A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M&A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청산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던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하고자 하여 그 회사를 넘겨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는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청산을 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유,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출자자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청산을 하지 않고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처도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

대표처도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98조). 대표처 폐쇄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은 지역 및 대표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처를 폐쇄하지 않고 장래 중국에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송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처 도장이나 문건들을 소중하게 보관 또는 처리하지 못하여 영업행위 또는 있지도 않은 채권들로 민, 형사상의 문제로 사건화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처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과 꼭 상의하여 폐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F-7

## 청산비용

## 청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을 그만두는 마당에 돈까지 써가며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중국 사업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비용내역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회사가 빚이 없고 총 자산이 200만 위안인 경우, 청산비용은 '200 위안(신문광고비용) + 4,000 위안(공인회계사 사무소 보고비용. 그 기준은 총자산의 약 2% 정도. 지역과 자산에 따라 상이함) + 대리비용(대행업소 용역비)'입니다.

만약 청산비용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파산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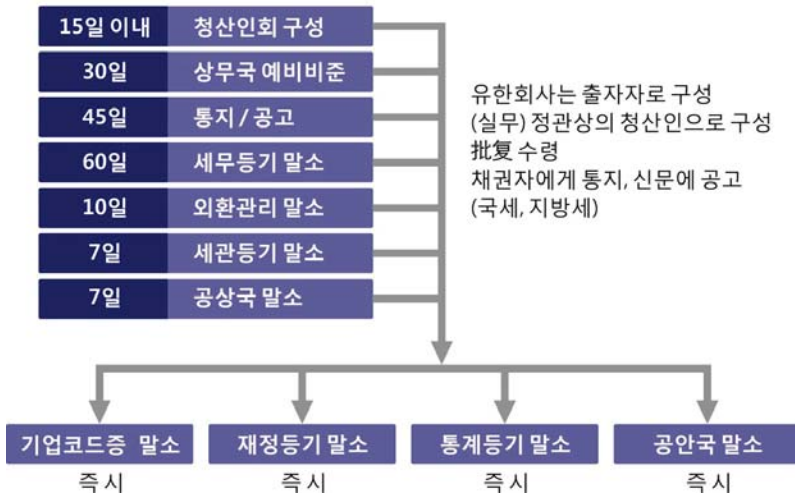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절차 진행 중 어떠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청산절차는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동안 청산인이 하는 업무는 청산재산을 정리하고 처리해서 분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만일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자료] 기업의 청산절차





주무관청과 관련된 업무는 상무국에서 비준을 받는 시간(실무적으로 약 1개월), 신문에 공고하고 기다리는 시간(45일), 세무국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시간(실무적으로 약 2개월) 및 휴무일 등을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위 도표 참조).

이처럼 중국에서의 청산업무는 주로 주무관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기간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역 및 회사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전문경영인, 변호사)에게 청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청산인은 회사형태와 청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자가 하고, 주식회사는 이사 또는 **주주총회(股东大会)**에서 정한 자가 합니다.

또한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자에 의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법 제184조**).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직원을 통해 직접 청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수가 30여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노동, 보험, 재산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우선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담을 한 후 회사 상황에 따라 전문 대행업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청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F-10

**청산재산의 처리**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청산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청산인의 관리 하에 일괄적으로 처분하여 청산비용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청산재산을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경영활동에 기한 매매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 재산을 숨기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물품은 청산인의 관리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재산처분은 중국 정부, 근로자, 채권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11

## 청산재산 변제순위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은 어떻게 배분되  
나요

파산과 달리 청산의 재산변제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법 제187조에 따라 우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청산회사를 관리하는데 지출했던 청산비용부터 갚고, 그 다음으로 직원들 급여를 준 다음에 직원들 계좌로 이체하여야 할 기본보험료(기본의료, 기본양로)를 지급하고, 법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돈들, 그리고 밀린 세금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줄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파산비용도 못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청산과 세금반환

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받아 온 세제혜택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한국기업이 장려업종, 생산성 기업, 첨단기업, 특구지역 등에 의하여 그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2면3감반(2년 동안 세금을 면세 해 주고, 3년 동안은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면세설비가 들어온 일자로부터 5년 미만이고 관세 등의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세, 감면 받은 세금을 모두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산 전까지 누려온 위와 같은 세제혜택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반환할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F-13

## 체불금의 변제와 청산종료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꼭 갚아야 청산이 완료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회사법 제187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 처분하여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체불된 세금, 회사채무 등을 갚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서 위의 사항을 갚으시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회사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줄 돈마저도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정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되고, 청산도 완료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F-14

## 청산절차 중 출국여부

회사의 관계자들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갈 수 없나요?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즉 회사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통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 운영하다가 단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여 그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근로자가 회사관계자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중국 헌법 제37조와 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 감금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청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청산회사의 특정인들을 감금하거나 물리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와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중국 사법기관 및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16

## 파산, 회사정리, 화의

### 파산, 회사정리, 화의란 무엇인가요?

파산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나서서 그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공평하게 빚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청산에 있는 회사가 뚜껑을 열어보니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개입되어 모든 것을 처리하므로 우리기업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정리(重整)** 또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약,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의(和解)**는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빚을 갚는 시기와 금액 및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회생을 도와 주자는 취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법정관리, 화의, 파산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여부가 곤란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F-17

## 채무초과와 형사책임

빛은 많고 갚을 돈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  
나요?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빛이 많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은 파산제도를 마련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재산보다 빛이 많으면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많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산과 파산제도를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18

## 청산과 중국 정부기관의 협조

중국 정부에서 청산, 파산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몇 년전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일부 한국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자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기업들의 청산절차 진행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우리기업이 해산에 의한 청산이나 파산사유에 의한 청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한다면 중국 정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무관청에서 청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또한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사정리시 퇴직금 처리



회사를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사를 정리하면서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법 제44조 (5),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노동자의 급여와 경제보상금, 밀린 사회보험금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보상금의 계산방식은 노동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연한 중 근무연한 1년당 1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로,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0.5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노동국에서 노동자 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Section-G 부동산과 생활

Section-H 세금과 생활

Section-I 민법과 생활

Section-J 민사소송법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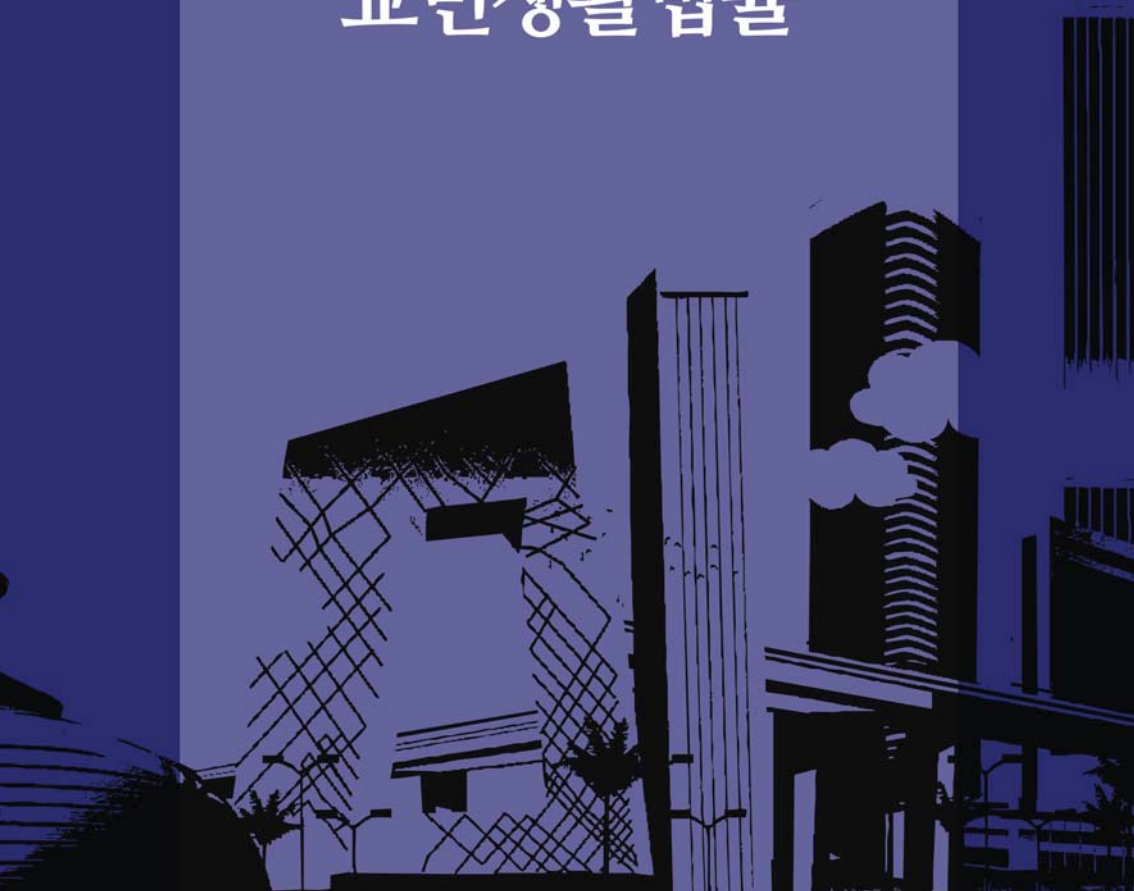
Section-K 형법과 생활

Section-L 형사소송법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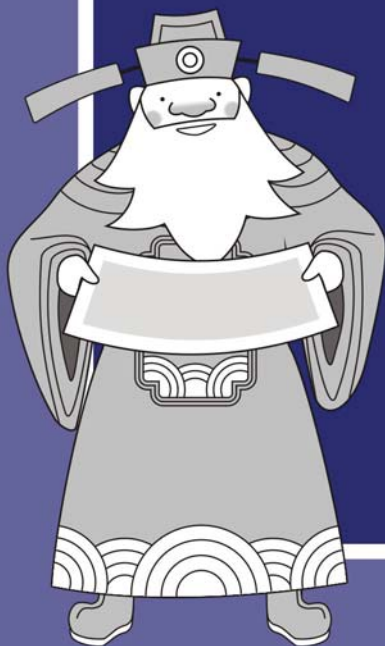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Part2

# 교민생활법률



## Section-G

# 부동산과 생활





G-1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영업,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등기를 안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제4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나 수권을 받은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기한부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도 주택임대차계약은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기한 내(일반적으로 입국 후 24시간 내 또는 장기 거주지를 변경한 후 24시간 내)에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5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숙등기는 주택 소재지 관할파출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G-2

###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기간

임차료로 55,000 위안/1개월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계약법 제215조).

이와 같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32조)

따라서 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얼마 전 베이징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아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불법건축물 혹은 임시건축물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대(재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부동산 소유자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자가 전대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동일 부동산의 이중임대(一房兩租)'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③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임대인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해야 함)과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매번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⑤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제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부동산 인도시 부동산 내부의 가구 종류,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⑦ 부동산 또는 주택 내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법 제52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3조에 의하면 ‘어떠한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금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한 결정은 무효이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세금 납부조항은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조항은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인 소유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G-5

##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는데(도시부동산관리법 제54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商品房屋租赁合同管理办法) 제13조).

만일 위 기간 내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1천 위안 이하, 회사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판법 제23조).

임대차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기층관리서비스센터(服務站)(실무적으로 지역마다 다름)에서 건물임대등기를 해야 합니다.(북경시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北京市房屋租赁合同管理若干规定) 제8조).



또 위 절차에 따라 건물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0 위안 ~ 500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동 규정 제28조 제1항).



G-6

##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위 사안의 경우처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회사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회사를 설립하여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에 지출되는 비용을 반감하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의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하신 후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법 제219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 제11조).

##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나요?

계약법 제229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선매수권(우선구매권)이 있습니다(동법 제230조). 실무에서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3개월 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제118조).

만약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동 건물매매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 의견 제118조). 단, 실무적으로는 건물매매 후 명의변경을 미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그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그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면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G-8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C씨로부터 200만 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도시 건물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20조에서는 임대기간 중 임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임차인이 건물 매수인에게 임대계약의 지속을 요구하는 경우 건물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① 임대하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고,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현으로 임대건물이 매각된 경우

② 임대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이미 인민법원으로부터 압류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물매수인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C씨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위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체결시 B씨가 A씨에게 담보설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9

## 아파트 전대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 위안인 아파트를 전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와서 자기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세(转租)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계약법 제224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 제11조 제2항). 또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동판법 동조 제1항).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임대건물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10

##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법 제221조에서는 ‘임대물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고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물의 수리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에 상응하게 감면하거나 혹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집)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집을 사용, 수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 정도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안의 벽이 갈라졌다고 하였는데 벽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수리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자세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2009년 2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자기 거주목적으로 주택(商品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10조).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은 공안국 출입국관리국(公安局出入境管理处)에서 발급한 ‘외국인 국내 거류상황증명(境外个人在境内居留状况证明)’으로 증명할 수 있고, 외국인은 자기거주 목적으로 1인 1주택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 기관과 개인의 주택구입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境外机构和个人购房管理的通知) 제1조).

따라서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거주목적에 한하여 1인당 1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G-12

###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도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거용 주택 구매자격 확인

중국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기관과 외국인에 한하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기관이 중국에 설립한 지사와 대표처,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 중인 외국인은 상품주택에 한하여 자가 거주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개발회사가 국유 토지사용증, 건설용지계획허가증, 건설공사계획허가증, 건설공사시공증, 주택예매허가증 등을 취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는 주택품질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권리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표준계약서(模範合同)**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도시의 건설위원회 공상관리부문에



서는 상품방 매매계약 시범문서(商品房买卖合同示范文本)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개발회사와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분양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만약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전의 성격이 계약금(定金)인지 아니면 선금금(订金)인지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면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2배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② 개발회사로부터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상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약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부동산 사용면적, 건축면적, 공용면적과 부동산 인도시기 및 예상 인도조건, 그리고 관리비, 위약책임 및 입주조건, 부동산 보수기간 등입니다.

③ 계약서에 부동산 권리증 이전절차와 이에 대한 지연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④ 쌍방이 부담하는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의 면적, 소유권, 대금지급방식, 지급기간, 면책조항 등에 대한 보충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충협약서는 흔히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에게 더욱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G-13

부동산 이중매매

병은 A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A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을에게 경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부동산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경로되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게 됩니다.

즉 등기가 없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전등기를 먼저 경로하는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을이 먼저 등기를 경로하였으므로 을의 소유권취득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은 병(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을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라면 갑은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G-14

## 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부동산 개발회사가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시점이 약정한 기한보다 6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거나 최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만약 매매계약서에 아파트 열쇠를 어느 시점까지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약정해제권 조항에서 위 인도시점을 초과한 경우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개발회사에 건물열쇠의 인도를 최고하고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법 제94조).

따라서 계약서상에 약정해제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G-15

## 부동산 허위광고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애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 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이 부동산 개발 구획 내의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건물가격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주택매매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3조 제1문).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 광고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판매광고에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분양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주택판매관리판법 제15조).

따라서 관련 설명과 약정이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디



라도 이를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 해석 제3조 제2문).

그 결과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G-16

# 부동산 등기대행

김사장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본사 발령에 따라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부동산 등기대행을 위임할 수 있나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 ① 등기신청서,
- ② 신청인의 신분증,
- ③ 건물 소유권 증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
- ④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수증증명서, 분할협의서 등 건물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⑤ 기타 필요를 요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등기판법 제33조).

특히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며(동 판법 제15조 제1항), 대리인이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동조 제2항).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사에게 등기대행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경우, 등기시 서면의 법률검토와 세금문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  
동  
산  
과  
생  
활



G-17

인테리어 보수기간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 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기간인 4개월이 지났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나 가게 등을 인테리어 할 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보수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아예 하자보수조항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률규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서 주택 실내 인테리어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최소 2년이고, 방수를 요하는 주방, 화장실, 외벽의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주택 실내 인테리어 및 내장 관리판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제32조).

위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에 하자보수기간을 4개월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항은 법률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인 조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G-18

아파트의 양도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등기를 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물권법 제9조), 건물권리등기증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38조 제6호).

하지만 중국에서는 건물권리등기증 발급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위 등기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건물권리등기증을 수령하는 시점에 명의변경을 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공증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양도인, 양수인, 부동산 개발회사 3자가 참여하여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19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

결혼 후 부부명의로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인이 한국에 들어간 사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만약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일방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됩니다. 특약이 있거나 일방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공동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각 공유자의 서면동의를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38조 제4호).

부부는 공유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과 지분권을 가지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일방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 간주됩니다(민법통칙 집행의 관철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제89조 전단).





## 압류부동산의 매매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보전처분에 들어가 매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재산보전처분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나요?

소송을 함에 있어서 장래 또는 현재의 재산을 이전, 은닉,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타 객관적 정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합법권익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임박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부동산관리법 제38조 제2호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부동산의 압류를 판정, 결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권리의 제한’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재산보전처분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의 조치에는 봉인(查封), 압류, 동결 또는 법륵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94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된 재산보전처분 목적물(이 사안의 아파트)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G-21

## 부동산 등기사항 조사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등기를 부동산 권리의 가장 가장 유력한 증명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증명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권리인에게 발급하여준 권리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권리증명문서의 권위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짜 부동산 증명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으로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보시고 관련 부동산 등기부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저당부동산의 변제방법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은 을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갑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하여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갑과 을이 아파트 처리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갑은 물권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에 저당물의 경매, 판매를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G-23

토지용도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 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철거해야 하나요?

중국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업용지, 건설용지, 미이용지(未利用地)로 나뉩니다.

① 농업용지는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경지(耕地), 임지(林地), 초지(草地), 농경지 수리시설 용지(农田水利用地), 양식수면(养殖水面) 등을 포함합니다.

② 건설용지는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도농(城乡) 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업·광업(工矿)용지, 교통·수리 시설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을 포함합니다.

③ 미이용지(未利用地)는 농업용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킵니다(토지관리법 제4조).

따라서 별장은 농업용지가 아닌 건설용지에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용지에 별장을 지으려면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를 건설 용지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장을 지었다면,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6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시행착오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증서(國有土地使用證, 集体土地使用證)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전문가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G-24

## 토지 사용기간

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국에서 토지사용기간은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讓金)을 지급하고,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출양해주는 기간을 가리킵니다(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양도 잠정조례 제8조). 토지사용권의 출양기간은 토지용도에 따라 5종류로 나뉘며, 그 기간은 최단 40년에서 최장 70년에 달합니다.

## [G자료1] 토지용도에 따른 토지사용권 출양기간

토지용도	출양기간(년)
거주용지	70
공업용지	50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용지	50
상업·관광·오락용지	40
종합 또는 기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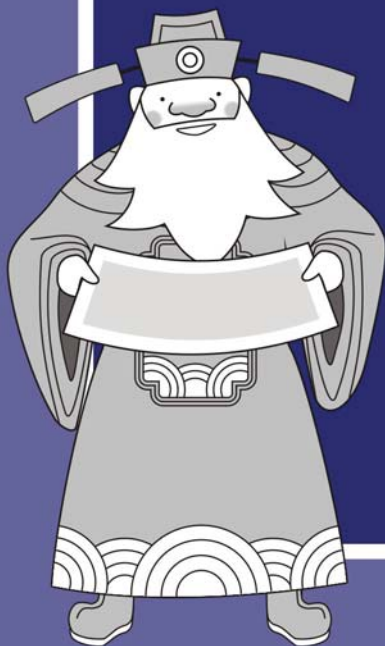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따라서 90년대에 지은 상가를 구입하셨다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은 약 20여년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에 따라 양도, 임대, 매매에 따른 각각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да 하겠습니다.

# Section-H

## 세금과 생활







## H-1

###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 주재하는 대부분의 한국근로자는 양국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즉, 한국에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중국에서는 생활비 정도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중국 세무국이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협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에서 파견한 임직원 등의 중국 체류기간이 12개월의 기간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급여 등 대가를 중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그를 대신해서 지급하거나,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중국 내에 설치한 지점이 당해 급여를 경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 체류기간 183일 초과 여부와 급료 지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H 자료1] 한중 조세협약상 체류기간 및 지급자에 따른 면세 요건**

체류기간	급료 등 부담(지급)자	중국에서 과세여부
183일 이하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	×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거주자)	○
183일 초과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	○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거주자)	○

다시 말해 만약 1년 중 중국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한국에서 받은 임금과 중국에서 받은 임금 모두를 중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만약 1년 중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비록 중국에서 근무한 대가일지라도 한국에서 지급되고 중국 내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급료를 국내 본점이나 모법인이 일부 지급(부담)하더라도 당해 급여의 원천은 중국에 있으며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국에 있는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이 임직원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 신고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입니다.



## H-2

## 한중 겸임근무자의 개인소득세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 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표처의 수석대표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출장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3일 미만 거주자 : (당월 중국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중국 내 소득/ 중국 외 소득) × (중국 내 체류일수/ 당월일수)

183일 이상 거주자 : (당월 중국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1-(중국 외 소득/ 중내,외 소득) × (중국 외 체류일수/ 당월일수)}

\* 关于在中国境内担任董事或高层管理职务无住所个人计算个人所得税适用公式的批复



위 계산공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세무국은 그 수석대표의 여권을 1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까지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 입국일자와 출국일자를 모두 계산해서 중국 내,외 임금 과세소득을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합니다.

이때 중국내, 외 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석대표가 현지고용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현지고용은 임금도 주재원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세무국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할 세무국은 해당국가 대표처의 수석대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에서 일정기간 또는 모든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거주한 일자와 중국에 출장 나온 일자에 따라 각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중국 세무기관과 한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국의 내부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각 나라별, 기관형태별, 직책별 임금기준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후 대표처를 폐쇄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등기 말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처를 설립하는 각 지역의 임금인정기준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H-3

## 공연예술인의 개인소득세

한국인 아이돌 걸그룹이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한중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르면 예능인 및 체육인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등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 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중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돌 그룹이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1회에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정하여 가산 징수합니다(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 11조).

## [H자료2] 일시소득 가산 징수율

1회 소득 (RMB)	세율(%)	간이공제수
20,000 이하	20	0
20,000~50,000	30	2,000
50,000 초과	40	7,000

또한 서비스 소득이 1회에 4,000 위안 이하이면 800 위안을, 4,000 위안을 초과하면 20%를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그룹이 공연으로 취득한 소득이 5만 위안일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 수입이 4,000 위안을 초과하므로 1회 수입의 과세소득액  
20% 비용을 빼야 합니다.

$$1\text{회 수입의 과세소득액} = 50,000\text{ 위안} \times (1-20\%) = 40,000\text{ 위안}$$

② 1회 수입의 과세소득액이 20,000 위안을 초과하므로 세율은  
30%이고 간이공제수는 2,000입니다.

$$\text{개인소득세 납부세액} = 50,000 \times (1-20\%) \times 30\% - 2,000 = 1\text{만 위안}$$

따라서 공연료로 5만 위안을 받은 경우, 개인소득세 1만 위안을 납  
부한 후 한국으로 이익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의 공연용역은 문화체육업 중 공연(表演)에 해당되므로  
공연수입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영  
업세 세율은 3%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영업세} = [\text{매표수입} - (\text{공연장소를 제공한 회사, 공연회사, 매니저  
경비 등 제비용})] \times 3\%$$

예를 들어, 공연 매표수입이 10만 위안이고 공연회사, 매니저 등 소  
요경비가 4만 위안일 경우,

$$\text{영업세 납부세액} = (10\text{만 위안} - 4\text{만 위안}) \times 3\% = 1,800\text{ 위안}$$

입니다.



H-4

중국 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중국에서 납부된 세금을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个人所得稅法)**에 따르면 주소는 없으나 중국에 거주한 지 만 1년이 된 개인은 무한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한 지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통상 주재원 이에 해당함)의 국외 소득은 주관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친 경우 중국 내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 내에 거주한 지 5년이 넘는 개인은 6년이 되는 때부터 국  
내 및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





H-5

국외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국외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외국소득세액이란

-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그러나 외국소득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제액은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세액공제한도}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text{국외근로소득금액} / \text{근로소득금액})$$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중국 내에서 차량을 구매, 수입, 상품획득, 수증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자는 그 구입차량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1회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재산세보다는 행위세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외교관, 장기거주의 외국전문가(전문가증 소유) 등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주재원은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취득세의 세율을 10%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량취득세 잠정조례(车辆购置税暂行条例) 제4조, 제5조).

차량취득세 = 과세표준가격 × 세율

과세표준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예를 들면, 제조업체를 설립한 회사가 2011년 2월초에 화물차 2대를 구입하고 차량구입대금으로 20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면 위 회사



의 차량취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차량취득세 납부세액} = 200\text{만 위안} \times 10\% = 20\text{만 위안}$$



H-7

증여세

한국 거주 부모가 중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및 중국 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및 중국에 소재하는 재산 모두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중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중국 법령에 의해 중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3천만원(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음



## H- 8

### 무상증여

김모씨는 빛도 갚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기 위해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모씨가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일반 아파트 매매에 따라 김모씨는 영업세를, 최모씨는 **계세(契稅)**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세는 5%, 계세는 3%, 개인소득세는 20%, 인지세는 0.5% 입니다.(2011년8월 천진시 표준)

단, 김모씨가 위 아파트를

①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②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피부양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③ 김모씨의 법정상속인이나 유서승계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등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세됩니다(개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주택과 관련한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个人无偿受贈房屋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 제1조).



## H-9

### 무상증여시 영업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영업세를 내야 한다던데 맞나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승계, 유산처분 및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승계권 공증서, 유서승계권 공증서, 증여계약 공증서 등 증명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영업세 면세신청을 하면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영업세가 면세되었습니다.

즉, 기존 영업세의 조건은

- ①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중국내에서 발생해야 하고,
- ② 거래행위가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속하여야 하며,
- ③ 거래행위는 반드시 유상 또는 유상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영업세잠정조례(營業稅暫行條例)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간주매출)에 포함되어 영업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H-10

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중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4년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구입하였던 아파트를 팔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영업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일 경우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가 면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외국인도 위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보통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증치세와 인지세가 면세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보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주택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치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가격 및 납부한 세금지급 증거, 즉 매매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말하며, 합리적인 비용이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 주





택 대출이자, 수속비, 공증비 등을 가리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매매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유형 및 구매연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H 자료3] 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세목	세율	세액계산공식	비고
영업세	5%	(판매가격 - 구입가격) × 5%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면세
개인소득세	20%	(판매가격 - (1)원가치 - (2)합리적인 비용) × 20%	거주기간 5년 이상, 1주택인 경우 면세 단, 원가치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판매가격의 1%를 내야 함



## H-11

### 일반주택 매매시의 세금

한국인 김모씨는 201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70㎡ 아파트를 80만 위안(세금포함, 정식 영수증 있음)에 매입하고, 5만 위안을 지출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2011년 7월 100만 위안에 최모씨에게 매도하였다면 김모씨와 최모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김씨(매도인)는 영업세, 개인소득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최씨는 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중 김씨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① 영업세 : (판매가격-구입가격) X 5% = 1만 위안(개인거주용 주택 구매 5년 이상일 경우 면세),

② 개인소득세 : (판매가격-원가치-세금-합리적인 비용) X 20% = 27,740 위안(원가치 증명이 가능한 경우).

또는 판매가격 X 1% = 1만 위안(원가치 증명이 어려운 경우)

③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 (판매가격-구입가격) X 0.65% = 1,300위안으로서 전부 합하여 21,300위안입니다.

반면, 최씨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매매가격 X 1% = 1만 위안입니다.(개인이 구매한 90평 이하의 보통주택으로서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 1%로 징수합니다.)

\* 참조 : 关于调整个人住房转让营业税政策的通知(财税[2011]12号)

关于调整房地产交易环节契税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0]94



## H-12

### 영업세 과세기준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다시 판매하면 영업세를 내야 한데, 2006년 6월에 아파트 구입에 따른 계세를 납부하고, 2008년 10월에 아파트권리등기증을 수령하고 2011년 7월에 다시 판매한다면 구입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상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선 계세를 납부하고, 차후에 건물권리등기증을 수령합니다.

만약 위 두 문건의 일자가 다를 경우, 빠른 일자를 그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즉, 계세 완납 증명서의 일자가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계세 완납일자로,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가 계세 완납 증명서의 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국가세무총국,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 중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房地产税收政策执行中几个具体问题的通知>) 제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06년 6월에 계세를 완납하였고,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년 7월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 거주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



个人住房转让营业税政策的通知》 제1조).

단, 위와 같이 보통주택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非보통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후 5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에 부동산 매매시 영업세율 5%를 곱한 금액만큼을 영업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H-13

## 아파트 임대와 세금

북경 왕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5,000위안/ 1개월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씨는 임대료의 37%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최씨에게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나요?

임대료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로부터 수익을 얻는 임대인의 의무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상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영업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도시토지사용세, 건물재산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북경, 상해, 남경, 천진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술한 세금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종합세율에 따라 종합세 한 가지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율은 각 지방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방의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세금의 부담은 임대인인 김모씨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인 최씨는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H-14

## 전대시 세금

김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5,000 위안에 임차한 아파트를 최모씨에게 5,000 위안에 전대하려고 하는데요. 차액 수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영업세는 영업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대할 때 전대료 역시 영업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전대시 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아파트를 전대할 경우 전대인은 전대료를 근거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이에 대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주관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대인인 김모씨는 영업세  $1,500 \text{ 위안}(5,000 \text{ 위안} \times 6 \text{ 개월} \times 5\% = 1,500 \text{ 위안})$ 을 납부해야 합니다.



## H-15

### 도시토지사용세

북경(세액 10위안)의 토지를 김모씨와 최모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은 1,500㎡이며, 김모씨가 사용하는 면적은 1/3, 최모씨는 2/3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토지사용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도시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는 도시, 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입니다(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 제2조).

[H 자료4] 도시토지사용세 세액표

구분	세액	비고
대도시	1.5 ~ 30위안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
중도시	1.2 ~ 24위안	인구 20만명 ~ 50만명
소도시	0.9 ~ 18위안	인구 20만명 이하
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0.6 ~ 12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소재지: 현 인민정부 소재지</li> <li>○ 건제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건제진</li> <li>○ 공업광산구: 공업과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고 인구가 비교적 집중적이고 국무원에서 규정한 건제진 기준에 부합하나 진건제를 설립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대중형 공업광산기업의 소재지</li> </ul>

\* 납부세액의 계산 = 실제 적용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 X 적용세액

\* 참조: 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 제4조



위 납세의무자와 세액표에 따라 몇 명의 개인 또는 몇 개의 단위가 토지의 사용권을 공유한 경우 그 토지의 도시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 또는 그 단위입니다.

그들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총면적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각각 도시토지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모씨는 연간 5,000 위안( $500\text{m}^2 \times 10$  위안)을, 최모씨는 연간 10,000 위안( $1,000\text{m}^2 \times 10$  위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16

## 증치세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당기간 내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증치세는 유상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한 단위와 개인이 취득한 수입 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를 말합니다(토지양도증치세 잠정조례 제2조, 제4조).

부동산의 저당이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채무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되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재산권, 토지사용권이 저당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재산권소유자, 토지사용자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재산권소유자, 토지사용자가 비록 저당기간 내에 일정한 저당대금을 취득하나, 실제적으로 이 대금은 저당기간 만료 후 원본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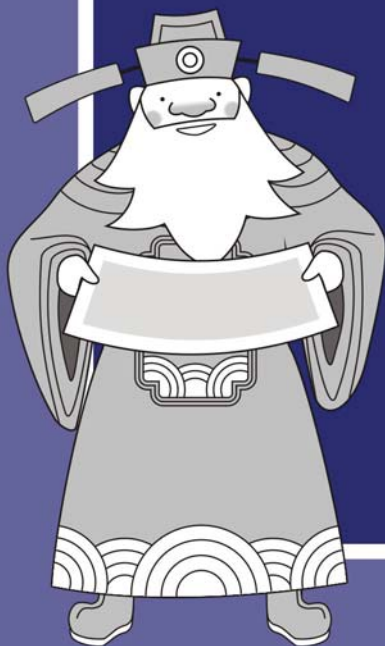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따라서 부동산 저당의 경우 저당기간 내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당기간 만료 후 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치세의 징수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증치세는 부동산 양도로 얻은 수입(과세대상수입), 공제항목(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 부동산개발원가, 개발비용 등),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세부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양도차익과 공제항목금액의 비율, 간이 공제계수 등 납부세액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Section-I

## 민법과 생활





I-1

## 신의성실의 원칙

A는 B에게 식당을 120만 위안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그 지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수수료, 환율 등의 문제로 3천 위안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요?

채무자인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었을 때 채권자인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고기간 내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해제권을 갖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B는 이행 약정일에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지급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부족액에 대하여 B가 불가항력, 동시이행항변 등 기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므로 A는 당연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대금 120만 위안 중 미지급액이 불과 3천 위안인 근소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채권자가 특별히 손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측의



경미한 하자 또는 근소한 지체만을 이유로 해제권 기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A의 계약해제권은 신의칙에 비추어 부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매매의 목적인 식당을 B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것은 B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I-2

###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중국에서 16세 미성년자 명의로 은행통장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우선 중국 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미성년자가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중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중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 본인의 호적부를 지참하고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은행에서 미성년자의 은행계좌 개설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2)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중국 내에서 은행계좌 개설시 통상 여권을 신분증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또는 법정대리인) 없이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의 명의로 직접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실무상 처리방법이라고 합니다.



I-3

강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중국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 하니 터무니없는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2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요?

합의서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의 진실한 의사의 표현이어야 유효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술값인 2만 위안이 어느 정도 불합리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 술값보다 현저히(예컨대 몇 십배) 비싼 가격이라고 할 경우 계약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합의계약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성립시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계약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동조에 따르면 만약 계약과정에 사기, 협박 혹은 타인의 위험한 처지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진실한 의사와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도 손해를 입은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

소멸시효

제 친구는 1년전 중국인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국인은 지금까지도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친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민사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정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자의 침해된 권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의 소멸시효 제도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일반 소송시효와 특별 소송시효로 구분되고 특별 소송시효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일반 소멸시효로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사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체상해, 상품판매, 부동산 임대, 위탁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6조).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3년(환경보호법 제42조), 외국과의 무역이나 기술 수출입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4년(계약법 제129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그 손해발생을 알아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통칙 제137조).

따라서 의뢰인의 친구분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치료비 등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5

**차량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증이 없으니 제 명의로 외제승용차를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차량을 수입하게 되면 발생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우선,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정(机动车登记规定)**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차량관리소에 수입자동차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상 상담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차량관리소에 등기를 거치게 되면 자동차등기부상 수입자동차의 소유인은 상담인이 됩니다.

또한 **물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기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당해 수입자동차의 자동차등기부상 소유인으로서 당해 수입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타인의 차량구매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실제소유자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외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차후 차량의 실제소유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이 중국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합의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제소유자가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상담인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I-6

### 위약금

저는 중국인 A모씨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 후 나머지 잔금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이에 A모씨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지체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의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법 제114조에서는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예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으며 손실을 배상하는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손실보다 많을 경우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계약의 이행상황, 당사자의 과실 정도 및 예상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의 30%를 초과할 경우, 손실보다 과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법 적



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9조 제2항).

위 사례에서 지체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는 은행의 연체이자에 따른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7

## 채권자 취소권

A씨는 B씨에게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변제일이 다가오자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400만 위안짜리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씨에게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의 저가 매각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법 제74조는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구매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는 시가 400만 위안짜리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였고 이는 불합리하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저가라 함은 당시 시가의 70% 이하를 말합니다).

또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위 매각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A씨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또 구매자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인 A씨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인민법원에 B가 행한 매각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위 매각행위를 무효로 선언하게 됩니다(계약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 제25조).



I-8

변제의 방법

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개월 기간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가운데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를 안심시킨 뒤 변제기일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공탁(提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탁이란 채무자 또는 담보설정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부한 채권 목적물 또는 담보물을 공증기관에 임치하고 조건이 완성되는 때에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공증규칙(提存公证规则) 제2조, 계약법 제101조).

위 사안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증기관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5조).

따라서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귀하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되므로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9

부동산 매매의 무효 여부

한국인 A는 北京에 있는 상가를 중국인 B에게 270만 위안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상가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 근처 상가와 비교하니 평당 3천 위안을 더 주고 샀다’고 하면서 당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통칙 제59조에서는 행위자가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한 경우나 또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판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매매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매매를 하는 때에 B가 그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하였고 A가 그러한 오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어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시가보다 평당 3000 위안이나 비싸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매매를 하는 때에 B가 그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하였거나, A가 그러한 오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도 B가 증명하여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사안에서 A와 B의 매매계약은 무

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정당한 계약으로 일단 생각됩니다.



민  
법  
과  
생  
활



I-10

## 불안의 항변권

A씨는 10만 위안에 B 가구공장과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당국의 현장 불시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씨는 반드시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법 제68조에서는 상대방에게

- ① 경영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경우
- ② 채무 도피를 위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은폐한 경우
- ③ 상업신용을 상실한 경우
- ④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상황

등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의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B 가구공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씨의 경우 B 가구공장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하에



서 먼저 선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A씨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자신의 선의행의무를 보류하고 B 공장에 통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B 공장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화재에 대한 책임

저는 A 소유 상가를 임차,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계약법 제222조) 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 제10조).

단, 임차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하거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31조).

따라서 위의 경우에 귀하가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라 할지라도 귀하가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사도우미의 고용

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중국인 한족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듣기에 한족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도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해고도 함부로 못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중국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계약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 형태의 고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제도는 통상 임시적이고 보조역할을 하는 특수 업종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 노무파견제도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기업·개체경제조직·非기업단위 등과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동계약을 체결·이행·변경·해제 또는 종료의 경우에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동법 제5장 제2절의 노무파견 관련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간에 노무파견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인인 사용자와 가사도우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 처리되게 되는 일반적인 민사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3

정당방위 자구행위

돈을 빌려간 B가 공항으로 몰래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자 A는 뒤쫓아 갔습니다. B의 떡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B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에서도 개인간의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법 절차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는 법률제도(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는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권리의 실력적 해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국에는 정당방위(형법 제20조) 제도가 있고,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구행위의 일부도 포함하여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국가 공공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셋째, 방위자는 제3자가 아닌 부당한 침해자로부터





터 방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막대한 부채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공안국(경찰서)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중국에서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이 정당방위로 인해 채무자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되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정당방위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I-14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 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C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A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B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 제54조에서는 진료과정 중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57조에서는 의료진이 진료과정 중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상처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C병원에서의 진찰결과를 볼 때 B의 과실 유무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환자가 이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언급한 사례와 같이 B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의료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은 추정되어 의료기관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제58조 제2호).



I-15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자 책임지는 부담부분의 비례는 통상 사건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16

## 혼인신고의 절차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 인지요?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涉外民事관계 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에서는 혼인관련 수속은 혼인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상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이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 ① 중국 배우자가 미(재)혼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② 중국 배우자는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 ③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혼인신고 등록지에 제출합니다.
  - ④ 한국 소관공무원은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⑤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공증)



을 받습니다.

⑥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⑦ 인증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⑧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파출소에서 혼인 상황만 변경하며, 결혼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① 한국 배우자는 한국에서 최근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② 한국 배우자는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③ 그 공증문서를 한국외교통상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④ 그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⑤ 한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⑥ 중국에서 중국 배우자는 결혼증 또는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을 받습니다.

⑦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관 공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⑧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소관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중국 민정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국내 장기 체



류 비자소지자는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한국측에 혼인신고  
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관할 구청에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  
의 국적공증 또는 친족관계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으로 먼  
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절차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 한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된다면 합의(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1] 한국의 이혼유형 비교

	정의	절차
합의이혼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법원 - 판사 - 관할구청 이혼 신고(3월 이내)
재판상 이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	법원 - 조사 - 조정위원회 - 판결 - 관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조정이혼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	법원 - 조정 - 합의(종료) - 관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한국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문의

이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이혼절차를 마치셨다면 이혼신고 및 판결(조정서) 등을 이혼신청 및 등기기관(街道办事处/ 민정부문/ 인민정부)에서 결혼증을 말소하고 이혼증을 발부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되었다면 합의(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2] 중국의 이혼유형 비교

	정의	절차
협의이혼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신청(街道辦事處 / 民政部門 / 人民政府) - 심사 - 이혼등기 (이혼증), 결혼증 말소
재판상 이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	법원 - 답변 - 심리 - 조정(판결) - (街道辦事處 / 民政部門 / 人民政府) 이혼등기(이혼증), 결혼증 말소
조정이혼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	조정외 개시 - 조정외 진행 - 조정외 종결 - 관할(街道辦事處 / 民政部門 / 人民政府) 이혼등기(이혼증), 결혼증 말소

이와 같이 중국에서 먼저 이혼절차를 마치셨다면 이혼등기증 및 판결(조정서) 등을 소지하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북경에 거주하는 A(한국인)는 중국인 B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중국에서 B(현 중국국적자) 명의로 사업을 하여 번듯한 집들도 장만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얼마 전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지더니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해 와 부득이 이에 응해 주었습니다. B의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한국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안의 경우처럼 분할하여야 할 재산이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가 중국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법원은 이 재판에서 혼인생활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현 재산상태, 이혼에 대한 책임의 경중, 이혼 후의 생활여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분할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혼인법 제42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의 초기에 마련한 자금의 출처, 혼인중의 각자의 수입, 혼인기간,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의 운용에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그 재산 자체를 지분비율로 넘겨 달라고 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번거로우면 재산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달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김씨는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 마음먹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만에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데, 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본건과 같은 경우 국제결혼에서 중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에 중국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녀와 부녀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본건에서와 같이 협의이혼시 우선 상담인과 배우자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서 공동재산의 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시 분할하게 되는 공동재산은 혼인등기 후 혼인존속기간인 6개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



산인 바, 두 사람의 결혼 전의 재산은 각자 개인소유로 간주되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단기간에 그친 결혼에서 재산분할문제는 크지 않지만 결혼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지게 될 위자료 문제가 더욱 클 수 있으며 중국 혼인법상 이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일방이 정신상, 육체상 받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혼시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한국인 김모씨는 중국인 이모씨와 결혼하여 이모씨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씨와 이모씨는 2년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김모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는

- ① 급여, 상여금,
- ② 생산·경영수익,
- ③ 지적재산권 수익,

④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일방의 결혼 전 재산, 일방이 상해를 입어 받게 된 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유서 또는 증여계약서상 부부 중 일방에게만 주는 재산, 일방에 한해 사용되는 생활용품, 기타 일방 소유의 재산 제외),

- ⑤ 기타 공동소유의 재산 등이 있습니다(혼인법 제17조, 제18조).

그러므로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어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부부 쌍방이 이 재산에 대한 특약(일방소유, 부분공유)이 없는 한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이모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이는 김모씨



와의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3)에서는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 후 일방 부모가 출자하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 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 준 경우, 그 부동산은 해당 자녀 개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동 해석 제7조 제1항).

둘째, 양가 부모가 함께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해 주었으나 명이는 일방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부 쌍방이 각측 부모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한국인이 중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상속법(繼承法)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법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상속일 경우 유서의 내용에 따르며 법정상속일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자녀·부모이며, 제2순위는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음에 있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 및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당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증(繼承公證)이라 함은 공증기관에서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상속공증을 받은 후 당해 공증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인증을 받고 나중에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공증 완료 후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센터(房地産交易中心)**에 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 ① 부동산권리증서
- ② 상속공증서
- ③ 상속인의 신분증명(여권, 주민등록등본)
- ④ 부동산권리등기신청서(부동산거래센터에서 제공함).

여러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아파트권리를 넘겨줄 경우 기타 상속인의 서면동의(이하 서면동의서)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 후 전술한 상속공증절차와 같이 인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출국금지제도

김모씨는 2010년 출국금지가 되어 최근까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국금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출국금지는 주로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금지는 통상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公安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인정한 피의자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公安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인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형사문제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처벌을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未해결된 민사사건으로 인한 출국금지의 경우

동법 제23조에서는 ‘인민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未해결된 민사사건이 있는 당사자는 출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未해결된 민사사건의 경우 출국금지 통지는 당해 민사사건 관할 인민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또한 <외국인과 중국공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약간의 규정> (이하 출국관련 약간의 규정) 제3조는 ‘관련 사건이 해결되기 전



에 당사자는 출국하지 못한다. 사건 및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재산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한 후 출국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당시 사건 관할 인민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를 보시고 당해 출국금지 기한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시거나 관련 통지에 명확한 기한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사건 관할 인민법원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상담인의 출국금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술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한 후 출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③ 세금채납자의 경우

〈세금채납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시관법〉 제3조는 '세무기관의 조사에 따라 세금채납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출국준비를 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채납자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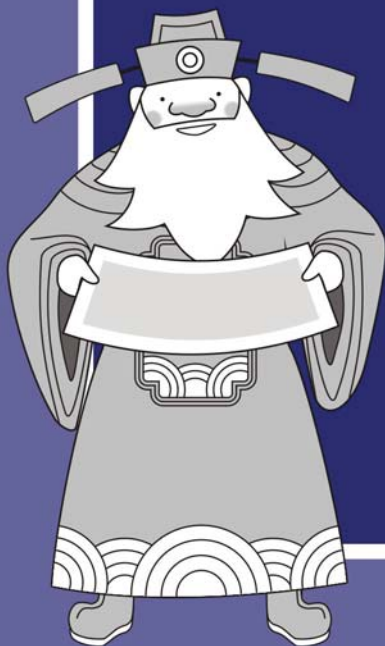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따라서 세금을 채납한 사유로 출국금지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세무기관으로부터 당해 출국금지 기한 경과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채납자의 경우에도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출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④ 기타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의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관련 임직원들이 출국금지의 통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Section-J

# 민사소송법과 생활





J- 1

법원의 조직

중국의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가 맞나요?

중국의 심판기관은 인민법원입니다(헌법 제123조, 인민법원조직법(人民法院组织法) 제1조). 헌법과 인민법원조직법에는 최고인민법원 외에 지방 각급 인민법원, 군사법원 등의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24조, 인민법원조직법 제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뉘고, 전문인민법원으로는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4급2심 종심제로서 1개의 최고인민법원이 북경에 있고, 각 省 및 직할시에 각 1개씩 총 31개의 고급인민법원이 있으며, 각 시에는 중급인민법원(총 300여개), 각 현과 구에는 기층인민법원(총 3,000여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층인민법원과 동급의 인민법정(人民法庭)이 전국에 걸쳐 약 1만 5천여개가 있는데 이곳은 최소 3명 이상의 판사(審判員)가 있는 상설재판소로서 민사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



정을 둘 수 있고(동법 제18조), 중급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정을 둘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6조, 제60조).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급2심 종심제란 민사사건이 위와 같은 4급의 인민법원에서 두 심급의 심리를 거쳐 종결을 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4급의 인민법원은 모두 1심으로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직근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단심으로 종결됩니다.

2심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고급인민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는 민사사건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급의 확정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법률전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2심 종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자 현실상황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J- 2

### 민사소송의 절차

북경에 살고 있는 B는 친구 A가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탁하므로 60만 위안을 빌려 주었으나 A가 좀처럼 갚지 않았습니다. B는 소송을 해서 돌려 받고 싶은데 그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재판을 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소송을 진행하여 나가는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한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줄거리를 설명하면, 만약 그 사건이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입안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가 종결됩니다.

만약 그 사건이 보통절차(1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자료1] 중국의 보통절차(1심)

절차	내용
① 소제기 (민소법 제109조)	법원에 소장 제출, 피고의 수에 따라 부분 제출, 구두로도 가능
② 소제기의 심사와 입안 (민소법 제12장)	법원(立案庭)은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입안(立案)함
③ 심리전 준비 (민소법 제12장 제2절)	가. 소장부분과 답변서 부분의 송달 : 법원은 피고에게 5일내(입안) 소장부분 송달 : 피고는 법원에 15일내(송달) 답변서 제출 : 법원은 원고에게 5일내(답변서) 피고의 답변서 송달 나. 소송권리의무와 합의정 구성원의 고지 : 구성원의 회피신청권 행사 다. 증거제출시한의 지정 및 증거의 교환 라. 소송자료의 심사와 필요한 증거의 수집 마. 당사자의 추가
④ 개정심리	가. 개정준비(민소법 제122조, 제123조) : 개정 3일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에게 통지 나. 법정조사(민소법 제124조) 다. 법정변론(민소법 제127조) 라. 평의와 판결선고(민소법 제128조): 조정불가 시 마. 법정조서(민소법 제133조): 서기원의 기록서 바. 심리의 연기(민소법 제132조) 사. 심리종결기한(민소법 제135조): 6개월내(입안) 종결
⑤ 소취하	그 허가여부는 법원이 재정(裁定)함(민소법 제131조)
⑥ 결석판결	민소법 제130조, 제131조
⑦ 반소	민소법 제52조, 제126조, 제108조
⑧ 소송중지와 종결	가. 소송중지의 사유(민소법 제136조) 나. 소송종결의 사유(민소법 제137조)
⑨ 판결, 재정, 결정	가. 판결(민소법 제138조) 나. 재정(민소법 제140조) 다. 결정(민소법 제47조, 제76조, 제105조)



중국에서도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이 3명 또는 그 이상의 홀수로 합의정(合议庭)을 구성하여 재판하고, 단독사건은 판사 1명이 혼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4급(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법원은 모두 1심으로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위 4급의 인민법원은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사건수리비(案件受理费), 신청비, 기타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소송비용납부판법(诉讼费用交纳办法) 제6조). 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2] 소송비용 납부방법

### (1) 민사소송청구비용

(단위: 위안)

		조건	비용
이혼			50 ~ 300
	20만원<재산분할금>		(50 ~ 300) + 0.5% 재산분할금
이혼 성격권, 상소권, 초상권, 명예화 및 인격화	손해 배상 관련	배상금액≤5만	
		5만<배상금액≤10만	(100~500) + 1% 배상금액
		10만≤배상금액	(100~500) + 0.5% 배상금액
기타 비재산사건			50 ~ 100
노동분쟁			10
지적재산권 민사			500 ~ 1,000
	분쟁이 있는 부분		재산사건 접수비용 기준
상표, 특허, 해상행정			100
관할권 이의			50 ~ 100
재산사건	소송가액≤1만		50
	1만<소송가액≤10만		2.5%
	10만<소송가액≤20만		2%
	20만<소송가액≤50만		1.5%
	50만<소송가액≤100만		1% 소송가액
	100만<소송가액≤200만		0.9% 소송가액
	200만<소송가액≤500만		0.8% 소송가액
	500만<소송가액≤1,000만		0.7% 소송가액
	1,000만<소송가액≤2,000만		0.6%
판결, 재정, 조정 및 집행 신청에 관한 승인 및 집행건	2,000만<접수비용		0.5%
	집행비용=0		50 ~ 500/건
	집행비용≤1만		50/건
	1만<집행비용≤10만		1.5%
	50만<집행비용≤500만		1%
	500만<집행비용≤1,000만		0.5%
	2,000만<집행비용		0.1%
	미등기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기준에 따름		



(2) 지급명령 신청비용

(단위: 위안)

항목	조건	비용
지급명령 신청사건		재산사건 접수비용 기준의 1/3

(3) 가압류 비용

(단위: 위안)

항목	조건	비용
지급명령 신청사건	가압류 금액 ≤ 1,000	30/건
	1,000 < 가압류 금액 ≤ 10만	가압류 금액 1% ≤ 5,000
	10만 < 가압류 금액	가압류 금액 0.5% ≤ 5,000

(4) 기타

합의방식으로 종결	합병 처리시	접수비용 반감함
소송취하		
간이절차		
피고가 제기한 반소		
독립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가 제출한 본안과 관련된 소송청구		
재산사건 상소		1심 판결 불복 부분의 상소 청구액을 기준으로 함
소송비용납부판법 제9조에 따른 재심안건		재심 청구액을 기준으로 함

재판은 개정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측(원고)과 소송을 당한 상대방측(피고)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고 법관이 쌍방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위 사례의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것이 증명될 계약서, 차용증서라든가, 제3자의 증언)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재판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1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2심제라고 하여 2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앞에서 설명한 민사사건의 구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심의 재판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 ① 최고인민법원(1심으로 종결)
- ② 고급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
- ③ 중급인민법원 - 고급인민법원
- ④ 기층인민법원 - 중급인민법원

상소하려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2심까지 다투었는데도 소송에서 졌을 때 그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게 되고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확정판결).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그 판결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소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B는 A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환가처분을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A가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J-3

## 소장의 작성

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押金)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은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나 사실상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예는 거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입니다. 그 외

- 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③ 부속서류의 표시
- ④ 연월일
- ⑤ 법원의 표시

등의 사항을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분을 송달하면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심이 종료된 후 당사자 일방이 판결내용에 불복하면 상소를 하시면 됩니다.



J-4

변호사의 보수기준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사건의 성질과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의뢰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처음에는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소송의 실비, 예컨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별도이고, 멀리 있는 법원에 가야 할 때에는 별도로 갈 때마다 여비, 숙박료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사례금을 지급합니다(사례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합니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수취 관리판법(律師服務收費管理辦法)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정부지도가격 + 시장조정가격에 따라 책정하고, 재산관계의 민사사건은 리스크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때에는 착수금 + 사례금 또는 일시불, 후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동 판법 제6조에서는 정부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증감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무부처와 각급 사법행정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경의 경우 2010년 5월 30일부터 북경시 변호사 소송대리서비스 비용수취 정부지도가격 기준(北京市律师诉讼代理服务收费政府指导价标准(试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경시의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3] 북경시 변호사 소송대리 비용 수취 정부지도가격 (북경시 기준)**

	위임사무별	변호사 보수
형사	수사단계	2,000 위안 ~ 10,000 위안
	심사 공소단계	2,000 위안 ~ 10,000 위안
	2심, 재심, 신소, 자소안건	4,000 위안 ~ 30,000 위안
민사	건당	3,000 위안 ~ 10,000 위안
	소가 10만 위안 이하	10%(최저 3,000 위안)
	소가 10만 위안 ~ 100만 위안	6%
	소가 100만 위안 ~ 1,000만 위안	4%
	소가 1,000만 위안 이상	2%
행정소송 시간제	건당	3,000 위안 ~ 10,000 위안
	유효업무시간 기준	100위안 ~ 3,000 위안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분관계, 수입경위, 위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중국은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정한 선에서 변호사 비용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5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인 A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1심 사건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소송비용납부판법 제29조). 그 부담비율은 승소의 형태에 따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4] 소송비용의 부담방식

상황별	부담자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경우	각 당사자가 비례하여 부담
조정을 거쳐 협의한 경우	쌍방 협의/ 미협의를 법원 결정
소(상소)를 취하한 경우	사건수리비 = 원고 또는 상소인 * 소취하: 사건수리비는 50% 감하여 수납
이혼사건인 경우	쌍방 협의/ 미협의를 법원 결정
소송청구수액의 감소를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
독촉절차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함	신청비 = 채무자 부담
독촉절차에 이의제기함	신청비 = 신청인 부담
공시최고	신청비 = 신청인 부담

이 경우도 판결주문에서 B와 A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해주며,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B의 부담비율에 대해 A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J-6

소송대리

중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변론개방주의를 채택하여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관련 사회단체나 소속기관이 추천한 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국민은 모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서면 형식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제기, 응소를 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J-7

## 증인의 출석의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증명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A, B 모두 C가 잘 아는 사람이라 C는 어느 쪽에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꼭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재판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증거로는 계약서, 영수증 등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제3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증언을 듣는 것, 그리고 사건에 관계 있는 것을 검증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증언하나 만약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면증언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중국의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소환불능,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北京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B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B가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심이 가능한가요?

재심신청의 제기는

- ① 인민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
- ②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여 개시하는 것
-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는 직접 당사자의 민사권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법률문서를 작성한 절차가 공정한지, 그 법률문서의 내용이 공정한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심판 감독절차를 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사법실무상 원재판이 오류가 있는지는 주로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통하여 발견되고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재심을 개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고 재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식적 요건 즉

- ① 주체는 원심사건의 당사자
- ② 대상은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
- ③ 기한은 판결, 재정, 조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내

(민사소송법 제184조)와 실질적 요건 13가지(동법 제179조)에 부합 하여야 가능합니다.

위 사안에서 인민법원이 재심을 진행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①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재심사건이 만약 원재판의 사실인정 에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용이 부당한 경우 법에 따라 새로이 판결하 고 원판결을 취소하며, 새로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 할 것입니다.

② 원재판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적용법률이 정확한 경우 판결 로 재심재정을 취소하고 원판결을 유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많 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심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2심 재판까지 끝났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J-9

소송상 화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A는 어느 정도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들어 준다면 화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잘 될 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결보다는 화해쪽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재판은 중단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재판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일방은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조정과 같이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A는 북경의 안경점에 렌즈를 납품하였는데 납품개수와 재고개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금이 6만 위안에 달해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경점은 위 미납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타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이란 조정기관인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립되며,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조정에 의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주재하는 인민법원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는 인민조정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5] 인민법원조정과 인민조정의 비교

유형/ 구분	인민법원조정	인민조정
주체	인민법원	인민조정위원회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9조, 제85조 ~ 제91조 (민사소송법과 실체법이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인민조정조례와 관련 실체법, 민간의 관습)
성질	소송활동, 인민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식	소송 외적인 조정활동
법적효력	법률상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짐	법률상의 강제력은 없음

위 조정 중 인민법원조정은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사법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및 이와 관련된 사법해석에 의하면 특별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절차를 제외한 모든 민사분쟁 사건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증거교환절차, 1심 간이절차, 보통절차, 2심 절차와 심판감독절차에서 언제든지 조정의 방식을 적용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해결방법으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J- 11

중재 제도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거래생활에서 생긴 분쟁에서 중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의 본질은 그것이 사적 재판이라는 데에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특히 국제상사거래상의 분쟁에서는 분쟁해결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소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6] 분쟁해결로서의 중재와 소송의 비교

	중재	소송
수리조건	- 쌍방 당사자간의 협의 관할임 - 쌍방 당사자가 분쟁발생 전/후,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중재기관을 선택하여 중재신청할 경우만이 위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할 수 있음	- 강제관할임 - 명확한 피고와 구체적인 소송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함



관할권	중재위원회	인민법원
선택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를 선택 가능	당사자는 법관을 선택할 수 없음
심리방식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심리</li> <li>- 1심 중국판결(판결 후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재중재 신청 또는 법원에 기소를 하여도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음)</li> <li>- 일반적으로 6개월, 특수 정황인 경우 연장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아</li> <li>- 관련한 사항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심리</li> <li>- 당사자가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 가능</li> <li>- 1심 6개월 (사안이 복잡한 경우 12개월 이상)</li> <li>- 2심 6개월</li> </ul>
집행관할	피집행인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	1심 법원 또는 재산소재지 법원 집행

단, 실무상 중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기층법원에 비해 수준이 높고 기간 및 비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섭외사건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명확한 증거제시와 섭외중재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해박한 법률지식, 중재인 명부상의 중재인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정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건분석에 따른 Legal Mind의 견해차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운용의 기교 등이 중재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더라도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후에 A가 생각해 보니 그 때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A는 이자의 지불을 지체하였더니 갑자기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길은 없나요?

원고가 재판을 하는 목적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뿐만 아니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든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든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에 나와 있는대로 (돈을 지급하라든지, 건물의 명도나 철거를 하라든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대여금의 회수라면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서는 우선 차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가 되면 소유자라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집을 임대한 경



우 집세를 징수하는 등)를 하고, 보통의 유체동산이면 강제경매를 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의 소에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J- 13

지급명령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3조).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



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에서 기계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J- 14

재산보전처분

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일한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사촌형인 C명의로 도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B는 재산보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보전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당시의 운전자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보전처분(봉인(查封)), 압류(扣押), 동결, 기타의 방법)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것이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과 근접한 시일에 권리 이전이 되었는



지의 여부 및 재산도피사실을 알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대지와 건물  
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가압류, 가집행, 가  
처분 신청 등)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  
이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  
여 활용되는 상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원에 재산  
보전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할 가액은  
보전을 청구한 액수에 상당하여야 합니다(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제98조).

실무상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재산보전을 결정할 재판  
부와 의논하여 부동산,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 현금 등을 제공하고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  
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법원 판결문의 집행력



김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중국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제266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간에 현재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방 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도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집행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J- 16

중국소송 확인방법

중국회사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인데, 중국회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중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를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에 불일이 있으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소송확인의 경우 중국에서는 아직 통일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므로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피고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일 경우 다수의 관련 부서들을 거쳐 소제기의 통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통상 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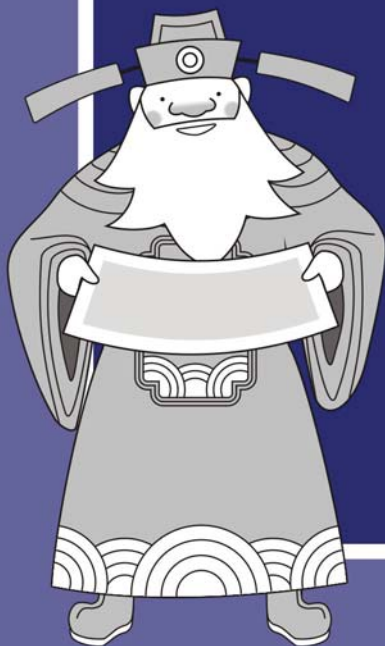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그 결과 소제기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피고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 역시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고, 또 그러한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규정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소제기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제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Section-K

## 형법과 생활





K-1

외국인의 형사처벌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刑法) 제8조는 “외국인이 중국 외에서 중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형법 제10조는 “중국 외에서 죄를 범하여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범죄지인 한국의 법률에 의해 범죄로 성립하고, 그 범죄가 중국 형법상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비록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와 B는 여자문제로 싸우는 과정에서 A의 폭행으로 B의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5개가 부러졌습니다. B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 중국법은 물론 한국법에 의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6조 제1항은 “중국의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B는 범죄행위지인 중국에서 가해자인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인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3

정당방위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형법 제20조는

① 국가·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불법침해(不法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침해적 행위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방위(正當防衛)로서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현재 진행중인 흉폭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극히 중하게 침해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過剩防衛)에 속하지 않으며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신체의 안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여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병을 들고 폭행을 가하는 B의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흉악한 구타, 또는 기타 엄중하고 위급한 신체안전의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 4

범행중지의 경우 형사책임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고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꺼주어 B의 공장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A는 파출소에 자수하였는데,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4조는

① 범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拋棄)하거나 범죄결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防止)한 것을 범행중지(犯罪中止)라 한다.

② 중지범(中止犯)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처벌을 면제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벌을 감경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범행중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마쳤을 경우 효과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며, 객관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중지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공장에 불을 지른 범인이 타오르는 불길을 보는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친 것만으로는 불을 끄는데에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범죄결과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에서 규정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방화죄가 성립되어 징역형(3년 이상 10년 이하)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114조).

다만 범행 이후 공안당국에 자수한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K- 5

**교통사고 야기자의 책임**

북경에 거주하는 A는 2008년 12월 14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5명을 치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133조는 “교통운수관리법규(交通運輸管理法規)를 위반하여 중대사고(重大事故)를 발생시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공·사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逃逸)하거나 기타 특별히 나쁜 정상이 있으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逃逸)함으로써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소위 “중대교통사고(重大交通事故)”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구체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交通肇事) 형사안건의 심리와 관련, 구체적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은 본죄를 구성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또한 법정형이 가중되는 특별히 나쁜 정상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위 《사법해석》 제2조 제1항은

① 사망 1인 또는 중상 3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② 사망 3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동등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재산 또는 타인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고, 사고 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배상할 능력이 없는 액수가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 1인 이상이고, 사고 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① 음주 또는 마약 흡입 이후 운전한 경우,

② 무면허운전한 경우,

③ 안전장치, 안전부품이 불완전함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④ 이미 폐기된 차량임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⑤ 엄중히 초과 적재하여 운전한 경우,

⑥ 법률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죄(交通肇事罪)**」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해석 제4조는

① 사망 2인 또는 중상 5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② 사망 6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동등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재산 또는 타인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고, 사고 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배상할 능력이 없는 액수가 60만 위안 이상인 경우는 본조가 규정하는 《기타 특별히 나쁜 정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무면허운전 등은 사고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에 해당하고, 사고 결과 사망 3인 이상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범죄(交通肇事罪)**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위 법령에서 언급하지 않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경상만을 입힌 경우, 한국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해석을 적용하면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보다 경한 행정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1] 교통사고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유 형		처 별
상해자 수 및 손해정도	사고책임	
사망 1인	전부 혹은 주 책임	3년 이하 징역 혹은 구류(拘役)
중상 3인 이상	전부 혹은 주 책임	
사망 3인 이상	50%	
공공재산 혹은 타인 재산에 대한 직접 손해 * RMB 30만원 이상의 배상능력 없음.	전부 혹은 주 책임	
교통사고 후 도주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도주정황 불량 + 사망		7년 이상 징역



## K-6

### 음주운전

북경에 거주하는 김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 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형법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주하며 뒤쫓거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醉酒驾驶) 할 경우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개정 교통도로안전법(交通道路安全法)에서는

① 술을 마신 후(饮酒驾车)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6개월 동안 압수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재범인 경우 10일 이하 구류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② 술에 취하여(醉酒驾车) 차량을 운전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교통부문에 넘겨 술이 깼 때까지 구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5년 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③ 술을 마셨거나 술에 취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공안기관에서 교통부문에 맡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종신토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20mg/100ml 이상 80mg/100ml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醉酒驾车)하였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80mg/100m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계산방법이 한국과 달라 통상 맥주컵 한잔의 맥주(啤酒)를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20mg/100ml 정도에 해당하고, 소주잔 석잔 정도의 저도수 바이주(白酒)를 마셨거나 두 병의 맥주를 마셨을 경우 혈액알콜농도가 80mg/100ml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이 규정된 「위험운전죄(危險駕駛罪)」는 음주운전, 도로에서 고속운전하며 경주하는 등 위험운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새 형법 수정안이 시행된 후 한국인이 중국에서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강제출국 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국의 법률을 감안하여 볼 때 중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K-7

### 식중독 사고

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 기업 야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143조는 “충분히 엄중한 음식물 중독사고 또는 기타 음식으로 인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 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3조에서 말하는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食品罪)란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 혹은 기타 음식에 기인한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① 부패변질, 곰팡이, 병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체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② 유독,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유독,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어 인체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③ 질병성 기생충, 미생물을 포함하거나 미생물의 독소함량이 국가제한표준을 초과하는 것,

④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불합격된 육류 및 그 제품,

⑤ 용기포장이 불결한 것,

⑥ 보증기한을 초과한 것,

⑦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사용비준을 득하지 못한 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등을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제공한 음식이 식품위생법의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고, 조사결과 위 식품위생법상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K- 8

문화재 밀수

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51조 제2항은 “국가가 수출(出口)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進出口)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走私)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 ① 주관적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밀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 ② 둘째 객관적 측면에서 행위자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운수, 휴대, 우편발송 등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국경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수출입 금지대상 물품의 특수성 때문에 구성요건상 밀수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수출입금지 대상 물품의 밀수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文物保護法)** 제2조에서 규정한 역사·예술·과학적 가치가 있는 소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골동품을 매수하여 반출하는 과정에 매수한 골동품이 문화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반출하였다면 본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골동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 회사에 의뢰하여 문화재 여부 판정을 받은 후 반출하는 것이 법률상 분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K-9

## 자금유용

중국 복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72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자금을 유용(挪用)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을 초과해도 반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불법활동을 진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용한 해당 단위의 자금액수가 거대하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안 소추기준에 관한 규정(经济犯罪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에 따르면

- ① 유용한 자금이 1만~3만 위안 이상이고, 3개월이 초과되었음에도 미상환한 자,
- ② 유용한 자금이 1만 ~ 3만 위안 이상이고, 영리활동을 한 자,
- ③ 유용한 자금이 5,000원 ~ 2만 위안 이상이고, 불법행위를 한 자





는 반드시 소추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A의 행위는 자금유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유용한 자금의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K-10

**불법감금**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 A회사의 임직원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拘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毆打), 모욕(侮辱)의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금죄는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에서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감금죄라 함은 불법으로 타인을 감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법실무상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임금(채무)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23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拘役), 보호관찰(管制) 혹은 자격정지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 실무자들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 K-11

### 중혼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258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한 자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죄는 “혼인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에 위반하는 범죄로 두 가지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한 남, 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다시 타인과 결혼하는 행위이고(범죄주체를 소위 중혼자(重婚者)라고 지칭) 둘째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남, 녀가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범죄주체를 소위 상혼자(相婚者)라고 지칭)입니다.

본조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란 결혼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부로 동거하는 상태(소위 사실중혼 - 事实重婚)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타인과 함께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거나,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부관계로 동거



를 하는 경우 비록 그 결혼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혼죄는 피해자의 자소(自訴)가 필요한 죄이므로 A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자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K-12

### 절도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한국인 A는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돈 3,000위안, 노트북 1개(시가 5,000위안), 카메라(시가 2,000위안), 만년필 1개, USB 1개 등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학교측의 신고로 공안에 간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64조는 “공사(公私)의 재물을 절취(盜竊)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수회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도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① 금융기관을 절취하여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자, ② 진귀한 문화재를 절취하고 정상이 엄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절도죄의 경



우 절취한 금액에 따라 그 양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양형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K자료2] 절취금액과 양형기준

구분	절취액(위안)	법정형
비교적 많음 (较大)	500~2,000 이상	보호관찰(管制), 구류(拘役),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병과
거액(巨大)	5,000~20,000 이상	3~10년 징역과 벌금 병과
특거액(特巨大)	30,000~100,000 이상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과 벌금(또는 재산몰수) 병과
금융기구 절취	특거액	무기징역 혹은 사형과 재산몰수
귀중문물 절취	-	무기징역 혹은 사형과 재산몰수

\* 참조: 절도사건 심리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盗窃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通知)

공안부에서 제정한 절도사건 입안통계방법 개정에 관한 통지(关于修改盗窃案件立案统计办法的通知)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고소한 절도사건을 접수한 경우 절취 액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리, 등기하고 수사하여야 한다”고 입안기준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해당 소재지 절도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사안건으로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시인민검찰원, 북경시공안국의 8가지 재산침해범죄의 액수인정표준에 대한 통지(北京市高级人民法院、北京市人民检察院、北京市公安局关于吧中侵犯财产犯罪数额认定标准的通知) 제1조에서는 절도죄의 경우 “비교적 많음”이란 1,000 위안 이상, “거액”이란 1만 위안 이상, “특거액”이란 6만



위안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 사법실무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북경에서 절취 금액이 10,000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거액 절도 사건에 해당되어 구속수사하여 실형이 선고되게 되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가 한국보다 무거우므로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K-13

외국인사의 의료행위

북경 A병원의 한국부에서 한국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B가 중국에서 별도의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B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336조 제1항은 “의사업무자격(医生执业资格)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불법 의료행위(非法行医)를 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환자의 신체건강의 손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내중 외국인사의 단기의료행위에 대한 잠행판법(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직업의사법(执业医生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① 외국인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②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위상행정부서에 <외국인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을 신청하고,
- ③ 중국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요청 또는 초빙하여야 하며, 초빙 또



는 요청한 단위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 또는 초빙한 의료단위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④ 외국인취업허가증과 취업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판법에서는 외국 의사단기 의료행위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하려고 할 경우 원 비준부서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술한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① 신청서,

② 외국 의사의 학위증명(공증 필요),

③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권리증명(공증 필요),

④ 외국 의사의 건강증명,

⑤ 2명 이상의 부고급직함 이상의 외국 의사와 동일한 전업의 국내 전문가의 추천서

⑥ 증명사진,

⑦ 외국 의사 자격 시험 합격 증명,

⑧ 취업증(원본),

⑨ 초빙 의료기관의 의료업종사 허가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 B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K-14

## 태아성별감정의 위법성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이에 응한 B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자인 A사장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에 응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므로 B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및 산아제한법(人口与计划生育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학기술로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별감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의학적 필요로 성별을 이유로 유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처분하며 동시에 벌금을 내리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당 할 수 있으며 형사에 저촉될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이에 응한 의사 B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태아성별감정에 따른 처분이 아주 엄한만큼 통상 정규적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성별감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K-15

## 주취 감경여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어느 날 만취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는데,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중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국 형법 제18조 제4항은 “술 취한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술에 취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 또는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음주상태 자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야기한 것이므로 술에 취한 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처벌을 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K-16

## 위조지폐의 사용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 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72조는 “위조된 화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지(持有)·사용(使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범죄는 소지 또는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거대하거나, 특별히 거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경제범죄안 소추기준에 관한 규정은 소지하거나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면가액 총액이 4천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소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 제43조에서는 “위조, 변조한 인민폐를 구입하거나, 위조, 변조한 인민폐임을 명확히 알



면서 소지 또는 사용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조지폐 몰수 및 감정 관리판법(假币收缴鉴定管理办法)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위조지폐를 발견하였을 경우 2명 이상의 업무인원이 현장에서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20장 이상의 위조 인민폐 (액수는 불문) 또는 10장 이상의 위조외화를 발견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받은 돈 중 300 위안이 위조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의해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K-17

## 공장임대인의 형사처벌

한국인 김씨는 아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임대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공안에 의해 중국인 친구의 공장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공장을 임대해준 김씨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김씨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여 불법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 또는 영업 이익이 3만 위안 이상 또는 불법제작한 상표수가 1만개 이상일 경우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동 해석 제16조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에 대하여 자금, 은행계좌, 영수증, 문서 위조, 생산장소, 창고, 운수, 수출입 대리 등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김씨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준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친구가 생산한 가짜 명품이 수량 또는 불법소득상  
형사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김씨도 형사처벌을 받  
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불법제품의 수량과 매출액 또는 이익이 형사처벌기준에 도  
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K-18

업무상 횡령

박씨는 중국에서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회계 직원이 24만 위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형사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이 직원을 공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직원은 중국 형법상 직무침점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271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고(占为已有), 액수가 비교적 큰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직무침점죄가 성립되는 금액이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본 사례와 같이 24만 위안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K-19

공소시효

알고 지내는 중국인으로부터 밤중에 칼로 위협을 당하여 지갑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형법상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에 대해 중국 형법 제87조는

- ①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
- ② 법정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유기징역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때,
- ③ 법정최고형이 10년 이상인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때,
- ④ 법정최고형이 무기도형, 사형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때(만약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반드시 소추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얻어 소추할 수 있음),  
에는 소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처벌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형사처벌 등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사는 중국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B로부터 대리석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주문한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폐자재를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중국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중국 형법 제22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의 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①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위조·변조·실효(作廢)된 유가증권 또는 기타 허위로 작성된 재산권증명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③ 실제 이행능력도 없이 소액의 계약을 먼저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속인 경우

④ 상대방 당사자가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 은닉한 경우

⑤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의 **계약사기죄(合同诈骗罪)**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본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고의 여부 및 편취 재물 액수의 다과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편취 재물 액수가 적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범죄안 소추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개인이 편취한 재물액수가 5천 위안 내지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②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단위 명의로 사기행위를 하였고, 그 소득이 단위소유로 귀속되었으며, 그 액수가 5만 위안 내지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에는 마땅히 소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수입계약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선적하여 온 것이라면 중국회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신용장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 수표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우므로 형사범죄에 해당여부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K-21

###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 제17조는

-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搶劫), 마약(毒品)판매, 방화, 폭발(爆炸), 독극물투약(投毒)의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③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면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 처벌해야 한다.
- ④ 만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행위자의 가장 또는 후견인이 관리, 교육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가 수용·선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16세, 18세로 나누어지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



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위 규정에 정해진 죄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제조, 운수, 구입, 소지, 판매 등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판매행위만 형사처벌 되고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형사책임주체로 인정되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통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이제 만 14세로서 중국 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상술한 8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K-22

## 낙태의 처벌여부

한국인 A는 중국 여성 B와 경제적 상황이나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 임신을 하여 낙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낙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출생률이 낮아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국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한쌍의 부부가 한명의 아이만 낳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낙태를 하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낙태는 이미 잉태한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러한 침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K-23

## 공범

한국인 A는 친구 B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B가 들어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집 안에서 갑자기 ‘도둑이야’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 B와 A는 모두 도둑으로 몰려 달려온 사람들에게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 형법 제25조에서는 “공동범죄란 2인 이상의 공동고의범죄를 가리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범죄는 주체상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진 2인 또는 2인 이상의 주체, 주관상의 공동범죄의 고의, 객관상의 공동범죄행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범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결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고, 주관상 서로 공동으로 일정한 범죄행위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상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B는 범죄가 성립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A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공동범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A가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려고 하였는지를 범죄 시작시부터 발견될 때까지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즉 A가 B가 절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아 준 것  
이라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로 인정될 것입니다.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국의 형법에서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그와 결혼”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만약 원래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혼인등기를 한 부부관계라면 그 후의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주위에 부부로 사칭하여 동거)을 막론하고 모두 중혼죄에 해당되며, 만약 원 결혼이 합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인지와는 관계없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혼죄 외에 군혼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경우 이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혼파괴죄는 당사자가 결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죄로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입니다.



## 집회, 시위, 행진

중국에 소재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회사 급여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측 회사직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집회를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요?

중국은 집회행진시위법(集会游行示威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회, 시위, 행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집회, 시위, 행진을 하는 경우만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조직자가 있어야 하며 예정일 5일 전에 관할 현 급, 시 급 공안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본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청진행시간을 5일 늦출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신청한 진행일자 2일전에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서면으로 조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본법이 적용되



며, 만약 이러한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집회를 가질 경우 책임자 또는 조직자는 15일 이하의 구류(拘留) 또는 기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에서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 진행되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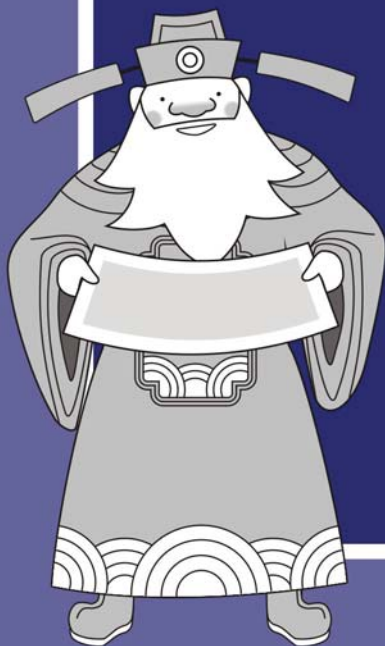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상술한 처벌과 동시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병과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구류 또는 벌금과 강제출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 Section-L

# 형사소송법과 생활







L-1

형사변호인의 자격

중국에서 공안에 폭행죄로 구속되어 인민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인도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고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조에서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본인이 스스로 변호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위탁을 받고 변호인을 담당할 수 있다.

① 변호사,

② 인민단체 또는 범죄혐의자, 피고인 소재단위에서 추천하여 준 사람,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구, 친척, 형집행기간에 있거나 법에 따라 인신자유를 제한 또는 박탈당한 자는 변호인을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경제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부합되는 중국인 또는 자신의 근친족, 보호자를 변호인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습니다.



## L-2

### 변호인의 선임

한국인 김씨의 아들은 북경 소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옆방 룸메이트의 컴퓨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경찰서 간수소(看守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는 아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96조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개입될 수 있는 시간단계는 수사단계(공안, 검찰원), 기소단계(검찰원), 재판단계(법원)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중국은 수사단계에 범죄혐의자의 친구, 친척들의 면회를 대부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받은 변호사만이 관련 위탁증서와 변호사 자격증명 등 문서를 소지하고 범죄혐의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신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위탁을 하면 법률자문, 탄원서 제출, 고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취보 후심(取保候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일 경우 가급적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그러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여 주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사법해석 제37조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피고인으로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실무상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잘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할 여질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지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도 현지 사법국의 등록에 따라 임의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능력 및 경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허락된다면 가급적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L- 4

# 변호사의 권리

##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 변호인에 비하여 먼저 사건 절차에 참여하고, 더 많은 권리가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의 권리에 대하여 중국의 법률 및 사법 해석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사단계

①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 소송대리 및 고소, **고발(控告)**를 제 공합니다.

② 범죄혐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변호사는 취보후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자가 어떠한 범죄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④ 범죄혐의자를 만나볼 때 범죄혐의자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公安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기소심사단계

- ① 기록,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췌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 및 통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의견발표권리가 있습니다.
- ⑤ 취보후심 신청권이 있습니다.
- ⑥ 인민법원, 인민검찰원,公安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재판단계

- ①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췌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취보후심 신청권이 있습니다.
- ⑤ 증거 이의제기권, 신청권, 변론권이 있습니다.
- ⑥ 비독립적인 상소권이 있습니다.



L- 5

강간죄의 친고죄 여부

북경에서 감이 부녀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요?

강간죄는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합의



한국인 A가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단계에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본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개인의 행위가 형법에 위반되었을 때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고의상해행위는 객관적인 상해 행위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당사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형사법정을 주관하는 재판부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심리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며, 그 배상 결과에 따라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L-7

## 취보후심 석방인의 의무

친구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는 보석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취보후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떠날 수 없고,
- ②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 즉시 출두해야하며,
- ③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 ④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면 이를 몰수하고, 각 상황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하거나 또는 주거감시하거나 구속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취보후심으로 석방된 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보후심 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L- 8

## 주거감시

공안기관에서 김씨에게 주거감시를 명했는데, 주거감시가 무엇인가요?

주거감시란 일부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구치소에 구속하지 않고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거주 장소 또는 공안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감시를 명령받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기간 중 형사소송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고,
- ②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지정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 ③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 ④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 ⑤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 ⑥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체포합니다.



L-9

복역자 면회

친구가 북경에서 중국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친구를 한번 면회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外国籍罪犯会见通讯规定)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의 소속 국가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친족, 보호자가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면회 또는 통신이 가능하며 보통 친구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10

## 교도소내 반입물품 종류

남편이 현재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한국 소설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한국책도 반입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 제19조는 회견인과 피회견인이 서로 편지, 물품을 주고받을 경우 사전에 교도소측에 알려야 하고, 규정에 따라 편지,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허가받은 후 넘겨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는 데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당해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소설책과 같은 물품을 반입하시려고 하실 경우 교도소측의 허가를 받은 후 면회시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족 또는 보호자가 수감인을 만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면회 및 반입을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L-11

가석방

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선고형의 절반 이상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실제로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교도소의 규칙을 착실히 준수하였으며, 교육을 받고, 반성하며, 재범할 위험이 없다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살인, 강간, 강탈, 납치 등 폭력성범죄로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가석방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후 관찰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로 발견된 예전의 범죄가 없으며, 법률의 규정과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하였을 경우 시찰기간 만료 후 형의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시찰기간에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서의 가석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되고 나머지 실행을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시찰기간은 유기징역일 경우 선고형 중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형기이고, 무기징역일 경우 10년으로 합니다.



중국인을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행유예제도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72조는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정상 및 죄를 뉘우치는 태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구역일 경우 원판결의 형기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2개월 이하로 할 수는 없으며, 유기징역일 경우 원판결의 형기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1년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로 발견된 이전의 범죄행위가 없으며, 관할 공안기관의 요구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하였다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L-13

친고죄

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고죄는

- ① 모욕, 비방죄(사회질서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는 제외),
- ② 혼인간섭죄,
- ③ 학대죄,
- ④ 침점죄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죄명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한국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녹음의 형사처벌 여부



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내려 하는데,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지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의 녹음행위는 증거수집 방식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녹음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한 녹음에 상업기밀이거나 사생활에 속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시키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 공갈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형법의 기타 규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L-15

피해자의 형사소송 참여

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안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찰원에서 맡고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55조에 의하면 공소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한 후에 피고인, 피해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부대민사소송의 원고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진술 기회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음주측정에 대해 혈액검사 등 방법으로 반박할 방법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 제76조, 77조에서는 음주운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의 교통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첫번째 검사비용은 공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검사기기가 부족하므로 담당자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아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직선으로 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일부 간단한 기기로 검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차 음주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한 측정 방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병원에서 혈액검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17

## 한국으로의 이송

한국인 A는 중국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째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남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싶은데, 실제 수형자를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한중 양국간에는 2009년 수용자이송조약이 체결되어, 중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은 조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A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일시 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 범죄자에게

- ① 중대한 질병이 있어 외부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임신 또는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 중인 부녀자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형무소 외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치료를 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해(自害)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외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병이 확실히 위중하여 반드시 외부 치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사·비준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 치료를 받는 범죄자가 외부치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또는 외부치료에 관련된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하게 됩니다.

유기징역, 구역에 처해져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고, 임시 옥외집



행을 적용하여도 사회위험성이 없는 범죄인인 경우에는 임시 옥외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시 옥외집행을 적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질병을 원인으로 임시 옥외집행을 신청하여 교도소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L-19

## 구속요건

한국인 A는 중국인 B와 싸움을 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공안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염려는 없는지요? 중국법상 구속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은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서 집행합니다.

법에 따라 구속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依法使用逮捕措施有关问题的规定)에서는 구속의 조건으로

①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위해를 줄 경우,  
②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간섭하거나 공모할 경우,

③ 자살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④ 보복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⑤ 기타 사건의 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

⑥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속요건에는 부합되지만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임신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녀들에 대하여서는 취보후심 또는 주거감시 조치 등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불입건의 구제조치

한국인 A는 중국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규정(公安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수리한 후 7일 내에 입건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입건통지서(不予立案通知书)에는 반드시 입건을 불허가하는 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서는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 관할 검찰원에 공안기관에 대한 입건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안기관이 마땅히 수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입건조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서 불입건처리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입건처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접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한국인 A는 거리의 공공물건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5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형사판결을 선고한 후 형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통상 법원에서 출국금지령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5만 위안의 벌금형 집행을 끝내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한국에 계시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벌금을 낸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규정된 3개월~6개월의 형집행 기간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판결 불집행’에 해당하여 별도의 행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재심청구

한국인 A는 중국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대방을 쥐고 흔들었을 뿐 절대 때린 사실이 없는데, 다시 구제받을 기회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2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별도로 심판 감독절차를 두어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결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4조에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의 상고가

- ①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형량 확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불확실·불충분하거나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 ③ 원 판결·결정에 적용된 법률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 ④ 법관이 사건의 심리할 때 독직수뢰, 부정불법, 법을 왜곡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원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경우 당사자는 재심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어 상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2심 법원에서 더 중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규정은 없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는 “제2심 인민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친족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측에서 법원의 1심 형사처벌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경우 원 재판보다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한 검찰원 또는 형사자소사건의 자소인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A는 폭행 혐의로公安기관에 구류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나요?

公安기관에서 원칙적으로 37일까지 형사구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보면 公安기관은 혐의자를 형사구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야 하며 형사구류 후 3일 이내에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특수상황에 대하여 형사구류 기간을 1일~4일 더 연장할 수 있고, 도피 중의 범죄행위, 상습적 범죄행위, 집단 범죄행위의 중대 혐의자에 대한 구속비준 신청기간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公安기관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사건에 대하여 30일을 기준으로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公安기관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거친 후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원은 7일 이내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7일(30일+7일)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구속영



장이 발부되고, 사건은 공안기관에서의 구속수사 및 검찰원의 기소 심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러한 경우 구속기간은 별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 부당하게 압수당한 재산의 반환



한국인 A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公安기관에 형사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데,公安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의 일부 개인재산도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압수된 개인재산과 입건된 형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재산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된 물품·문서·우편물·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조사, 판명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압수, 동결을 해제하여야 하며, 원주인 또는 원래의 우편전신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계없는 물품, 재산에 대하여서는 3일 이내에公安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公安기관에서 3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해公安기관에 물품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피제도

한국인 A는 폭행죄로 검찰원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법원의 개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친삼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피란 수사인원, 검찰인원, 재판인원이 사건 또는 사건당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일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동 사건의 형사처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재판인원, 검찰인원, 수사인원이

- ① 당해 사건의 당사자거나 또는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 ② 본인 또는 그의 근친족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③ 당해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는 경우,
- ④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들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중의 A는 법원에 담당판사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 중 상술한 공안, 검찰, 법원의 담당인원 외 서기, 통역인, 감정인에 대하여서도 회피제도가 적용됩니다.



증인보호

한국인 A는 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A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증인 및 그 근친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 및 그 근친족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공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형법 제307조, 제308조에서도 폭력, 위협, 뇌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을 서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하여 보복공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협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공안 또는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또는 치안



관리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  
사  
소  
송  
법  
과  
생  
활



## 법정질서파괴시의 처벌

한국인 A는 자신의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판사와 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구금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교란하고, 판사가 경고 및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법정에서 쫓아낼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1,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조직하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법관계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모욕, 비방, 위협, 구타하여 법정의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경우에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다만 검사와 판사를 욕하는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 1,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소기간이 지난 후의 상소 가능성



A는 폭행죄로 구역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차후 생각하여 보니 너무 중한 벌이라 생각되어 다시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상소기한이 하루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합니다.

2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 판결은 법정 상소,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검찰원과 법에서 규정한 소송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상소, 항소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 항소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지게 됩니다.

다만, 일부 확실히 억울함이 있거나, 1심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1심의 판결 중의 사실확인, 증거인정, 법률적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재심 또는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 제도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원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L-30

## 상소기간

1심 형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얼마 동안 이내에 상소하여야 하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고,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5일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판결서, 결정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중국에서는 2번 재판을 받으면 끝난다고 하던데 형사재판도 2번 재판받으면 다시 재판받을 수 없나요?

한국은 3심 중심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2심 중심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심 중심제란, 한건의 사건이 2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종결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2심 법원의 재판결과는 중국판결로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즉 2심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별개로 재판감독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1심, 2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취소된 판결의 진행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감독절차는 법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실무상 사법관계자들의 자질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판결에 대한 보완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구속절차

한국인 A는 폭행죄로 중국의 공안기관에 구속되었는데 가족에게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중국 형사소송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공안기관이 구류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구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류 후 수사에 방해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류의 원인과 장소를 24시간 내에 피구류인의 가족 또는 소속 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으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족에 연락하여 줄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 가족에 통지하는 동시에 소속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의 재판 방청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유학생입니다. 중국의 재판에 대하여 좀더 깊게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 가서 일부 관심 있는 분야의 재판을 방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무상 어렵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모두 공개원칙을 준수하므로 법적으로 공개재판이 불가한 몇 가지 경우 외에는 모두 중국국민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등록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이 법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고, 소재지의 지방정부 외사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외사관리부서에서 법원과 공동으로 검토한 후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외국인이 중국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는 신청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외국과 관계없는 내국사건일 경우 방청신청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L-34

## 유기징역기간의 계산시점

한국인 A는 고의상해죄 혐의로 구속된 후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재판이 지연되다가 결국 반년 후 유기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란 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게 되는가요?

유기징역의 계산시간은 판결집행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중국 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의 기간은 형을 집행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형 집행 전에 구금한 시간에 대하여는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인 A는 중국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원에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곧 형사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건이 취소되고 검찰에서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검찰원에 이송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재판에 들어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3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원에서 불기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법에 의한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15조에는

- ① 사안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아니하여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②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된 경우,
- ④ 형법상 고소해야만 처리하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 ⑤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 ⑥ 기타 법률에서 형사책임의 추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상황에 따른 불기소처분

이는 범죄가 경미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3.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이는 공안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안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원에서 보충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책임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행정,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증거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형복의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사형복의제도란 중국의 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형복의 권리가 있는 상급인민법원에 심사확인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사형에 대한 특별절차에 속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은 순서에 따라 입건, 수사, 기소, 1심 재판, 2심 재판, 집행절차 등을 거치는데,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위 절차 이외에 별도로 최종 결정(核准)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외에는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유예에 처할 경우 해당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제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확인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 비준받아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재판하거나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③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한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제1심



사건과 사형에 처한 제2심 판결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최종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⑤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최종결정하고,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사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진행하며, 심판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사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 재판 중의 선임변호사 교체



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한 바와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선택문제이므로 법적으로 변호사의 선임 및 교체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교체하려고 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재판을 연기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등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특수 사건에서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주었을 경우 이러한 변호사에 대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L-38

## 잘못된 형사구금의 배상

한국인 A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가서 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에 소문이 퍼져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기타 보상을 하여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중국 국가배상법(国家赔偿法) 제3조에서는 “행정기관 또는 소속 직원이 행정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불법구류 또는 불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강제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주로 구류절차상의 불법을 뜻하는 데 구류행위가 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류시 구류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구류 후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약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구류였다면 피해자는 당해公安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구류였다면 당사자는 배상 또는 사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형사재판법원의 확정



한국인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을 맡는 법원은 어떻게 확정되는지요?

형사사건의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재판법원의 확정은 통상 구역에 근거한 지역관할과 사건의 영향에 따른 재판법원의 등급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에 의한 범죄발생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등급으로 볼 때 사건이 영향을 미친 지역범위 및 일부 특수규정에 따라 재판법원의 등급이 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감형 및 감형조건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기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형이 절대적이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가능한지요?

중국 형법 제78조~제80조에서는 감형의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한 범죄자가 그 집행기간에 감독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아들이며, 확실히 개선의 정이 있거나 또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감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출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형하여야 합니다.

- ① 타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저지하였을 경우
- ② 감옥내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 그것이 사실인 경우
- ③ 발명창조 또는 중대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
- ④ 일상생산,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하였을 경우
- ⑤ 자연재해를 제압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막는데 있어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
- ⑥ 국가와 사회에 기타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통상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경우에는 최초 선고받은 유기징역의 20~30% 정도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L-41

## 사형집행유예제도 ▼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상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형제도입니다. 중국 법률은 사형에 대하여 즉시 집행, 사형집행유예 2년 등 2가지 집행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형집행유예는 그 중의 후자입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제도는 독립적인 형의 종류가 아니며 사형집행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사형집행유예제도는 2년 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인 2년 동안 고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고, 사형집행유예기간에 중대한 공헌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즉 사형집행유예기간에 고의범죄행위가 없다면 2년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형집행유예기간에 고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최고인민법원의 최종결정(核准)을 거쳐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은 현대법제사회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형의 즉시 집행은 최고인민법원의 최종결정을, 사형집행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의 최종결정을 거친 후 형을 선고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절차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직접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공안기관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기소, 재판, 처벌의 진행은 통상 국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 수사감독 및 기소 심사를 담당하는 검찰원,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볼 때 순서대로

① 공안기관에서 사건접수, 구속, 입건조사, 증거수집 등을 책임지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에 관련 자료들을 이송합니다.

② 검찰원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의 범죄혐의자, 증거, 문서자료, 진행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③ 법원에서는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피고인의 죄명, 사건정황, 증거, 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의 변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죄, 무죄 판결 및 형을 선고합니다.

④ 죄명이 성립되어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형집행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때에 공간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시어 경찰이 협조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인끼리의 형사고소



북경에서 유학중인 여학생 A씨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 B씨와 사귀게 되었으나 나중에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찰의 도움을 얻고 싶은데, 한국인끼리의 사건도 중국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의 형법은 속지관할주의를 중심으로 속인관할, 보호관할, 보통관할을 보조로 하는 종합적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속지관할주의의 내용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 외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중국의 형법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국의 법원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산압수의 적법성

한국인 A는 북경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평소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여 왔는데, 어느날 경찰이 들어와 현장조사를 하며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찰은 영장 없이도 재산압수가 가능한지요?

압수수색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요원은 범죄증거의 수집, 범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물품·주거지와 기타 관련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압수수색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만 구속, 구류 집행시 긴급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증이 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증을 제시한 후 진행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증거로 될 수 있는 물건과 문서에 대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명세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 집행자 및 목격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유죄 및 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서류에 대하여 압수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압수수색증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압수물품명세표를 작성 및 담당자서명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M 중국의 법제와 법문화

Section-N 중국법의 종류와 법률용어

Section-O 부록(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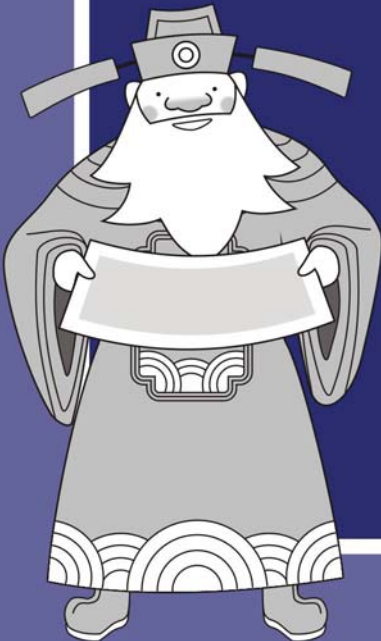
## Part3

# 중국법 관련 참고자료



## Section-M

# 중국의 법제와 법문화





## 중국 법령의 다양성과 입법의 신속성

중국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흔히들 중국법령은 그 체계가 너무도 복잡하고 심지어 난삽하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중국의 법령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명칭이 법령의 종류와 무관하여 법률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법령 체계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개정하는 헌법 외에 ①법률, ②법규, ③규장이 있는데, 외형상 우리나라의 법률, 명령, 규칙과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①법률은 그 중요성에 따라 민법통칙,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외자기업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개정하는 ‘기본법률’과 노동법, 특허법, 상표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기타법률’로 구분된다. 또한, ②법규는 국가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성법규’로 구분된다. ③규장 역시 국무원 소



속 각 행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부문규장’과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정부규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중국 법령들은 헌법 → 기본법률 → 기타법률 → 행정법규 → 부문규장 및 지방성법규 → 지방정부규장 순으로 효력을 지닌다.

중국법령은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더욱 골치 아픈 것은 그 법령들이 반드시 법 또는 법규, 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의견’, ‘통지’, ‘세칙’, ‘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제정주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경우에는 ‘기타법률’, 국무원 내지 그 부문이 제정한 경우에는 ‘행정법규’ 또는 ‘부문규장’에 각 해당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조차도 법령의 명칭만으로는 법령의 종류 및 순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에 부기된 법령제정 주체를 확인하고 상위 법령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법률보다 하위의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이 훨씬 더 많이 제정되고 있는 입법현실도 법률전문가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약 200여개에 불과한 반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약 600여개, 국무원의 각 부문에서 제정한 부문규장은 수천 개에 달하고,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지방성법규도 무려 7,000여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중국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멀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법령의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하위법령이 훨씬 더 많이 제정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중국은 광활한 대륙을 영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56개 민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이다. 넓은 영토와 다양한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여 구석구석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상위의 법률에서는 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하위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의 입법 시스템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갖지 못하는 커다란 장점이 발견된다. 중국은 입법절차가 까다로운 법률보다는 주로 하위법령을 통하여 각종 국가시책을 시행하는데, 정부차원의 방침 발표직후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의 부문규장과 지방정부의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속한 입법 시스템은 절차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와 달리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정략적 합의에 의하여 법령의 본질이 변색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국식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 시스템 때문에 중국은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교민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입법시스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하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법치주의 건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중국의 판시와 준법

중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 판시(關係)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상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 정도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선물 또는 뇌물(?)을 주고받으며 이권에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말하여 한국식으로 ‘후원자 내지 뺨’이 되는 관계를 판시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판시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친분관계이다. 비록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관계이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는 혈연을 뛰어넘는 끈적끈적한 동지적 관계이다. 중국의 판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중국은 역사 이래 한국보다 훨씬 커다란 강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규모의 수리, 경작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그 취락의 규모 또한 훨씬 더 컸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한국과 달리 혈연중심의 소규모 촌락이 아닌,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지연중심의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여 수천 년을 살아왔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순수한 혈연관계를 넘어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신의(信義), 의리(義理)를 중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근세까지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개 왕조의 통치기간은 길어야 200년, 평균 100년을 넘지 않았으며 그나마 한족보다 이민족의 통치기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까닭에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인간관계를 갈구하는 ‘판시’의 문화와 함께, 빈번한 정권교체와 전쟁에서 유발되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형성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판시와 불신’은 ‘빛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대 경쟁사회에서 판시는 더더욱 강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판시는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국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를 ‘평요(朋友: 친구)’라 부르며, 값비싼 선물을 수차례 주고받은 사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서로를 관찰하며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장기간의 검증을 통해 무한히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판시가 형성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중국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친구들의 그룹, 이른바 거먼얼(可門兒)에게 소개하고 교우관계를 공유하고 평생을 진정한 친구로서 살아가게 된다. 즉 개인적인 판시에서 집단적인 거먼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인 한국인은 어떤 단계에까지 가야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판시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 경험에 의하면 춘절기간 중 저녁식사 초대를 받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 싶다. 중국인은 음력 12. 31. 저녁 즉, 이른바 추시(初夕) 만찬을 가장 친한 친구들과 형성된 거먼얼과 함께 한다. 그리고 춘절 기간 중 3~4일 정도는 가족 친지들과 보내지만, 그 후 춘절 휴가가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 재차 다른 거먼얼 그룹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 과정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 같은 사람과 중복하여 식사를 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판시는 일종의 ‘사회적(社會的) 자본(資本)’이다. 상대방이 동원한 막강한 판시로 인해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며, 오히려 판시가 미약한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즉, 중국에서 판시는 일종의 사회적 문화현상일 뿐 선(善)도 악(惡)도 아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넓은 ‘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 수년간의 시간동안 긴 호흡을 갖고 똑배기처럼 사람을 사귀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훌륭한 판시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신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판시로 해결하려 해서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법치주의 건설을 목표로 수많은 법령을 만들어 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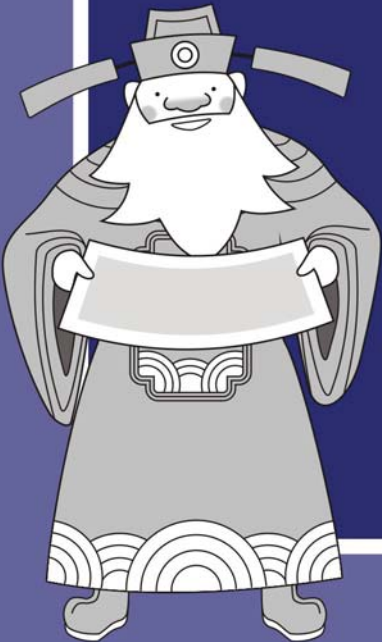


으며, 이에 따라 종래 인치에 의존하던 영역이 점차 법치로 전환되고 있어 판시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국기업에게 더 유리한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며, 외국기업이 쌓은 판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국기업을 뛰어넘기가 어려운데다가 더 나아가 법률까지 위반하였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에서 한국인이 형성하는 판시는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준법을 전제로 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하겠다.

## Section-N

# 중국법의 종류와 법률용어





## 중국법의 종류와 내용

### □ 헌법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은 중국의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2년 제정 이래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국호, 국기, 국가, 국장, 수도 및 기타 국가 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 주요 비즈니스 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회사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5년 대폭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회사법은 회사의 법적 지위, 회사의 조직 및 상호관계, 회사의 설립, 변경,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1988년 처음 제정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2000년의 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 목적으로 중국에서 중외합작형식의 회사를 설립, 경영하는 경우 이를 규범화하여 중외합작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1979년 최초 제정 이후 2차에 걸친 개정을 거쳤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중외합작형식의 회사를 설립,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중외합작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1986년 제정되어 2000년 대폭 개정된 현행 외자기업법은 외국기업과 경제기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외자기업을 설립, 운영



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상술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은 모두 외국기업, 경제기관, 개인투자자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어 3종의 법률을 통칭하여 **삼자기업법(三資企業法)**이라고도 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 노사 각측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의 기본법이다. 현행 노동법은 1994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9년 일부가 개정되었다.

####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노동관련 법률 문제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이 함께 규율하고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파산법은 파산에 처한 회사들의 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파산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 ■ 세법부분

세법분야에서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증치세잠행조례, 영업세잠행조례, 기업소득세법 등이 있다.

## □ 교민관련 주요법률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1986년 제정된 민법총칙은 자연인과 법인의 합법적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민사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단일 민법전을 제정하여 민법전 안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국은 민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이들을 단행법률의 형태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1999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법은 평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창설,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바꿔 말하면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증여, 교환 등 계약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계약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계약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물권법은 물건, 즉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물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7년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민사분야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물권법과 계약법을 모두 갖추게 되어 민사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더욱 명확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950년 제정된 혼인법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생활의 변화로 인해 1980년 혼인법이 다시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도 혼인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혼인법의 주요 규율대상은 부부간의 혼인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및 권리의무 등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소송당사자와 법원 및 기타 관계인들 각자의 권리, 의무 및 민사소송 각 단계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2007년에 대폭 개정된 것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형법은 형벌수단을 동원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 집체(集體), 개인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형법은 1979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11년 5월 개정된 것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안관리처벌법은 이전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법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중에서 형법으로 처벌하기에는 경미한 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치안관리처벌법은 ‘소형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안전법은 2003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도로교통안전법은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법인, 기타 단체의 신체 및 재산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각 단계의 절차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公安, 검찰원, 법원 및 피고인 각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79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1996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중국의 법률용어 정의

### 각하(驳回)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驳回’라고 쓰고 있습니다.

### 구류(拘留)

중국 刑事诉讼法(제61조)에 규정된 ‘拘留’는 우리나라의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이고, 민사소송법상 ‘拘留’는 우리나라의 ‘감치’와 유사합니다.

### 감호인(監護人)

감호인이란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의 신체, 재산 기타 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는 자



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친권자와 후견인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건물(房屋)

건물이란 토지 위의 건물 등 건설물과 구조물을 말합니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2조).

## 건물임대 (房屋租赁)

건물임대란 건물 소유권자가 임대인으로서 그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53조).

## 건설용지(建设用地)

중국은 농용지가 건설용지로 전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지는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도농 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업· 광업구, 교통· 수리시설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을 포함합니다.

## 결정(決定)

중국의 재판에는 판결, 재정,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이란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소송절차 중에 발생하는 장애 또는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기속력 있는 결론적인 판단을 말합니다(예: 회피신청의 처리, 소송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소송방해 행위 처리 등).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 경제보상금 (經濟補償金)

경제보상금은 노동관계 종료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시 반드시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므로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반해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임금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우리나라 민법총칙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중국에서는 合同法(제3장)에 ‘계약의 효력(제44조~제59조)’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민(公民)

우리나라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인’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民法通則 제2장). 인민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공유(公有)

기본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유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소유(共同所有)라는 제목 아래 공유(公有), 합유(合有), 총유(總有)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유(公有)라는 제목 아래 공동공유(共同公有)와 지분공유(按份公有)를 규정하고



있습니다(物權法 제93조 ~ 제105조).

공동공유(共同公有)는 우리나라의 합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부부공유재산, 가정공유재산,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지분공유는 우리나라의 공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인이 지분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공유를 말합니다.

### 과태료(罰款)

‘罰款’은 행정법상의 처벌인 과태료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벌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형법(제34조 제1호)에서 부가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罰金’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 구전(拘傳)

중국에서 말하는 구전제도는 우리나라의 구인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재판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과 수사단계에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한 구인제도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구전제도는 재판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① 구인의 대상, ② 요건, ③ 구인을 결정하는 기관(중국: 공안, 인민검찰원, 한국: 지방법원 판사), ④ 구인을 집행하는 기관(중국: 공안, 인민검찰원, 한국: 수사기관), ⑤ 구인시간(중국: 12시간 미만, 한국: 구속전 피의자 심문 종료 이후 ~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국유토지 (国有土地)

중국의 토지소유권자는 국가로서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 시구의 토지는 전민소유, 즉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유토지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 기소난 (起訴難)

중국 민사소송실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受理)라는 단계가 있어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노동계약 (劳动合同)

노동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用人单位) 간에 노동을 매개로 한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노동관계)를 명확하게 정한 협의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노동계약을 ‘노동협약(劳动协议)’, ‘취업협약(就业协议)’, ‘고용계약(聘用合同)’ 등의 명칭으로 체결하지만 이러한 계약들이 실제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면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노동계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 농용지 (农用地)

중국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에 따라 토지를 농용지, 건설용지, 미이용지 등 3가지로 분류하는데 농용지는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



고, 이는 갱지, 임지, 초지, 농전수이용지, 양식수면 등을 포함합니다.

### 미이용지 (未利用地)

토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미이용지란 농용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기타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 부동산개발회사 (房地产开发公司)

자금조달, 토지구입, 설계, 건축시공, 판매 등 부동산 개발의 전과정을 수행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개념과 동일하며, 건축시공업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城市房地产管理法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이란 합법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상의 토지 위에 기초 시설과 건물 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 부동산양도 (房地产转让)

부동산 양도란 부동산 권리자가 매매, 증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37조, 城市房地产转让管理规定 제3조).

### 부동산저당 (房地产抵押)

부동산 저당은 저당권 설정자(抵押人)가 그 합법적인 부동산을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권자(抵押权人)에게 채무이행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법에 따라



저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취득한 금액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47조, 城市房地产抵押管理办法 제3조).

### 사법해석 (司法解釋)

중국에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법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입니다(人民法院组织法 제32조).

### 사회보험 (社会保險)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여 산업재해, 질병, 노령, 실업, 출산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양로보험(養老保險),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商保險), 생육보험(生育保險)이 있습니다. 주택공적금(住宅公積金)을 포함하여 ‘5험1금(五險一金)’이라고 합니다.

### 상소(上訴)

중국에서 항소, 상소는 우리나라의 항소, 상소와 다릅니다. 민사소송 법상 상소는 당사자가 1심 인민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 그 직급 상급인민법원에 1심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1심 인민법원의 재판이 판결이든 재정이든 모두 상소라는 용어로 통칭됩니다.





## 상품주택(商品房)

상품주택이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건물을 지칭합니다.

## 서민주택(经济适用房)

서민주택은 중, 저수입 가정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표준에 맞게 건설된 보통 주택을 지칭합니다.

## 소송시효(诉讼时效)

이는 우리나라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법정기간 지속된 경우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시효 기간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년(民法通则 제135조)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이 불합격된 상품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임대료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 경우, 맡긴 물건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은 1년입니다(동법 제136조). 소송시효 기간은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37조).

## 소송이유(訴訟理由)

우리나라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 소송청구(訴訟請求)

우리나라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소송청구를 쓸 때 우리는 무색투명하게 쓰는데 반하여, 중국은 청구하는 금액이 임대료(租金)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소취하(撤訴)

중국에서의 소의 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인민법원이 재정(裁定)으로 허가를 하여야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제156조). 다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간제 근무제(非全日制)

시간제 근무라 함은 시간급 보수계산을 위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에서 통상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무형식을 말합니다.

## 신소(申訴)

민사소송에서 신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기관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신청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의 재심 결정과 검찰원의 재심신청(항소)이 대부분 당사자의 신소에서 비롯



된 경우가 많습니다.

## 어음, 수표(票據)

‘票據’란 일정 금액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기본적 효능으로 하는 유가 증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票據’에는 일반적으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가 포함됩니다.

## 영업집조(營業執照)

중국의 영업집조는 사전적인 의미상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됩니다. 단, 중국의 영업집조는 우리나라에서 세무국에서 발부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원에서 발부하는 법인등기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유치권자(留置权人)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유치권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物權法 제230조).

## 인민법원(人民法院)

중국에서는 법원을 우리나라와 달리 ‘인민법원’이라고 부릅니다.

## 일재종국(一裁終局)

노동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소액사건, 국가노동기준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중재로 종결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



송을 통한 사건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안(立案)

중국 민사소송법 제12장의 제목에 ‘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 112조, 제 113조 등에서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안은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제기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민사소송절차는 인민법원이 입안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재산보전(財產保全)

재산보전은 우리나라의 ‘보전처분’과 유사하나, 중국의 재산보전에 는 우리나라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성질을 갖는 보전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재산 보전제도에서 ‘재산’은 금전과 비금전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선행집행’이 있습니다.

### 재심신청(申請再審)

재심신청은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소송상의 권리로 그것은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독촉절차, 공시 최고절차 등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심신청의 이유가 법정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재심절차는 개시됩니다.



## 재정(裁定)

중국의 재판에는 판결, 재정, 결정이 있습니다. 재정이란 인민법원이 민사, 형사 소송절차 중의 각종 절차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리는 기속력 있는 결론적인 판단을 말합니다(예: 수리거부, 이송, 보전처분 등). 재정은 법이 상소를 허용하는 경우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정장(庭長)

중국의 경우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刑事審判庭), 민사심판정(民事審判庭)과 경제심판정(經濟審判庭)을 둘 수 있고(人民法院组织法 제18조), 중급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정을 둘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6조, 제30조).

## 조정(調解)

중국에서의 조정은 인민법원에 의한 법원조정과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한 인민조정(人民調解)이 있습니다. 인민조정이란 인민위원회라는 공민의 자치조직이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행하는 소송 외적 조정을 말합니다. 중국에는 인민조정 이외에 소송 외적 조정으로 행정조정과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있습니다.

## 집체토지(集体土地)

집체토지란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이고 또한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토지라고도 합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규정에 따라



집체토지에 속하고 택지이고 자영농경지(自留地), 자류산(自留山)도 집체토지에 속합니다.

### 체포(逮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 처분으로, 우리나라의 구속에 해당됩니다.

### 토지사용권 출양(土地使用权出让)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다시 이전하는 행위로 매매, 교환, 증여 등 방식을 포함합니다(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제19조).

### 토지사용권획발(土地使用权划拨)

중국 국유토지사용권 취득방식 중의 하나로서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토지수요자로부터 일부 보상금과 안치비용을 받고 동 토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토지수요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획발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직접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없습니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23조).

### 판사(审判员)

민사소송법에 심판인원(审判人员)과 심판원(审判员, 법관 또는 판사)이 나옵니다. 이 양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배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법에서 ‘심판원’은 ‘배심원’에 대비되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인원’이라는 용어는 법관, 배심원, 법관 직무를 대행하는 보조법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실무적으로 중국의 판결문에서도 판사(법관)는 ‘심판원’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 합의정(合議庭)

우리나라의 ‘합의부’와 비슷한 개념이나, 중국의 합의정은 인민배심원이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합의부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 항소(抗訴)

중국에서 항소, 상소는 우리나라의 항소, 상소와 다릅니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절차로서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심 재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2심 재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험자보고서(验资报告书)

험자보고서란 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금을 회사계좌로 납입하고 회계사 사무소에서 은행의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험자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설립시 발부한 영업집조를 정식 영업집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호적(戶籍)

중국에서 ‘호적’과 ‘호구(戶口)’는 우리나라의 ‘호적’, ‘호구’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호적’에 상응하는 것으로 ‘籍貫’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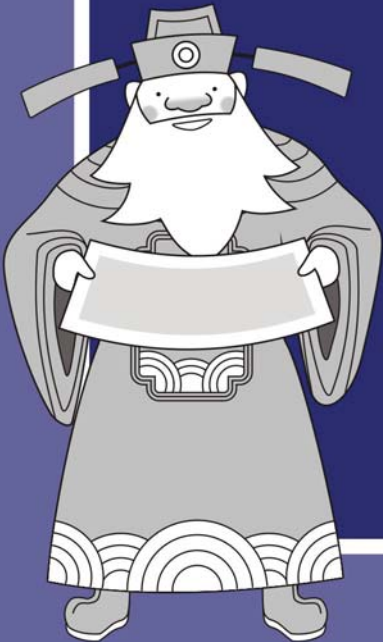
## 회피제도

우리나라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위 세 가지 제도를 포괄하는 제도로 회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피제도와 중국의 회피제도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Section-0

부록(참고)





## 중국법 관련 자료 리스트

### A 투자와 경영 관련 자료

- 85 [A자료1] 부동산개발회사의 자격조건 (A-15)
- 86 [A자료2] 건축시공회사의 자격조건 (A-15)
- 107 [A자료3] 부동산중개기구의 자격조건 (A-31)
- 111 [A자료4] 한중 양국의 회사설립절차 비교 (A-33)

### B 기업 세무 관련 자료

- 142 [B자료1] 사업형태에 따른 세금유형 (B-1)
- 158 [B자료2] 조세우대 혜택 세목 및 세율, 조건 (B-11)
- 183 [B자료3] 증치세 세금계산서 최고발행한도 (B-28)
- 198 [B자료4] 도시토지사용세 세율 (B-37)
- 201 [B자료5] 공장부지 임대 관련 세금 (B-39)
- 203 [B자료6] 제조업체의 판매세율 (B-40)



- 207 [B자료7] 개인소득세 세율표
- 208 [B자료8] 기업소득세 세율표
- 209 [B자료9] 증치세 세율표
- 210 [B자료10] 영업세 세율표
- 211 [B자료11] 소비세 세율표
- 212 [B자료12] 개인소득세 납세기한
- 213 [B자료13]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 213 [B자료14] 증치세 납세기한
- 214 [B자료15] 영업세 납세기한
- 215 [B자료16] 소비세납세기한

## C 무역과 관세 관련 자료

- 229 [C자료1] 모조 신변장식용품 수입관세율 (C-9)
- 231 [C자료2] 인삼의 수입관세율 (C-10)
- 232 [C자료3] 화장품의 수입관세율 (C-11)

## D 노무 인사 관련 자료

- 254 [D자료1] 노동계약과 관련한 사용자의 벌칙 (D-10)
- 262 [D자료2] 노동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D-16)
- 275 [D자료3]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D-28)
- 290 [D자료4] 산재시 비용항목 및 비용부담 주체 (D-38)
- 292 [D자료5] 노동계약의 해제와 보상금 지급 (D-39)
- 299 [D자료6] 경제보상금의 유형 및 지급여부 (D-46)
- 310 [D자료7] 각성 최저임금표준(위안/월)



**311 [D자료8]** 노동계약 관련 벌칙 종합

**E 기업부동산 관련 자료**

**314 [E자료1]** 중국의 토지소유권 관련 법규정 (E-1)

**335 [E자료2]** 부동산 관련 인허가 서류 (E-15)

**337 [E자료3]**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의 주택매입시 세금 및 비용

**337 [E자료4]** 부동산(건물) 감정평가비

**338 [E자료5]** 토지 감정 평가비

**339 [E자료6]** 건물(物业)서비스 회사 자격조건

**340 [E자료7]** 부동산 중개기구 자격조건(북경시 기준)

**341 [E자료8]** 부동산 감정평가회사 자격조건

**342 [E자료9]**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질관리 절차 안내도

**343 [E자료10]**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수립과 타당성 연구 안내도

**344 [E자료11]**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1)

**345 [E자료12]**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2)

**346 [E자료13]**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  
리 안내도(1)

**347 [E자료14]**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 분양 및 경영관  
리 안내도(2)

**348 [E자료15]**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계획 설계와 시정부 인프라시  
설 건설 안내도



## F 기업청산 관련 자료

357 [F자료1] 기업의 청산절차 (F-8)

## G 부동산과 생활 관련 자료

404 [G자료1] 토지용도에 따른 토지 사용권 출양기간 (G-24)

## H 세금과 생활 관련자료

408 [H자료1] 한중조세협약상 체류기간 및 지급자에 따른 면세 요건 (H-1)

411 [H자료2] 일시소득 가산징수율 (H-3)

423 [H자료3] 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H-10)

429 [H자료4] 도시토지사용세 세액표 (H-15)

## I 민법과 생활

463 [I자료1] 한국의 이혼유형 비교 (I-17)

464 [I자료2] 중국의 이혼유형 비교 (I-17)

## J 민사소송법과 생활

479 [J자료1] 민사소송 보통절차(1심) (J-2)

481 [J자료2] 민사소송비용 납부방법 (J-2)

486 [J자료3] 변호사 소송대리비용 수취 정부지도가격(북경시 기준) (J-4)

488 [J자료4] 소송비용의 부담방식 (J-5)



**496 [J자료5]** 인민법원 조정과 인민조정 비교 (J-10)

**497 [J자료6]** 분쟁해결로서의 증재와 소송의 비교 (J-11)

## K 형법과 생활

**519 [K자료1]** 교통사고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K-5)

**533 [K자료2]** 절취금액과 양형기준 (K-12)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는 2007년 7월에 북경 소재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설립되었다.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기업에게 매년 200건 내외의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법무협력관이 센터장을 맡고, 덕현법률사무소(대표 김덕현)에서 파견한 김흠 중국변호사가 상담업무를 보조한다.

법률상담은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법령 리서치, 실무관행 파악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접수한 후 답변까지는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① 인터넷 상담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인터넷상담 게시판

[http://chn.mofat.go.kr/korean/as/chn/civil\\_appeal/law/index.jsp](http://chn.mofat.go.kr/korean/as/chn/civil_appeal/law/index.jsp)

② 전화·팩스 상담 : 북경 010-8531-0727

③ 직접면담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본관 1층 회의실



## 주중대한민국영사관 연락처

### 驻北京 领事处

北京市东直门外大街 亮马河南路 14号 塔园外交办公大楼

电话 : (86 - 10) 6532 - 6774, 6775

传真 : (86 - 10) 6532 - 6778

E-mail : chinaconsul@mofat.go.kr

领事区域 : 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山西省, 内蒙古自治区, 新疆自治区, 西藏自治区, 青海省

### 驻青岛 总领事馆

山东省青岛市 崂山区香港东路 101号

电话 : (86 - 532) 8897 - 6001, 6002, 6003

传真 : (86 - 532) 8897 - 6005

E-mail : pconsul@public.qd.sd.cn





网站 : <http://www.qdcon.org.cn/>

领事区域 : 青岛市, 山东省

## 驻上海 总领事馆

上海市 万山路 60号

电话 : (86 - 21) 6295 - 5000, 6295 - 2639

传真 : (86 - 21) 6295 - 5191, 6295 - 2629

E-mail : [shanghai@mofat.go.kr](mailto:shanghai@mofat.go.kr)

网站 : <http://shanghai.mofat.go.kr/>

领事区域 : 上海市, 安徽省, 江苏省, 浙江省

## 驻广州 总领事馆

广东省天河区体育东路羊城国际商贸中心西塔 18楼

电话 : (86 - 20) 3887 - 0555

传真 : (86-20) 3887 - 0923

E-mail : [guangzhou@mofat.go.kr](mailto:guangzhou@mofat.go.kr)

网站 : <http://chn-guangzhou.mofat.go.kr>

领事区域 : 广东省, 广西省广西壮族自治区, 海南省, 福建省

## 驻香港 总领事馆

Cona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6/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Hong Kong

电话 : (86-852) 2529 - 4141

传真 : (86-852) 2861 - 3699

E-mail : [info@korea.org.hk](mailto:info@korea.org.hk)



网站 : <http://hkg.mofat.go.kr>

领事区域 : 香港, 澳门

### 驻沈阳 总领事馆

辽宁省沈阳市和平区南 13 纬路 37号

电话 : (86-24) 2385 - 3388

传真 : (86-24) 2385 - 5170, 6549, 7401

E-mail : [Shenyang@mofat.go.kr](mailto:Shenyang@mofat.go.kr)

网站 : <http://chn-shenyang.mofat.go.kr>

领事区域 : 辽宁省, 黑龙江省, 吉林省

### 驻成都 总领事馆

四川省成都市 下南大街 6号 天府缘洲大厦 19楼

电话 : (86-28) 8616 - 5800

传真 : (86-28) 8616 - 5789

E-mail : [Chengdu@mofat.go.kr](mailto:Chengdu@mofat.go.kr)

网站 : <http://chn-chengdu.mofat.go.kr>

领事区域 : 重庆直辖市, 四川省, 云南省, 贵州省

### 驻西安 总领事馆

中国 陕西省 西安市 高新技术产业开发区 科技路 33号 国际商务  
中心 19层

电话 : (86-29) 8835 - 1001

传真 : (86-29) 8835 - 1002

E-mail : [xian@mofat.go.kr](mailto:xian@mofat.go.kr)



网站 : <http://chn-xian.mofat.go.kr>

领事区域 : 陕西省, 甘肃省, 宁夏回族自治区

## 驻武汉 总领事馆

中国湖北省武汉市江汉区新华路218号

浦发银行大厦4楼 邮编 430022

电话 : (86-27) 8556 - 1085

传真 : (86-27) 8574 - 1085

E-mail : [wuhan@mofat.go.kr](mailto:wuhan@mofat.go.kr)

网站 : <http://chn-wuhan.mofat.go.kr>

领事区域 : 湖北省, 湖南省, 河南省, 江西省

##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접근한 중국법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기업과 교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5만여 개의 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상주하는 교민의 수도 60여만 명에 이르며 유학생의 수는 6만여 명이나 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은 각종 거래와 계약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잖은 법률상 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법률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상 우리나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와 법률분야에서는 아직도 사회주의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중국에서의 법적분쟁 해결에 있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분쟁사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자는 중국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분쟁사례를 각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최신 법령에 맞추어 그 해결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총 300여개 사례는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의 실제 상담사례와 김덕현 박사가 운영하는 법률회사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등으로 실제 관여한 사례 중에서 엄선한 것들입니다. 4년간 축적된 법률지원센터의 상담 경험과 중국에서 최초로 한국인이 설립한 법률회사의 10여 년간 실전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중국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책자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사례 합계 약 1천여 건을 장기간에 걸쳐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시사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례는 독자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였으며, 특히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복잡한 실제사례는 적용 법령별로 사안을 분리하여 서술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쟁점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분쟁사례는 사안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유

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Part 1 기업비즈니스법률에서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총 195개를 선정하여, A.투자와 경영, B.기업세무, C.무역과 관세, D.노무 인사, E.기업부동산, F.기업 청산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art 2 교민생활법률에서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총 148개를 선정하여, G.부동산과 생활, H.세금과 생활, I.민법과 생활, J.민사소송법과 생활, K.형법과 생활, L.형사소송법과 생활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3 중국법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중국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글과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M.중국의 법제와 법문화, N.중국법의 종류와 법률용어, O.부록(참고)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광대한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전자책자 형태의 출판을 전제로 집필되었습니다. 기존의 종이책자 형태로는 기업과 교민들에게 일일이 배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파일을 주중대사관 등 주요 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면 독자들이 컴퓨터, 태블릿pc 등으로 다운받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여 읽을 수 있도록 별

도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자들이 주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사례를 손쉽게 찾아 읽고 대비함으로써 분쟁해결 또는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필진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률체계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례를 수록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매년 증보판 발행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료정리 및 중국법령 검색 등에 크게 도움을 준 배덕현 박사와 김흠 변호사, 그리고 원고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정효삼, 김호삼, 김용자 세 분의 검사, 노무·국세·관세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상환 노무관, 심욱기 국세관, 김정 관세관, 김앤장 로펌 김종국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공동집필

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소장 노정환

덕현법률사무소 대표 김덕현

■ 발간총괄

김경수 (경제공사)

■ 발간책임

조원명 (공사참사관)

■ 집필

노정환(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법학박사)

김덕현(덕현법률사무소 대표, 법학박사)

■ 발간위원

배덕현(주중대사관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김 흠(중국변호사)

정효삼, 김호삼, 김용자(검사)

■ 감수위원

김상환(주중대사관 노무관), 심욱기(주중대사관 국세관)

김 정(주중대사관 관세관), 김종국(김앤장로펌 변호사)

---

■ 발행일 2011년 12월 20일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비매품]

---

■ 제작 좋은샘/좋은아침

■ 편집 새샘기획

■ 웹제작 Mulsaem Creative Labs

■ 총기획 김구정

■ 편집 김조안, 김매화, 김경애, 전철빈

■ 디자인 김지나, 최성규

■ 전자북&앱 최대승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사례로 풀어보는

# 중국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www.koreanembassy.cn](http://www.koreanembassy.cn)

